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Ⅱ 서 언

2014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해 칠레를 포함한 총 9건의 FTA를 발효시켰고 5건을 타결하는 등 성공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비록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주요 FTA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총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을 고민해볼 만한 시점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FTA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FTA를 추진할 당시 대외경제상황 속에서 FTA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경제정책적 목표가 있었을 것이며, FTA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러한 정책적 목표에 대한 달성도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하여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 우리의 FTA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고, 본 연구가 FTA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이면서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들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분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체결한 FTA 건수뿐만 아니라 그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FTA 네트워크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연구들이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만 집중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경쟁국들의 FTA 네트워크 형성과정과 그 범위를 고려하여

우리의 성과를 조망하고 RCEP이나 TPP, FTAAP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역경제통합 논의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주요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국가수준에서의 양자 교역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의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체결한 FTA의 영향이 산업별,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차별적인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FTA가 우리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온 FTA들이 양자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입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FTA가 총교역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FTA로 인한 양자 수출입증대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성장 및 소비자후생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양자 수출입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으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생산구조를 고려하면 제3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 교역의 영향이 산업 연관관계와 제3국과의 교역관계를 통해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을 분석한 점 역시 차별적인 기여라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양자 수출입 액수뿐 아니라 품목 수와 경쟁도, 성과의 분배 등 그 내실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FTA를 통해 늘어난 수출입이 그동안 주로 교역했던 품목들의 증가에 기반한 내연적 성장(intensive margin)인지 아니면 교역하지 않았던 품목들이 새로이 수출입됨으로써 발생한 외연적 성장(extensive margin)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집중도가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

지도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FTA를 통한 개방정책이 활발했던 지난 10년간 산업별, 기업규모별 소득불평등도와 영업이익률 추이를 정리함으로써 성과의 분배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EU 등 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제도 선진화에 대한 평가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제도 변화가 결국 국내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법 개정 현황을 체계화하여 파악하고 유형화하였으며, 이 점 역시 본 연구의 차별적인 부가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이 보고서는 본 원의 김영귀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고, 금혜운 전문연구원과 유새별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대구대학교의 김양희 교수와 아주대학교의 김한성 교수가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풍성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작성과정에서 유용한 자문과 감수를 맡아주신 김준동 박사와 심의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통해 보고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본 원의 배찬권 박사, 기획재정부의 이승원 과장, 정병식 과장, 성신여자대학교의 송백훈 교수와 고려대학교 이홍식 교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FTA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FTA 정책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원장 이 일 형

국문요약

201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 차별적인 기여를 창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FTA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해보았다. 평가 대상을 크게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으로 나눠 대외부문에서는 FTA 네트워크, 양자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정리하였고, 대내부문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후생, 산업 및 기업 규모별 분배구조, 국내제도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다만 자료나 분석방법론의 한계로 분석결과의 추정치 자체보다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자 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망 분석기법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건수와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은 2004년 이전 0.01에서 2013년에는 0.38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ASEAN 개별 회원국과 EPA를 체결한 반면 우리는 미국, EU 등 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여타 국가들을 연결짓는 정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은 0.00에서 0.13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일본(0.21)과 ASEAN(0.2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TPP나 FTAAP 등 지역경제통합을 고려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한·중·일 3국 중에서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여 향후 린치핀

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다.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해갔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FTA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글로벌 위기 이후 발효된 FTA의 경우 경기에 민감한 품목집중도가 높거나 발효 이후 분석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추정치 확보가 어려웠으나, 전반적으로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증가했으며 FTA로 인한 수출은 칠레, EFTA, ASEAN, 인도,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2.33~100.17%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품목의 다양성 역시 개선되어, 전체 수출품목 대비 FTA 상대국 수출품목 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칠레는 6.1%포인트, 미국은 1.3%포인트 등 거의 모든 FTA에서 수출품목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역품목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수입집중도는 전체적으로 완화되어 다양성 개선과 경쟁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증가가 기대되나 수출집중도는 일부 국가에서 오히려 심화되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FTA가 자동차산업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수출입금액에 미친 영향은 수출에

서는 화학·고무·플라스틱, 기타 제조업에서 뚜렷한 반면, 수입에서는 섬유·직물, 철강, 기타 제조업에서 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별로 상이하여 산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FTA로 인한 서비스 교역효과는 주로 운송, 통신, 보험, 컴퓨터 및 교역 관련 사업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로 인한 서비스 수출은 대미 교역에서 8.6%포인트, 대ASEAN 교역에서는 1.6%포인트 증가했고, 서비스 수입은 미국(13.71%포인트), EU(0.7%포인트), ASEAN(0.89%포인트)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TA 발효 이후 미국, EU, ASEAN 등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해외 투자효과를 살펴보면, 미국, EU, ASEAN으로의 제조업 투자는 다소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의 동기와 유형에 따라 FTA가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이론에 따라 혼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ASEAN과 동유럽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큰 비용이 투입되는 해외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 외에도 상대국 시장규모나 생산요소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FTA라는 단일요소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FTA의 양자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양자 교역의 변화는 대세계 교역과 경제 전반에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FTA의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성장과 후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FTA별 성장효과의 분석결과 EU가 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ASEAN과 칠레가 각각 0.43%와 0.11%의 추가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EU의 효과는 EU로부터의 외국인직

접투자로 인한 효과이며, ASEAN과 칠레는 교역증가로 인한 효과이다. FTA로 인한 전체 성장효과를 총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결과, 2013년 우리나라 총 경제성장률이 3%였는데 이 중 FTA로 인한 성장효과가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가 우리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출 못지않게 수입 역시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 FTA로 인한 수입증가의 성장효과를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FTA로 인한 전체 효과가 1.526%였는데, 수입으로 인한 효과는 0.217%로 전체 효과의 약 1/6 정도로 분석되었다.

기업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출기업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FTA 상대국으로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져 수출기업 증가속도보다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기업 증가속도가 빨랐다. 수출품목 역시 확대되었는데 칠레, EFTA, ASEAN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수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품목 수 증가율이 35.2%로 중소기업 품목 수 증가율 3.9%보다 높았다. FTA가 본격화된 2004년을 기점으로 국내기업의 분배구조는 개선된 반면 수출기업은 악화되었다. 국내기업의 분배구조 개선은 평균 이익률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수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 및 경쟁심화로 인한 한계기업 도태가 수출기업 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즉 FTA가 진전되던 시기에는 모든 기업이 불가피하게 개방의 여파를 받게 되는데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은 기업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반면, 내수기업은 평균 이익률이 하락하거나 도태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제도 선진화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규

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제도 투명성 제고’(1건) 등의 6개로 유형화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제도 선진화와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제도 선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나아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하고 자발적인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 언	3
Ⅱ 국문요약	7
Ⅲ 제1장 서 론	2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4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27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27
나. 보고서의 구성	35
Ⅳ 제2장 FTA의 대외부문 평가	37
1. FTA 네트워크 구축	38
가. 현황	38
나. 분석방식	40
다. 분석결과	43
2. 상품교역: 기업수준	55
가. 총교역규모	55
나. 기업유형별 FTA 수출 현황	58
다. FTA 발효 전후 기업유형별 실적 비교	64
3. 상품교역: 산업수준	70
가. 수출입 현황	70
나. 분석모형	75
다. 분석결과	79
4. 부가가치 교역	86

가. 부가가치 교역의 의의	86
나. 분석 모형 및 데이터	89
다. 분석결과	92
5. 품목 다변화 및 집중도	95
가. FTA별 품목 다변화	95
나. 기업유형별 품목 다변화	99
다. 품목 다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102
라. 품목 집중도	107
6. 서비스 교역 및 투자	113
가. 서비스	113
나. 투자	118

Ⅱ 제3장 FTA의 대내부문 평가 **137**

1. 경제성장 및 소비자후생	138
가. 분석 모형 및 자료	140
나. 분석시나리오	142
다. 분석결과	152
2. 산업별 기업별 이익분배구조	158
가. 분석자료	160
나. 분석결과	161
3. 국내제도 변화	169
가. 서론	169
나. FTA 관련 국내 이행 법령 현황	179
다. 한·미 FTA 계기 개정 법률의 쟁점과 현안	189
라. 전망 및 평가와 정책시사점	206

Ⅰ 제4장 향후 정책방향	217
1. 지역경제통합에의 대응	218
2. 기업의 FTA 활용	224
3. 역외가공지역 조항	229
4. 산업별 맞춤형 정책	231
5. 산업계와의 연계성	234
6.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행 모니터링	238
Ⅰ 부 록	255
부록 1. 기업유형별 · 국가별 대ASEAN 수출	256
부록 2. 국가별 ·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EFTA, ASEAN 및 EU	259
부록 3. 국가별 · 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EFTA, ASEAN 및 EU	267
부록 4.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EFTA 및 ASEAN 회원국별	274
부록 5.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주력 수출산업별 한 · 중 · 일 시장점유율 추이	277
부록 6. 지역경제통합과 주요국의 중심성 변화	282
부록 7. FTA별 경제성장 및 후생 효과	284
부록 8. 한 · 미 FTA 관련 국내 이행법률 현황 및 추진상황 (2014년 4월 15일 기준)	285
Ⅰ 참고문헌	244
Ⅰ Executive Summary	289

표 차례

표 1-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6
표 1-2. 선행연구	31
표 1-3. 보고서의 구성	35
표 2-1. 주요국의 중심성지표	44
표 2-2. FTA의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의 세부 지표	46
표 2-3. 주요국 FTA별 포괄범위지표	48
표 2-4. 주요국의 중심성지표(협정문 포괄범위 고려)	50
표 2-5. FTA 체결국과의 교역: 2004~13년	56
표 2-6.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 2002~13년	59
표 2-7. 한·칠레, 한·EFTA FTA 기업유형별 수출실적: 2007~13년	62
표 2-8. 한·ASEAN 기업유형별 수출실적: 2007~13년	65
표 2-9. 기업유형별 국내 수출기업 수: 2007~13년	66
표 2-10.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2007~13년	67
표 2-11.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대세계	69
표 2-12.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대칠레	69
표 2-13.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 전체 대상국에 대한 산업별 수입 현황	71
표 2-14.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 전체 대상국에 대한 산업별 수출 현황	73
표 2-15.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의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시장점유율 현황 ..	74
표 2-16. 변수의 통계적 특성	78
표 2-17.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산업별 상품교역 효과: 수입	81
표 2-18.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산업별 상품교역 효과: 수출	84
표 2-19. 변수의 통계적 특성	92
표 2-20.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부가가치 교역 효과	95

표 2-21.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수출품목 수 및 비중(HS 10단위)	97
표 2-22.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수입품목 수 및 비중(HS 10단위)	99
표 2-23.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101
표 2-24. 우리나라 기발효 FTA별 교역품목 수에 대한 효과	104
표 2-25.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산업별 교역품목 수에 대한 효과	106
표 2-26. FTA 상대국의 수입품목집중도	109
표 2-27. FTA 상대국의 수출품목 집중도	111
표 2-28. 변수의 통계적 특성	114
표 2-29.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서비스교역 효과	116
표 2-30. 한국의 ASEAN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23
표 2-31. 한국의 ASEAN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순위 및 누적액	124
표 2-32. 유럽 상위 5대 투자국(2009~13년)	126
표 2-33. 한국의 대EU 주요 해외직접투자 업종	127
표 2-34. 미국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2009~13년)	129
표 2-35. 미국의 對한국 주요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08~13년)	129
표 2-36. 이중차분방식을 이용한 FTA 외국인투자 효과	133
표 2-37. 이중차분방식을 이용한 FTA 해외직접투자 효과	134
표 3-1. 이중차분방식을 이용한 FTA 수출효과	144
표 3-2. 이중차분방식을 이용한 FTA 수입효과	145
표 3-3. 다양한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결과	149
표 3-4. 수출입 연평균효과와 누적효과	151
표 3-5. FTA로 인한 수입의 성장효과	157
표 3-6. FTA로 인한 수입의 소비자후생효과	158
표 3-7. 중소기업 수출 여부가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전체 기업)	167
표 3-8. 중소기업 수출 여부가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정상기업)	168
표 3-9. FTA에서의 'WTO+'와 'WTO-X'	174

표 3-10. 한·미 FTA, 한·EU FTA의 협정문	180
표 3-11. 한·미 FTA 체결 계기 개정 법령의 부문별·분야별 현황 (2013년 6월 기준)	183
표 3-12. 한·미 FTA 체결 계기 개정 법령의 시기별 구분(2014년 9월 기준) ...	185
표 3-13. 한·미 FTA 계기 개정 법률의 유형화	187
표 3-14. 2014년 미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208
표 3-15. 2014년 미 무역장벽보고서(SPS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209
표 3-16. 2014년 미 무역장벽보고서(TBT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210
표 4-1. 양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비교	221
표 4-2.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KHS 10단위 기준)	224
표 4-3.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비중	226
표 4-4. 기업유형별 수출비중	227

그림 차례

그림 2-1. 동아시아 FTA 현황: 2004년 이전과 2005~2013년 비교	40
그림 2-2. 네트워크 구조 예시	41
그림 2-3. 네트워크 데이터의 행렬식 구조 예시	42
그림 2-4. 주요국의 FTA 교역 비중	45
그림 2-5. 협상별 한국의 연결중심성	52
그림 2-6. 협상별 한국의 매개중심성	52
그림 2-7. 협상별 한·중·일 연결중심성	55
그림 2-8. 협상별 한·중·일 매개중심성	55
그림 2-9.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2004~13년	57
그림 2-10. 총액 기준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2008)	88
그림 2-11.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	89
그림 2-12. FTA 발효 전 후 수입품목집중도 변화(변화율)	110
그림 2-13. FTA 발효 전 후 수출품목집중도 변화(변화율)	112
그림 2-14. 한국의 IFDI 신고건수 및 투자	119
그림 3-1. 연평균효과와 누적효과의 차이	150
그림 3-2. FTA별 경제성장효과	154
그림 3-3. 경제성장률과 FTA의 영향	154
그림 3-4. FTA별 소비자 후생 효과	156
그림 3-5. 수출 여부에 따른 분배구조(매출액 기준)	162
그림 3-6. 수출 여부에 따른 분배구조(영업이익 기준)	162
그림 3-7. 수출 여부에 따른 영업이익률(전체)	163
그림 3-8. 수출 여부에 따른 영업이익률(농업)	163
그림 3-9. 수출 여부에 따른 영업이익률(제조업)	164

그림 3-10. 수출 여부에 따른 영업이익률(서비스업)	164
그림 3-11. 기업규모별 분배구조 변화(매출액 기준)	164
그림 3-12. 기업규모별 분배구조 변화(영업이익 기준)	164
그림 3-13. 기업규모별 총영업이익률	166
그림 3-14.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166
그림 4-1.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 변화	237
그림 4-2. FTA 활용 정도	237
그림 4-3. 한·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의 유형별 제도 선진화 경로	239

부표 차례

부표 1-1. 한·ASEAN 기업유형별 수출실적(2007~13년): 국가별	256
부표 2-1. EFTA 국가별·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259
부표 2-2. ASEAN 국가별·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260
부표 2-3. EU 국가별·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262
부표 3-1. EFTA 국가별·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267
부표 3-2. ASEAN 국가별·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268
부표 3-3. EU 국가별·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270
부표 4-1.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EFTA 및 EFTA 개별 회원국	274
부표 4-2.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ASEAN 및 ASEAN 개별 회원국	275
부표 5-1. 칠레	277
부표 5-2. 싱가포르	278
부표 5-3. EFTA	278
부표 5-4. ASEAN	279
부표 5-5. 인도	279
부표 5-6. EU	280
부표 5-7. 페루	280
부표 5-8. 미국	281
부표 6-1. TPP(한국이 참여하는 경우)	282
부표 6-2. TPP(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282
부표 6-3. RCEP	283
부표 6-4. FTAAP	283
부표 7-1. FTA의 성장효과	284
부표 7-2. FTA의 소비자후생효과	284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014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해 칠레를 포함한 총 9건의 FTA를 발효시켰고 호주 등과 5건의 FTA를 타결하였다. 큰 효과가 기대되었던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총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그동안의 성과를 다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을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1990년대부터 증가추세였던 전 세계 FTA 체결건수는 WTO DD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¹⁾ 급속하게 확산되는 FTA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상대적 불이익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칠레와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기조가 그동안의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양자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칠레와의 FTA 협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FTA 정책은 2003년 초안이 만들어진 FTA 추진 로드맵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에는 추진전략, FTA 상대국 선정기준, 우선순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FTA 추진전략으로는 단계적 또는 순차적 추진이 아닌 동시다발적 추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뒤늦은 FTA 대열 합류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1)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전 세계 FTA는 2014년 1월 말 기준으로 583건이 WTO에 통보되었고 그 중 377건은 발효된 상태이다(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검색일: 2014. 6. 4).

이른 시간 내 만회하고 FTA별 효과를 상쇄 보완하여 우리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FTA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투자, 규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구함으로써 다자주의가 지향하는 무역자유화를 향한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포괄적인 개방을 통해 국내 체질개선을 추구하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지속적인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개방이 개별 산업과 계층에 미치는 이해득실이 다르다는 점에서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바탕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하고 있다. FTA 대상국 선정기준으로는 ① 경제적 타당성, ② 정치·외교적 합의, ③ 우리나라와의 FTA에 적극적인 국가, ④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순위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목표로 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거대경제권 인접 국가들인 일본, 싱가포르, ASEAN, EFTA와 FTA를 추진하였다(김영귀 2014c).

FTA 추진 로드맵의 관점에서 지난 10년을 평가하자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생각된다. 외형적 측면에서 보면, 다소 늦게 FTA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동시다발적 추진전략으로 2014년 11월 말 기준 9건의 FTA를 발효시켰고 5건을 타결하는 등 단기간에 많은 국가들과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현재도 5건의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FTA 허브 구축이라는 목표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FTA에서 90%를 넘는 높은 자유화율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미국, EU 등 선진국 및 ASEAN 등 개도국과의 FTA

표 1-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발효 (9건, 47개국)	칠레	발효(2004. 4. 1)
	싱가포르	발효(2006. 3. 2)
	EFTA	발효(2006. 9. 1)
	ASEAN	발효(2007. 6. 1)
	인도	발효(2010. 1. 1)
	EU(28개국)	발효(2011. 7. 1)
	페루	발효(2011. 8. 1)
	미국	발효(2012. 3. 15)
	터키(상품)	발효(2013. 5. 1)
타결 (5건, 5개국)	콜롬비아	서명(2013. 2. 21)
	호주	서명(2014. 4. 8)
	캐나다	서명(2014. 9. 22)
	중국	타결(2014. 11)
	뉴질랜드	타결(2014. 11)
진행 (5건, 12개국)	인도네시아	7차 협상(2014. 2)
	베트남	7차 협상(2014. 9)
	한·중·일(3자)	5차 협상(2014. 9)
	RCEP	5차 협상(2014. 6)
	한-ASEAN 추가 자유화	한-ASEAN 추가 자유화
협상 재개 여건 조성 (3건, 8개국)	멕시코	2차 협상(2008. 6)
	GCC	3차 협상(2009. 7)
	일본	3차 과정급 협의(2012. 6)

자료: ftahub.go.kr(검색일: 2014. 11. 20)를 토대로 저자 정리(2014년 11월 기준).

에서도 서비스와 투자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함하는 등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였다. 다만 FTA 추진과정에서 대내협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아직까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FTA 체결순서를 보면 EFTA 이후 EU, 싱가포르 이후 ASEAN, 칠레 이후 중남미 등 소규모 개방경제와의 FTA를 발판으로 거대경제권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의 FTA가 캐나다나 멕시코와의 FTA를 타결하기 전에 추진됐다는 점은 개혁정책적 수단으로서 필요했다는 주장과 다소 조급한 접근이었다는 비판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FTA는 체결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추진 로드맵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FTA를 추진할 당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FTA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경제정책적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를 성패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책적 목표 달성 어부에 대한 평가는 향후 지속적인 FT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후속 대책 및 향후 통상정책방향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새로운 FTA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의 논거가 그동안 추진했던 FTA 정책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협상과정이나 협정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 경제에 발현된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한국의 FTA 정책을 경제적 성과의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FTA의 성과를 평가해왔으나, 많은 연구들이 주로 FTA 발효 이후 양자 교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런 관점이 FTA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으나, 미국, EU와 같은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된 지 겨우 2~3년 지나지 않아 포괄적인 분석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발효된 지 오래된 한·칠레 FTA 같은 경우에는 이행평가 및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어왔으나, 최근 발효된 FTA의 이행성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우선 FTA별 무역효과분석 및 이행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14년에 FTA 발효 10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했다. 한·칠레 FTA 발효 3년차 당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교역규모 및 상품수지 등 칠레와의 교역을 분석한 김미아(2008)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규모가 약 3배 증가하는 등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후 한·칠레 FTA 발효 7년차 양국 간 교역규모 및 무역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송송이(2011), 민혁기 외(2011) 등이 있다. 송송이(2011)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양국간 교역규모가 발효 전보다 약 4.6배 증가하였다. 또한 한·칠레 FTA로 인해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뿐 아니라 생산고용유발효과, 시장선점효과, 소비자후생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

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혁기 외(2011)는 한·칠레 FTA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친 영향을 무역 창출효과와 전환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대칠레 수입의 증가는 무역창출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대칠레 관세인하가 대세계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무역전환효과의 존재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행된 문한필 외(2014)가 도출한 한·칠레 FTA 10년차 농업분야 이행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관세감축으로 인한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증가가 국산 과일 및 과채의 시장점유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미국, EU와의 FTA 이행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강유덕 외(2013), 정인교(2013), 명진호, 문병기, 조성대(2013), 김영귀 외(2014), 제현정 외(2014) 등이 있다. 한·EU FTA는 발효 2년차인 2013년까지 대EU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여 무역적자로 전환되는 등 주요 무역대상국 중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음을 지적하며 강유덕 외(2013)는 30대 수출입품목 기준 한·EU FTA의 효과가 비대칭적이었음을 발견했다. 정인교(2013)는 2012년 한국과 미국 간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FTA 활용률이 50%를 넘는 등 한·미 FTA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명진호, 문병기, 조성대(2013)는 세부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간 수출확대, 무역흑자, 외국인투자 확대 측면에서 FTA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 관세 혜택별 대미 수출성과 분석결과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대폭 상승하였음을 나타냈다. 국내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은 2012년 4월 58.3%에서 2012년 12월 66.1%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현정 외(2014)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연구로 한·미 FTA 활용률은 발효 초기부터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발효 2년차인 2013년에도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임을 강조하였다. 김영귀 외(2014)에서도 한·미 FTA 발효 1년차보다 2년차에 들어 교역효과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양국 경제회복세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연구로는 배찬권 외(2012)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력모형 등을 이용하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 체결한 FTA의 성과를 교역과 해외투자, 생산성, 고용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기발효 FTA로 인해 수출입이 증가하고 장기적 경제성장률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FTA 활용도 및 특혜관세 활용률에 대한 분석으로는 김한성(2009), 정인교(2009), 최낙균 외(2009), 정인교 외(2010) 등이 있다. 김한성(2009)은 4개국에 대해 각각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분석하였으며, 한·ASEAN FTA에 대해서는 한국 수출에서 낮은 특혜관세 활용률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정인교(2009)에서는 한국기업의 경우 칠레 또는 싱가포르와의 FTA보다 ASEAN 및 EFTA와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낙균 외(2009) 역시 FTA 체결국들과의 전체적인 수출, 수입 및 교역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FTA 활용도가 낮아 FTA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인교 외(2010)는 저조한 FTA 수출 활용률에 대해 지적하며, 경제적 이익 측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교육, 원활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활용

표 1-2. 선행연구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구자(연도): 배찬권, 김정근, 금혜윤, 장용준(2012) - 연구목적: 기체결 FTA의 효과에 대한 추정으로 보완적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체결될 FTA에 대한 논의 및 고려 사항 제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치는 효과 -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 우리 정부의 FTA 추진 현황과 정책방향 - 한-미 FTA와 한-EU FTA의 효과 전망
	2 - 과제명: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 연구자(연도): 김한성(2009) - 연구목적: 4개국과의 FTA 중 상품협정에 서의 특혜관세 이행 현황 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한국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 현황 - 효율적인 FTA 이행의 중요성 - 한국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
	3 - 과제명: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정인교(2009) - 연구목적: 한국의 FTA 정책 및 추진실적, 기업들의 FTA 활용수준을 분석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한국의 FTA 정책 - FTA 인식 및 기업 활용 조사 - 저조한 FTA 활용수준의 배경
	4 - 과제명: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방향 - 연구자(연도): 최낙균 외(2009) - 연구목적: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방향 제시,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FTA 피해구제를 위한 국내보안대책, 이해집단 조정방안 등과 관련한 해외사례 분석 등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패널데이터 분석	- 한국 FTA 정책의 기대효과 및 운영 현황 - FTA가 경제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한국의 FTA 추진 과정 및 성과 분석 - FTA에 대응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사례 분석 -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향
	5 - 과제명: FTA 활용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정인교 외(2010) - 연구목적: 현재의 FTA 활용 지원내용을 평가하고, FTA 기업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우리나라 FTA 정책과 정책과제 - 한·중·일의 대ASEAN FTA 무역효과 - 현행 FTA 활용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 주요 국가의 FTA 활용수준 및 활용률 목표 - FTA 활용지원 종합계획
	6 - 과제명: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국의 FTA 10년: 한국의 FTA 10년 성과 - 연구자(연도): 명진호, 정해선, 제현정(2014) - 연구목적: 한국 내 기업의 FTA 활용도 및 만족도와 기업의 FTA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FTA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모색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한국의 FTA 10년 평가 - 한국 내 기업의 FTA 활용 - 향후 FTA 추진 국가 및 이유
	7 - 과제명: 한국의 FTA 10년 교역 늘고 투자 효과는 아직 불확실 - 연구자(연도): 김형주(2014) - 연구목적: 지난 10년간 한국이 추진해온 FTA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여 FTA 효과를 측정	- 문헌연구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한국의 FTA 10년 성과 평가

자료: 저자 작성.

를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는 FTA 10년의 성과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중이다. 명진호, 정혜선, 제현정(2014)은 지난 10년간 기업의 FTA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무역업체 및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1,000여 개 업체를 랜덤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기업의 60.6%가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9.2%는 FTA에 의해 기업경영 및 수출입확대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미국, EU와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기업이 FTA로 인해 얻는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주(2014)도 지난 10년간 각 FTA 발효 전후를 비교했을 때 나타난 교역 추이는 한국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투자 측면에서는 FTA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인도와 EU를 제외한 모든 FTA가 대세계 수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내다보았다.

본 연구에서 FTA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이면서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므로 그동안의 연구들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본 연구가 FTA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고 차별적인 기여를 창출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체결한 FTA뿐 아니라 그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FTA 네트워크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들이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만 집중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경쟁국들의 FTA 네트워크 형성과정과 그 범위를 고려하여 우리의 성과를 조망하였다. 아울러 RCEP이나 TPP, FTAAP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역경제통합 논의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둘째, 주요 연구들이 주로 국가수준에서의 양자 교역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체결한 FTA의 영향이 산업별로,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FTA가 우리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였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용해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부가가치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온 FTA들이 양자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입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FTA가 총교역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하겠다. 다만 자료의 가용성으로 인해 일부 FTA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분석이 가능했으나, 향후 부가가치의 관점에서 FTA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FTA로 인한 양자 수출입증대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성장 및 소비자후생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양자 수출입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으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생산구조를 고려하면 제3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 교역의 영향이 산업연관관계와 제3국과의 교역관계를 통해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을 분석한 점은 차별적인 기여라고 판단된다. 또한 수출뿐 아니라 수입 역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수입에 의한 성장 및 후생 효과를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양자 수출입 액수뿐 아니라 품목 수와 경쟁도, 성과의 분배 등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FTA를 통해 늘어난 수출입이 그동안 주로 교역했던 품목들의 증가에 기반한 내연적 성장(intensive margin)인지 아니면 교역하지 않았던 품목들이 새로이 수출입 됨으로써 발생한 외연적 성장(extensive margin)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집중도가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도 같이 검토하였다.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FTA를 통한 개방정책이 활발했던 지난 10년간 산업별, 기업규모별 소득불평등도와 영업이익률 추이를 정리함으로써 성과의 분배과정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 EU 등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제도 선진화에 대한 평가를 담고자 노력했다. 제도 변화가 결국 국내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체계화하여 파악하고 유형화했다는 점 역시 차별적인 부가가치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우리의 제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한·미 FTA 및 한·EU FTA라는 점에서 분석대상은 주로 미국과 체결한 FTA로 하되 EU와 체결한 FTA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 두 FTA를 모두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FTA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료나 분석방법론의 제한으로 분석대상에 따라서는 분석결과를 FTA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경우가 존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중국의 부상,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 등

여타 요인이 FTA 상대국과의 양자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나 투자는 상대국이나 기업수준의 세분화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분석이 시도되었다는 점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나.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는 FTA의 성과를 크게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외적 성과를 FTA 네트워크, 양자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등으로 정리하였다. 상품교역은 다시 기업수준과 산업수준으로 나눠 살펴보고, 부가가치 교역과 품목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내적 성과를 경제성장과 소비자후생, 산업 및 기업규모별 분배구조, 국내제도적 변화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이뤄진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FTA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4장 결론에 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상은 객관적 평가를 위해 가급적 정량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글로벌 금융위기

표 1-3. 보고서의 구성	
구성	분석대상
대외부문	FTA 네트워크
	상품교역: 기업수준
	상품교역: 산업수준
	부가가치
	품목 다양성과 집중도
대내부문	서비스와 투자
	성장과 후생
	산업 및 기업별 분배
	국내제도 변화

자료: 저자 작성.

여파로 인해 그 효과가 불분명한 FTA의 경우 정량분석의 결과를 해석함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국내제도 변화는 정량분석이 어려워, 해당 쟁점에 대한 국내외 평가를 정리하고 관련 법령 유형화를 통해 가급적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제2장 FTA의 대외부문 평가

1. FTA 네트워크 구축
2. 상품교역: 기업수준
3. 상품교역: 산업수준
4. 부가가치 교역
5. 품목 다변화 및 집중도
6. 서비스 교역 및 투자



1. FTA 네트워크 구축

가.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성공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EU, ASEAN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국과의 FTA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 발효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요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FTA 허브 구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었다.²⁾

일반적으로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역외국의 생산시설을 역내국으로 이전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아울러 거대시장과의 FTA 체결은 FTA 허브국에 생산시설을 옮겨 무관세로 거대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수출기반투자(export-platform FDI)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투자뿐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술할 FTA 투자효과에는 이러한 복합적인 투자유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이유가 배경에 존재하겠으나, 본 절에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만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온 FTA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FTA 허브국으로서의 효과가 발현되지 않

2) 이미 중국, 뉴질랜드와의 FTA는 타결됐지만, 분석 당시 두 FTA는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FTA 네트워크의 관점에서는 타결보다는 발효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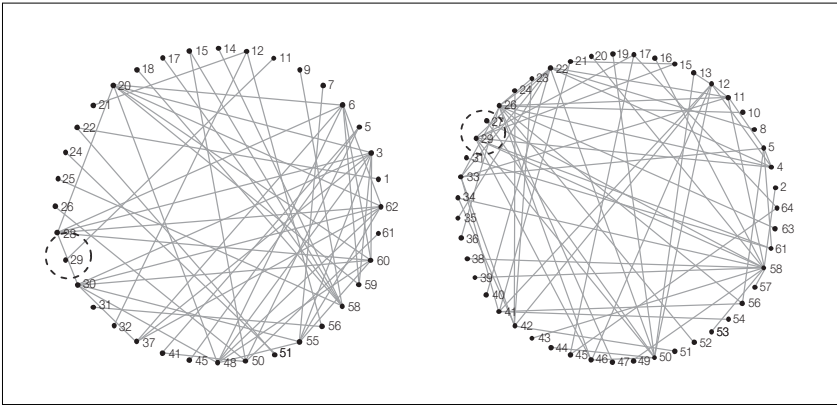
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양자 FTA의 폭발적인 증가 속에서 우리나라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를 평가하고, 향후 양자 FTA를 넘어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통상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WTO에 통보된 전체 지역무역협정보다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한 양자 FTA에 초점을 맞춰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신흥경제권이 몰려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생산 네트워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FTA 허브를 놓고 경쟁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지역경제통합에서는 양 당사국이 아닌 여러 국가가 모여 경제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만큼 시장개방뿐 아니라 글로벌 통상규범의 재정립이라는 관점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FTA 체결건수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FTA의 수준과 내용 역시 네트워크 평가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 지역통합센터(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가 제공하는 동아시아 FT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2004년 이전과 2005~13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 동아시아 FTA 국가들이 체결한 FTA를 정리하였다. 아태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과 같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철폐를 다룬 협정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004년까지 58개의 양자 FTA가 발효된 상태였는데, 2005년 이후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71건의 FTA가 발효되었다.

그림 2-1. 동아시아 FTA 현황: 2004년 이전과 2005~2013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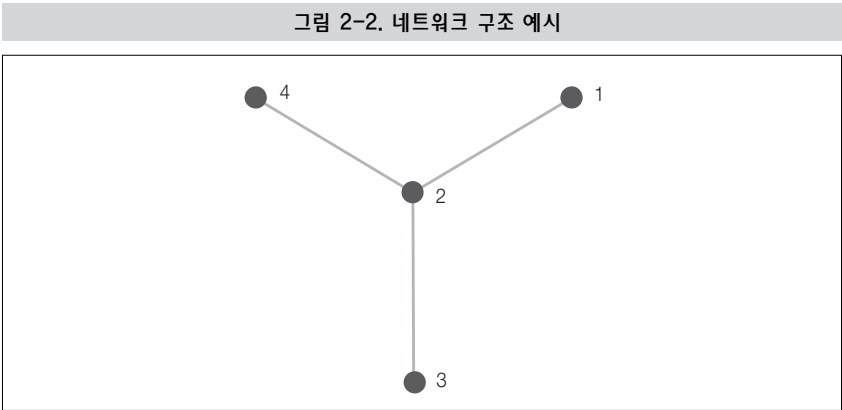
[그림 2-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한국이다. 2004년에는 칠레와 체결한 FTA가 유일했는데, 2013년에는 이후 발효된 많은 FTA로 인해 복잡한 네트워크에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이 보여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기간 동안 많은 국가들과 성공적으로 FTA를 발효시켰다는 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지난 10년간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타 국가들이 손놓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FTA 네트워크 구축은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분석방식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평가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비교하고자 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 속에서 특정 플레이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

에 있는지 혹은 얼마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네트워크 분석자료는 정점(vertex, node)과 연결선(link, edg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점은 플레이어들을, 연결선은 두 플레이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두 플레이어에 연결되어 있으면 1을 아니면 0의 값을 갖게 된다. 특정 시점의 FTA 네트워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시점까지의 양자 FTA의 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자료를 구축하면, 정점은 분석대상국가들이, 연결선은 두 국가 간 FTA 체결 여부가 된다.

다음에서는 Miura(2011)의 표현을 따라 분석자료의 형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인접행렬식(Adjacency matrix) A는 정점의 개수인 $V \times V$ 의 정방행렬로서 i행, j열의 값은 정점 i와 j가 FTA를 체결했으면 1을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하게 된다. 주대각원소는 0으로 고정되고, FTA와 같이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연결선의 경우 대칭행렬이 된다. 거리행렬식(Distance matrix) D도 $V \times V$ 의 정방행렬로서 i행, j열의 값은 i와 j를 잇는 최단 거리가 되며, 두 정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측치(missing value)



자료: Miura(2011), p. 14.

로 표시한다. 경로행렬식(Path matrix) P는 i행, j열의 값이 i와 j를 잇는
 최단 경로의 개수를 값으로 갖는 V×V의 정방행렬로 정의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네 정점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하면,
 인접행렬 A, 거리행렬 D, 경로행렬 P는 [그림 2-3]과 같다.



본 절에서는 각국이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중심성지표를 측정하였다. 하나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이고 다른 하나는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다. 연결중심성은 각국이 몇 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전체 상대국 중 FTA를 체결한 국가의 개수를 나타낸다. 연결 중심성은 앞에서 설명한 인접행렬을 이용하여 $\frac{1}{|V|-1} \sum_{j(\neq i)} A_{ij}$ 로 측정한다. 이 연결중심성은 특정 국가가 상대적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만 FTA를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연결중심성은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의 FTA 네트워크 구축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매개중심성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최단 연결선상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값을 갖는 지수이다. 따라서 어떤 국가들이 FTA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를 지나야 한다면 이 특정 국가를 매개중심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미 몽골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FTA를 하나 이상 맺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FTA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체결했던 FTA 협상 틀이 준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개중심성의 의미를 협상의 플랫폼 경쟁에서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매개중심성은 전술했던 경로행렬을 이용하여 정점 k 의 매개중심성은 어떤 i 와 j 를 잇는 최단 경로의 개수에서 k 를 통과해야 하는 경로의 개수로 측정되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sum_{ij: i \neq j, k \notin ij} \frac{P_{ij}^{(k)}}{P_{ij}} \text{이 된다. 이 식을 정규화하기 위해서는 } (|V|-1)(|V|-2)$$

로 나눈다.³⁾

다. 분석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분석대상국가들 중 칠레하고만 FTA를 발효시킨 상황이어서 연결중심성은 0.03, 매개중심성은 0이었다. 동아시아 주요국을 살펴보면 중국이 0.09, 일본이 0.03, 싱가포르가 0.15의 연결중심성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0.06으로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다.

이후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연결중심성은 0.17로 중국의 0.15보다 높고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비교대상

3) Miura(2011)의 설명을 인용하였다.

국가군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분석자료에서 ASEAN을 하나의 국가군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ASEAN 개별 회원국과 EPA를 체결한 일본의 연결중심성이 다소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성공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매개중심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지표가 0.30으로서 일본의 0.25, 중국의 0.08, 싱가포르의 0.13보다 높았다. 높은 매개중심성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경제통합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협상 틀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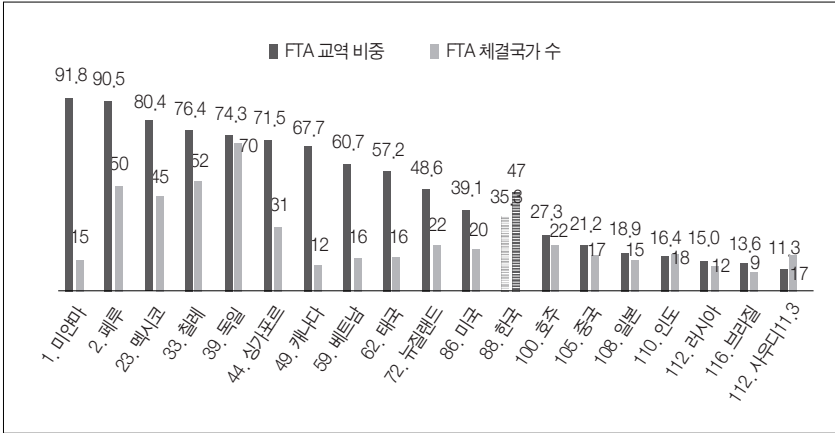
표 2-1. 주요국의 중심성지표				
국가	2004년 이전		2005~13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호주	0.06	0.00	0.11	0.03
일본	0.03	0.00	0.26	0.25
중국	0.09	0.01	0.15	0.08
한국	0.03	0.00	0.17	0.30
싱가포르	0.15	0.06	0.17	0.13
ASEAN	N/A	N/A	0.13	0.06

자료: 저자 작성.

하지만 단순체결건수만 고려한 정량평가는 여러 한계를 지닌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여타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외개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수출상대국도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어 47개국과의 FTA를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FTA 교역 비중은 35.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중국의 21.2%나 일본의 18.9%보다는 높은 수치이나 싱가포르의 71.5%나 칠레의 76.4%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박천일 2014). 따라서 FTA 상대국과의 교역 비중에 대한 고려도 동시

그림 2-4. 주요국의 FTA 교역 비중

(단위: GDP 대비, %)



자료: 박천일(2014), 「한국 FTA 10년의 경제적 효과」.

에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체결건수에 기반한 현재의 FTA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과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히 FTA 개수가 아닌 상대국 시장의 크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한·터키 FTA를 제외하면 모두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다. 특히 미국, EU와 체결한 FTA를 글로벌 통상규범의 표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FTA의 포괄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FTA의 포괄범위를 가중치로 활용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FTA별 협정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정량지표로 정리하였다. 내용은 크게 ① 서비스, ② 투자, ③ 무역원활화(세관협력 등), ④ 정부조

달, ⑤ 경쟁정책, ⑥ 지식재산권, ⑦ 인력이동, ⑧ 노동 및 환경, ⑨ 기술협력, ⑩ 제도 메커니즘으로 구분하여 각 내용별 포함수준에 따라 0~1의 값을 부여한 뒤 이를 합산하여 포괄범위의 정량지표로 활용하였다. 이 중 서비스와 투자, 무역원활화는 각각 보다 세분화된 지표인 [표 2-2 참고]를 이용하여 각 지표의 포함 여부에 따라 0, 0.5, 1의 값을 부여한 뒤 이를

표 2-2. FTA의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의 세부 지표	
분야	세부 지표
서비스	Liberalization Approach (Services)
	Cross - Border Supply (Mode1) (Services)
	Consumption Abroad (Mode2) (Services)
	Commercial Presence (Mode3) (Services)
	Presence of Natural Persons (Mode4) (Services)
	Most Favoured Nation (Services)
	National Treatment (Services)
	Market Access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Services)
	Subsidies Covered by Services Disciplines (Services)
투자	Scheduling Approach (Investment)
	Definition of Investment (Investment)
	Most Favoured Nation (Investment)
	Economic integration exception to MFN (Investment)
	National Treatment (Investment)
	NT provision applies to entry and establishment rights (Investment)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vestment)
	Clarifying text on FET (Investment)
	Expropriation (Investment)
	Clarifying text (Investment)
	Board of Directors and executive personnel (Investment)
	Investor - State arbitration (Investment)
무역원활화	Customs procedures (Trade Facilitation)
	Customs valuation (Trade Facilitation)
	Trade regulations 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 (Trade Facilitation)
	Use of ICT (Trade Facilitation)
	Mobility of business people (Trade Facilitation)
	Freedom of transit (Trade Facilitation)
	Transport and logistics (Trade Facilitation)
	Trade finance (Trade Facilitation)

자료: 아시아개발은행, <http://aric.adb.org/fta>(검색일: 2014. 4. 1).

평균하여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의 정량지표를 계산하였다.

동아시아 주요국의 FTA별 포괄범위를 정량지표로 측정하여 비교해보면, ASEAN이 평균 4.2, 호주 6.63, 중국 4.03, 일본 7.98, 한국 6.9, 싱가포르가 7.24로 나타났다(표 2-3 참고). ASEAN은 호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만 포괄적인 내용을 FTA 협정문에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은 주로 중화경제권 국가들과 상품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춰 FTA를 추진해온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수치가 낮은 이유는 파푸아뉴기니와 상품시장개방만을 논의한 FTA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역시 아직 터키와는 서비스,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 평균만 살펴보면 일본이 7.96으로 가장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FTA 체결 상대국들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거나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술한 FTA 협정문의 포괄범위를 지표화한 뒤, 이 지표와 상대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구성하여 [표 2-1]의 중심성지표를 재계산하였다. 실제 FTA 협상은 두 국가가 상호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경제규모 대신 FTA 체결국들의 경제규모를 합산하여 가중치 구성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이 포괄적인 FTA를 체결한 경우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들끼리 체결한 경우는 차별화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4년 이전 연결중심성은 0.01인데 비해, 2013년에는 0.38까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 2-4 참고). 가중치 고려 여부가 연결중심성에 미친 영향을 주요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일본이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것을 알 수

표 2-3. 주요국 FTA별 포괄범위지표

국가	상대국	FTA 포괄범위	발효연도
ASEAN	중국	3.51	2005
ASEAN	일본	3.25	2008
ASEAN	호주	7.08	2010
ASEAN	인도	0.13	2010
ASEAN	한국	7.03	2010
ASEAN 평균		4.20	
호주	뉴질랜드	6.01	1983
호주	싱가포르	4.92	2003
호주	태국	6.78	2005
호주	미국	6.96	2005
호주	칠레	8.32	2009
호주	말레이시아	6.83	2013
호주 평균		6.63	
중국	홍콩	1.83	2003
중국	마카오	1.70	2003
중국	태국	1.00	2003
중국	칠레	4.78	2006
중국	파키스탄	4.41	2007
중국	뉴질랜드	5.63	2008
중국	싱가포르	3.93	2009
중국	페루	5.78	2010
중국	코스타리카	7.20	2011
중국 평균		4.03	
일본	싱가포르	7.19	2002
일본	멕시코	7.86	2005
일본	말레이시아	7.97	2006
일본	칠레	7.82	2007
일본	태국	9.22	2007
일본	필리핀	7.75	2008
일본	스위스	9.24	2009
일본	베트남	6.85	2009
일본	페루	7.96	2012
일본 평균		7.98	
한국	칠레	7.67	2004
한국	EFTA	7.65	2006
한국	싱가포르	7.93	2006
한국	EU	7.72	2011
한국	페루	8.03	2011

표 2-3. 계속

국가	상대국	FTA 포괄범위	발효연도
한국	미국	7.03	2012
한국	터키	2.25	2013
한국 평균		6.90	
싱가포르	EFTA	7.57	2003
싱가포르	미국	8.97	2004
싱가포르	요르단	7.05	2005
싱가포르	파나마	7.17	2006
싱가포르	페루	8.12	2009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7.78	2013
싱가포르	GCC	4.05	2013
싱가포르 평균		7.24	

자료: 저자 작성.

있으며 싱가포르와 ASEAN의 경우 가중치를 고려하면 연결중심성이 더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국과 달리 중심성지표가 거의 2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등과 포괄적인 FTA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중심성지표값이 커졌으나 이는 일본 자체의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중국, 호주 등은 상대적으로 중심성지표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국가들끼리를 매개하는 역할에서 중요성을 나타내는 매개중심성지표의 변화에서는 한국, 일본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호주, 싱가포르, ASEAN 국가들이 개선되었다. 이는 매개중심성의 대상에는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들의 FTA 네트워크만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미국, EU 등 우리나라의 주요 FTA 상대국들의 네트워크가 반영되지 않은 반면, 중국이나 ASEAN 등은 주로 FTA를 체결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는 이 지역에 속한 국가들이 플랫폼 경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나 EU 등과 체결한 수

준 높은 FTA 협정은 동아시아 지역의 플랫폼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매개자 역할이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표 2-4. 주요국의 중심성지표(협정문 포괄범위 고려)

국가	2004년 이전		2005~13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호주	0,01	0,00	0,16	0,09
일본	0,04	0,00	0,55	0,21
중국	0,01	0,01	0,19	0,00
한국	0,01	0,00	0,38	0,13
싱가포르	0,22	0,06	0,06	0,17
ASEAN			0,09	0,27

자료: 저자 작성.

요약하면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지난 10년 간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FTA 로드맵의 원칙에 따라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경제규모와 협정문의 포괄범위를 가중치로 평가할 경우 연결중심성으로 측정된 성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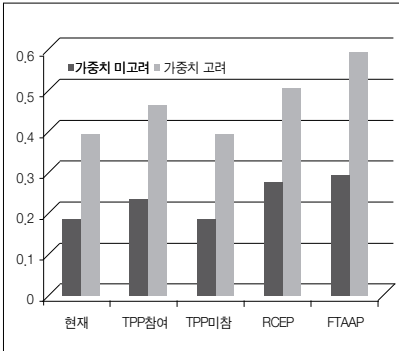
다만 동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할 경우 매개중심성은 일본이나 ASEAN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논의과정에서 매개자로서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온 FTA 플랫폼보다는 일본이나 ASEAN이 기체결한 FTA 형태가 보다 많은 국가들에 설득력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현재까지 FTA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는지 그 자체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시장접근성 개선이나 시장확보라는 점에서 조망되었다. FTA 네트워크로 인한 양자 상품교역이나 서비스교역 증가와 이로 인한 성장효과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하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이러한 FTA 네트워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FTA 통계를 토대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 FTAA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중심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연결중심성, 즉 분석대상국가들에 비해 얼마나 많은 회원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를 평가해보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 멕시코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심성이 개선되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RCEP이 타결될 경우에는 TPP보다 중심국으로서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AP이 발효되는 경우에는 RCEP에 비해 중심성지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연결중심성지표 계산에 협정문의 포괄성을 가중치로 고려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큰 폭으로 중심성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PP와 RCEP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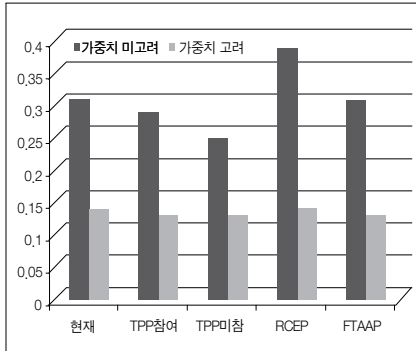
4) RCEP의 포괄범위가 TPP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가정이 무리는 아니나 실제 RCEP 협상 참여국의 기체결 FTA 수준을 고려할 경우 RCEP의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RCEP이 TPP 수준의 개방을 하는 경우와 그보다 낮은 중국의 기체결 FTA 수준에서 타결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였으나, 그 시사점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2-5. 협상별 한국의 연결중심성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6. 협상별 한국의 매개중심성



자료: 저자 작성.

매개중심성의 경우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지표는 현재보다 RCEP을 제외한 모든 경제통합 논의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경제통합에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국가들 간에도 많은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중치를 고려할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경제통합이 상당히 포괄적인 FTA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국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작아 매개자로서의 역할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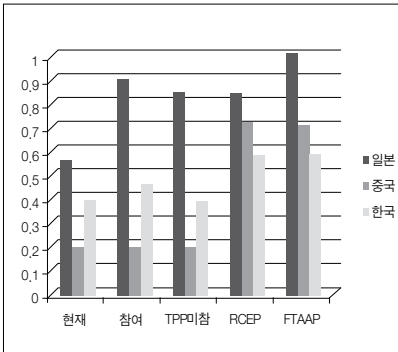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통합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작기 때문에 영향력을 펼치는데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한·중·일을 비교하였다. 경제규모에 대한 고려를 위해 가중치가 반영된 지표를 비교하면, 연결중심성에서는 일본이 두드러지고, RCEP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역 경제통합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추가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느냐를 비교하면 TPP에서의 일본과 RCEP 및 FTAAP에서의 중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FTA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할 상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근거로 FTA 네트워크의 확대는 적절하지 않아보인다. TPP와 RCEP이 동시에 발효되는 경우를 FTAAP과 유사한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보다는 그동안 FTA 네트워크 형성이 다소 부족했던 일본과 중국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제통합 논의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양자 FTA를 통해서 충분한 시장접근성을 확보했음에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식별하게 이에 초점을 맞춰 협상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는 우리의 지역경제통합에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과 중국이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누려왔던 선점효과와 소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신흥국들과의 FTA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에 활발하게 임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 FTA 신흥상대국을 발굴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중치를 고려하여 매개중심성을 계산해보면, 중국의 영향력은 미미해진 반면 TPP나 FTAAP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RCEP에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매개중심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포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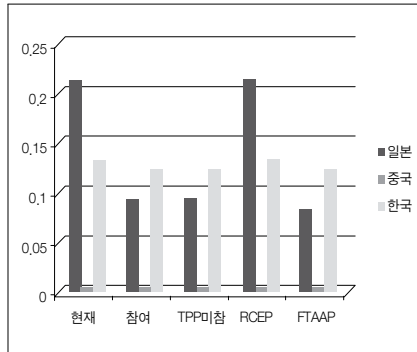
적인 FTA를 추진해왔고, 일본의 경제규모나 FTA 영향력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보다 크기 때문에 풀이된다. 아울러 TPP나 RCEP으로 인해 한·중·일 외 동아시아 지역의 여타 국가들이 매개자로서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3국은 중심에서 다소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일 3국만 비교한다면 한국은 경제규모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FTAAP, 그 과정에 있는 TPP에서는 여타국들보다 그동안 구축된 포괄적인 FTA 네트워크를 토대로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이 시사하는 점은 우리와 플랫폼 경쟁을 벌일 상대국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첫째 일단 RCEP에서는 이미 일본이 구축한 FTA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상당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ASEAN 회원국들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RCEP 협상에서 우리가 수행가능한 매개자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중간자 역할이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취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역할을 식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TPP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의 FTA 협상 틀이 미완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우리는 현재 TPP 협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미국과 체결한 FTA 덕분에 TPP에서의 매개자 역할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TPP 협상동향에 주목하여 한·미 FTA+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으로 FTAAP를 목표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FTAAP를 염두에 두고 TPP와 RCEP에서 각각 취할 역할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림 2-7. 협상별 한·중·일 연결중심성



주: 가중치를 고려한 경우이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8. 협상별 한·중·일 매개중심성



자료: 저자 작성.

2. 상품교역: 기업수준

가. 총교역규모

2004년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3년 5월에 발효된 한·티키 FTA까지 10여 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9개의 FTA가 발효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액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4년도 한·칠레 FTA가 발효되었을 때 약 7억 달러이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액은 2013년에는 1,973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도 같은 기간 19억 달러에서 1,71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2-5. FTA 체결국과의 교역: 2004~13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교역액
2004	708	1,934	2,642
2005	1,151	2,279	3,430
2006	3,296	6,008	9,304
2007	42,987	40,848	83,835
2008	54,836	49,182	104,018
2009	45,164	41,704	86,868
2010	71,099	59,693	130,792
2011	145,749	120,424	266,173
2012	189,216	166,641	355,857
2013	195,739	171,003	366,742

주: 1) 교역액은 체결된 해를 기준으로 발효에 들어간 월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FTA 체결연도의 교역을 모두 FTA 체결국과의 교역으로 간주하였다.

2) 중첩된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를 고려하지 않고, 한·ASEAN FTA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한·ASEAN FTA는 2007년을 발효연도로 기준하였다.

3) 대EU 교역은 2007년 이전은 25개국, 2007~12년은 27개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13년은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28개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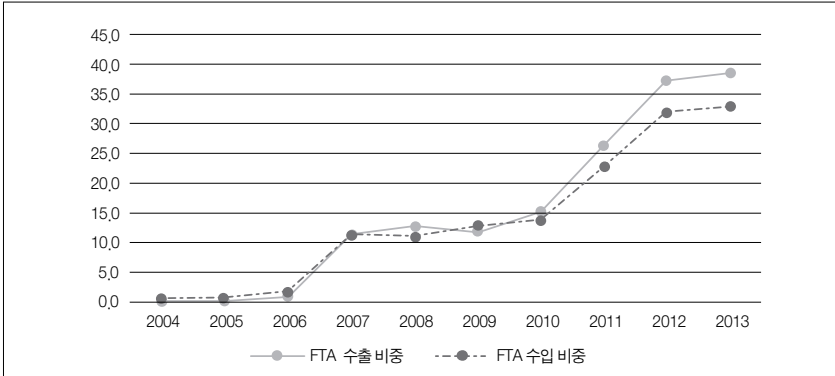
자료: KITA 무역통계, 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lang_gbn=null&statid=kts(검색일: 2014. 4. 2).

우리나라 총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수출과 수입은 각각 0.3%와 0.9%에서 2013년에는 38.6%와 33.2%로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FTA 체결국의 수와 교역 비중에서 높지 않던 한·칠레 FTA(2004년 발효), 한·싱가포르 FTA, 그리고 한·EFTA FTA(각각 2006년 발효)가 발효된 2006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과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그리고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에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도 2003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의 경우 양자 간 교역은 2003년 15억 6,000만 달러에서 2013년 71억 2,000만 달러로 발효 10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출과 수입이 각각 375.4%와 340.3% 증가하였다. 2006년에 발효된 한·EFTA FTA는

그림 2-9.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2004~13년

(단위: %)



자료: KITA 무역통계, 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lang_gbn=null&statid=kts(검색일:2014. 4. 2).

2006년 발효 이후 2013년까지 양자 간 교역은 125.5%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41.1% 증가하였고 수입이 무려 192.0% 증가하여 수입증가가 양자 간 교역의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ASEAN FTA에서 2007~13년의 6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은 111.6%, 수입은 61.1%가 증가하여 총교역액은 약 88.3% 증가하였다.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2013년까지 인도와의 교역은 약 2.6%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수입은 8.9% 증가한 반면 수출은 0.5%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EU, 미국과의 FTA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발효되어 단기적인 효과만을 살펴볼 수 있다. EU의 경우 FTA 발효 이후 2013년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2.3%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8.6% 증가하여 양자 간 교역은 약 1.9% 정도 상승하였다. 미국과의 교역도 발효 후 약 1.7% 증가하였으며 EU와는 달리 대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수출이 약 6.0% 가량 증가하여 수출증가가 양자 간 교역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자 간 교역 추이를 통해 FTA 체결국과의 교역을 살펴보면 FTA 발효 초기에는 관세효과로 인한 교역증가가 눈에 띄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관세철폐속도가 빠를수록, 관세인하의 폭이 클수록 양자간 교역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관세인하 폭과 속도가 느린 한·인도 CEPA의 경우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EU에 대한 수출도 발효 이후 오히려 감소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EFTA의 경우도 FTA 발효 이후 EFTA와의 교역확대는 주로 우리나라의 수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관세인하 폭이 큰 ASEAN이나 칠레의 경우 발효 초기 우리나라 수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칠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관세효과 이외에 FTA의 증진효과(promotion effect)가 양자 간 교역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 기업유형별 FTA 수출 현황⁵⁾

우리나라 기업, 특히 수출기업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이용실적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유형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업유형은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고,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한 기업유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세무역개발연구원에서 집계하였다.⁶⁾

5) 본 소절의 분석대상은 발효 후 최소한의 기간이 경과했다고 고려되는 한·칠레, 한·EFTA 및 한·ASEAN FTA로 한정하였다.

6) 중소기업청의 기업유형 분류는 2007~13년 수출기업만을 대상으로 제공되었고 이전 기간에는 정확한 기업유형 분류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업유형별 수출은 2007~13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표 2-6.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 2002~13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위: 백만 달러)											
칠레	수출	454	517	708	1,151	1,566	3,115	3,032	2,229	2,947	2,381	2,469	2,458
	수입	754	1,058	1,934	2,279	3,813	4,184	4,127	3,103	4,221	4,858	4,676	4,658
EFTA	수출	841	1,190	863	1,090	1,730	1,123	2,521	1,956	3,522	1,818	1,495	2,441
	수입	1,618	1,989	1,794	1,818	2,195	3,554	4,138	4,548	5,699	5,177	7,713	6,409
ASEAN	수출	18,400	20,253	24,024	27,432	32,066	38,749	49,283	40,979	53,195	71,801	79,145	81,997
	수입	16,757	18,458	22,383	26,064	29,743	33,110	40,917	34,053	44,099	53,121	51,977	53,339
인도	수출	1,384	2,853	3,632	4,598	5,533	6,600	8,977	8,013	11,435	12,654	11,922	11,376
	수입	1,249	1,233	1,850	2,112	3,641	4,624	6,581	4,142	5,674	7,894	6,921	6,180
EU	수출	21,694	24,887	37,830	43,659	48,450	55,982	58,375	46,608	53,507	55,727	49,371	48,857
	수입	17,107	19,383	24,187	27,296	30,061	36,824	39,981	32,232	38,721	47,424	50,374	56,230
페루	수출	196	204	245	282	359	466	720	641	944	1,368	1,473	1,440
	수입	205	194	283	249	676	1,040	904	919	1,039	1,950	1,639	1,983
미국	수출	23,009	24,814	28,783	30,586	33,654	37,219	38,365	29,039	40,403	44,569	43,341	41,512
	수입	23,009	24,814	28,783	30,586	33,654	37,219	38,365	29,039	40,403	44,569	43,341	41,512
타키	수출	866	1,375	2,356	2,782	3,036	4,087	3,773	2,661	3,753	5,071	4,552	5,658
	수입	125	78	104	127	194	282	362	434	516	805	672	692

주: 1) 음영 부분은 FTA 발효 이전 기간의 교역을 의미한다.

2) 한·싱가포르 FTA는 싱가포르가 ASEAN의 회원임에 따라 제외하였다.

3) EU는 2007년 27개국,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28개국으로 확대된 통계이다.

자료: KITA 무역통계, 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lang_gbr=null&statid=kts(검색일:2014. 4. 2).

한·칠레 FTA의 기업유형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07~13년 기간 우리나라 대칠레 수출은 연평균 2.1% 감소하였다. 기업유형별로 대기업의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4.2% 감소한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은 각각 연 7.8%와 11.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액은 2007년 2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3억 4,00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감소는 칠레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대기업 주요 수출품목들의 가격경쟁력 우위가 약화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증가는 관세효과가 아닌 한·칠레 FTA가 가져온 FTA 증진효과로 볼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의 수출증가는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우위에서 오는 수출증가라기보다는 FTA 체결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칠레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개척의 결과로 여겨진다.

반면에 EFTA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주로 대기업의 약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2007~13년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EFTA 수출은 41.6%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 특히 2007년 약 7억 4,000만 달러이던 대기업 수출액은 2010년에는 30억 달러까지 육박하였으나 이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3년 21억 8,0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같은 기간 수출증가는 연평균 3.1%에 불과하였다. 2007년 2억 2,000만 달러이던 수출액은 2011년 3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나 2013년 1억 8,000만 달러로 2007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EFTA 회원국 중 노르웨이와 스위스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감소가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수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 387억 달러이던 우리나라의 대 ASEAN 수출은 2013년 82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ASEAN 수출은 ASEAN 후발 참여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 국가에 대한 수출과 기존 ASEAN 회원국인 ASEAN 6(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이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인다.

먼저 CLMV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7년 CLMV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대기업 수출 비중(31.0%)을 크게 상회하였다. 그러나 한·ASEAN FTA 발효 이후인 2007~13년 대기업의 CLMV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33.4%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연평균 14.3% 증가하였다. 대기업의 CLMV 시장에서의 약진으로 2013년 우리나라의 대CLMV 수출에서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43.7%로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30.7%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기업은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철폐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반면, 생산능력이나 FTA 활용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지닌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SEAN 6에 대한 수출은 CLMV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지역으로 대기업 위주로 수출이 주도되었다. 2007년 ASEAN 6에 대한 수출에서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48.0%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였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1.2%에 불과하였다. 또한 FTA 발효 이후 대기업의 ASEAN 6 수출은 연평균 19.4%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표 2-7. 한·칠레, 한·EFTA FTA 기업유형별 수출실적: 2007~13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위: 백만 달러, %)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칠레	3,115.1	3,031.8	2,229.1	2,947.1	2,381.5	2,469.3	2,458.2		-2.1
기타	2.5	3.0	2.7	2.3	19.2	.8	29.6		
대기업	2,601.4	2,471.8	1,845.3	2,285.4	1,557.5	1,739.2	1,759.5		-4.2
중견기업	266.6	253.2	172.3	260.9	378.2	347.2	331.1		7.8
중소기업	244.6	303.9	208.8	398.5	426.6	382.1	338.1		11.5
노르웨이	596.3	2,079.8	1,606.3	2,801.1	666.4	1,061.5	1,539.4		54.8
기타	.6	.6	.9	1.3	2.3	.2	2.7		
대기업	443.2	1,832.2	1,486.8	2,657.8	553.8	972.2	1,466.1		70.1
중견기업	66.5	64.4	32.1	66.9	27.7	21.6	13.0		-10.8
중소기업	85.9	182.6	86.6	75.1	82.6	67.6	57.6		4.0
리히텐슈타인	4.2	3.6	2.4	3.7	4.1	4.7	4.5		4.4
기타							.2		
대기업			.0	.0			.0		
중견기업	2.5	2.1	1.5	2.7	.8	1.8	.9		7.2
중소기업	1.7	1.5	1.0	1.0	3.3	2.9	3.4		32.6
스위스	483.8	399.1	341.4	369.5	1,130.4	401.8	872.2		39.1
기타	6.6	3.2	2.3	1.9	11.8	.2	5.8		
대기업	270.8	227.9	210.9	150.1	861.0	227.6	693.2		92.1
중견기업	75.0	29.9	27.6	38.9	46.2	56.4	58.9		3.1
중소기업	131.3	138.0	100.7	178.6	211.4	117.6	114.3		4.4

표 2-7.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아이슬란드	38.4	38.7	6.0	347.9	16.9	27.0	25.1	927.3	
기타	.4	.0	.0	.3	.0		1.4		
대기업	27.5	15.0	3.0	183.0	10.5	15.4	16.0	980.4	
중견기업	5.2	2.0	.5	160.7	.7	.4	.8	5005.8	
중소기업	5.3	21.7	2.5	3.8	5.7	11.2	6.9	63.0	
EFTA 총계	1,122.7	2,521.2	1,956.2	3,522.3	1,817.8	1,494.9	2,441.2	29.9	
기타	7.6	3.9	3.1	3.6	14.1	.4	10.1		
대기업	741.5	2,075.0	1,700.7	2,990.9	1,425.3	1,215.1	2,175.3	41.6	
중견기업	149.3	98.3	61.6	269.3	75.4	80.2	73.6	31.9	
중소기업	224.3	343.9	190.7	258.5	303.0	199.2	182.2	3.1	

주: 기itis는 중소기업청 자료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한다.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각각 5.0%와 7.8%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3년 우리나라의 ASEAN 6 수출에서 대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3.4% 확대되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16.7%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 차이는 CLMV의 경우와 유사하게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의 유연성과 새로운 시장확보를 위한 기업의 능력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 FTA 발효 전후 기업유형별 실적 비교

2007년 국내기업 중 대기업 676개, 중견기업 1,383개 중소기업 7만 2,047개 등 총 10만 985개 기업이 수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러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은 2013년에는 대기업 715개, 중견기업 1,611개 및 중소기업 6만 2,292개로 집계되었다.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숫자는 2012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8만 6,000여 개 기업으로 늘었으나 2013년에 6만 2,000여 개 기업으로 급감하였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도 2013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7~13년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의 수는 [표 2-10]에 정리하고 있다.⁸⁾ 한·칠레 FTA와 한·EFTA FTA, 한·ASEAN FTA, 그리고 한·인도 CEPA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효기간이 길지 않은 나머지 FTA는 제외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FTA 수출 국에 대한 수출 참여는 2007~13년 기간에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7) 대기업,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기타 기업'으로 분류되었고 기타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2007년 총 2만 6,879개 기업이 있다.

8) ASEAN, EFTA 및 EU에 대한 국가별 유형별 수출 참여기업 수는 [부록]을 참고.

표 2-8. 한·ASEAN 기업유형별 수출실적: 2007~13년⁹⁾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위: 백만 달러, %)
								연평균 증가율%
CLMV	6,389.1	8,386.2	7,884.7	10,576.1	14,736.9	18,035.2	22,594.4	24.4
기타	18.7	19.5	11.4	16.0	352.7	23.5	606.1	-
대기업	1,978.8	2,989.6	2,884.9	4,486.0	6,690.9	8,859.8	9,877.4	33.4
중견기업	1,231.5	1,503.3	1,084.6	1,120.7	2,070.4	3,408.7	5,182.9	33.2
중소기업	3,160.2	3,903.8	4,103.8	4,953.5	5,623.0	5,743.2	6,928.0	14.3
ASEAN 6	32,359.7	40,886.6	33,094.5	42,619.2	57,064.5	61,110.0	59,402.4	12.4
기타	112.4	92.5	69.4	115.6	526.0	42.5	1,578.8	-
대기업	15,525.2	21,562.1	15,924.1	22,566.1	28,177.9	40,816.8	37,639.9	19.4
중견기업	9,886.5	10,899.7	10,469.2	11,517.4	17,991.7	10,300.1	10,275.1	5.0
중소기업	6,855.7	8,332.3	6,631.8	8,420.1	10,368.9	9,950.5	9,908.6	7.8
ASEAN 총계	38,748.8	49,282.8	40,979.2	53,195.3	71,801.4	79,145.2	81,996.8	14.8
기타	131.1	112.0	80.8	131.6	878.6	66.0	2,184.9	-
대기업	17,503.9	24,531.7	18,609.0	27,052.1	34,868.9	49,676.7	47,517.3	21.4
중견기업	11,097.9	12,403.1	11,553.8	12,638.0	20,062.1	13,708.8	15,458.0	9.0
중소기업	10,015.9	12,236.1	10,735.6	13,373.6	15,991.8	15,693.7	16,836.6	9.9

주: 기타는 중소기업청 자료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한다.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9) 기업유형별로 ASEAN 개별 국가에 대한 수출실적은 [부록]을 참고.

표 2-9. 기업유형별 국내 수출기업 수: 2007~13년

(단위: 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타	26,879	26,174	23,677	23,106	24,366	24,937	54,081
대기업	676	699	661	726	667	850	715
중견기업	1,383	1,404	1,381	1,219	1,109	1,742	1,611
중소기업	72,047	75,856	77,816	80,564	83,041	86,207	62,292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대칠레 수출에 참여한 대기업은 2007년 86개 기업에서 2013년에는 117개 기업으로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은 1,097개 기업에서 1,642개 기업으로 550여 개 이상의 늘어났다. 각각의 기간에 수출실적이 있는 전체 기업에서 칠레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기업유형별로 대기업은 12.7%에서 16.4%로, 중소기업은 1.5%에서 2013년 2.6%로 증가하였다. 다만 대칠레 수출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비중은 2007년 8.8%에서 2013년에 8.3%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FTA 수출에 참여한 수출기업의 비중도 대기업 참여 비중은 2007년 13.8%에서 2013년 14.4%로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참여 비중은 같은 기간 2.4%에서 2012년까지는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다가 2013년에 3.0%로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에 ASEAN 국가들에 대한 수출 참여기업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10%포인트 이상(2007년 52.4%에서 2013년 62.5%), 중견기업 참여 비중은 49.4%에서 2013년에 64.2%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소기업 참여 비중도 25.6%에서 2013년 35.7%로 대기업 증가율과 유사하게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2007~13년

(단위: 개,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칠레	기타	57	63	71	38	71	42	245
	대기업 (비중, %)	86	83	89	101	101	126	117
		12,7	11,9	13,5	13,9	15,1	14,8	16,4
	중견기업 (비중, %)	122	124	111	109	110	142	134
		8,8	8,8	8,0	8,9	9,9	8,2	8,3
	중소기업 (비중, %)	1,097	1,221	1,324	1,462	1,737	1,715	1,642
		1,5	1,6	1,7	1,8	2,1	2,0	2,6
E F T A	기타	106	122	120	143	108	76	332
	대기업 (비중, %)	93	83	92	89	93	108	103
		13,8	11,9	13,9	12,3	13,9	12,7	14,4
	중견기업 (비중, %)	131	119	145	140	136	184	169
		9,5	8,5	10,5	11,5	12,3	10,6	10,5
	중소기업 (비중, %)	1,739	1,820	1,868	1,945	2,046	2,016	1,893
		2,4	2,4	2,4	2,4	2,5	2,3	3,0
A S E A N	기타	2,256	2,242	1,782	1,808	2,127	1,931	8,120
	대기업 (비중, %)	354	339	322	364	354	460	447
		52,4	48,5	48,7	50,1	53,1	54,1	62,5
	중견기업 (비중, %)	683	719	709	649	629	1,050	1,034
		49,4	51,2	51,3	53,2	56,7	60,3	64,2
	중소기업 (비중, %)	18,411	20,251	21,593	23,273	24,798	26,234	22,261
		25,6	26,7	27,7	28,9	29,9	30,4	35,7
인도	기타		373	390	406	506	397	1,080
	대기업 (비중, %)		211	219	240	225	273	261
			30,2	33,1	33,1	33,7	32,1	36,5
	중견기업 (비중, %)		383	409	353	359	512	503
			27,3	29,6	29,0	32,4	29,4	31,2
	중소기업 (비중, %)		5,468	5,726	6,227	6,464	6,515	5,919
			7,2	7,4	7,7	7,8	7,6	9,5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인도 수출에 참여한 국내기업의 비중도 한·인도 CEPA 발효 1년 전인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수출품목 다변화와 FTA 체결 이후 FTA 대상국에 대한 수출 참여기업의 증가는 FTA로 관세가 인하·철폐되면서 기존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던 기업이 상대국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FTA가 체결 상대국에 대한 기업을 집중시켜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에 나서려는 기업의 의지를 증진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에 기업의 평균 수출액에서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기업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2007~13년 기간에 우리나라 총수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2007년 3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5억 2,00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중견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같은 기간 4,600만 달러에서 4,700만 달러로 중소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11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상승하였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 FTA 체결국에 대한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은 FTA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거의 모든 FTA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칠레 FTA의 경우 대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2007년 약 3,000만 달러에서 2013년 1,500만 달러로 약 50% 가량이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의 같은 기간 대칠레 평균 수출액도 22만 달러에서 20만 6,000달러로 하락하였다.

표 2-11.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대세계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타	.0	.0	.0	.1	.3	.0	.2
대기업	338.2	374.5	345.3	418.1	524.8	436.7	520.3
중견기업	45.8	49.7	41.5	51.4	75.4	41.8	47.7
중소기업	1.1	1.2	1.0	1.2	1.4	1.2	1.6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2-12.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대칠레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칠레							
기타	44.4	47.6	37.6	60.3	270.0	18.7	120.7
대기업	30,248.7	29,780.2	20,733.7	22,627.5	15,420.6	13,803.3	15,038.3
중견기업	2,184.9	2,041.9	1,552.6	2,393.6	3,438.1	2,445.0	2,470.8
중소기업	223.0	248.9	157.7	272.6	245.6	222.8	205.9
EFTA							
기타	72.1	31.9	26.2	24.8	130.8	5.6	30.4
대기업	7,973.2	25,000.2	18,485.6	33,606.1	15,325.4	11,250.7	21,119.2
중견기업	1,139.5	826.5	425.1	1,923.7	554.2	435.8	435.5
중소기업	129.0	189.0	102.1	132.9	148.1	98.8	96.3
ASEAN							
기타	58.1	49.9	45.3	72.8	413.1	34.2	269.1
대기업	49,446.2	72,364.8	57,792.0	74,318.8	98,499.6	107,992.8	106,302.8
중견기업	16,248.8	17,250.4	16,295.9	19,473.1	31,895.2	13,056.0	14,949.7
중소기업	544.0	604.2	497.2	574.6	644.9	598.2	756.3
인도							
기타				42.8	567.6	10.6	99.0
대기업				30,606.7	35,206.0	29,180.2	28,812.8
중견기업				4,141.9	3,972.1	2,828.8	2,659.9
중소기업				419.1	467.1	384.2	407.3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EFTA 수출의 경우 FTA 체결 이후 EFTA에 대한 대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SEAN에 대한 평균 수출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하였고 중견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3. 상품교역: 산업수준¹¹⁾

가. 수출입 현황

1) 수입 현황

[표 2-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칠레 FTA 발효연도인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산업별 수입은 대체로 증가하였다. 2008년의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 전 세계 교역액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입규모도 크게 줄어든 바 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기발효 FTA 전체 상대국으로부터 기계품목을 가장 많이 수입하였으며, 뒤를 이어 화학·고

10) EFTA 및 ASEAN 국가별 평균 수출액 변화는 [부록]을 참고.

11) 본 연구에서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분류에 따른 42개 산업별 자료(서비스업 제외)를 17개 부문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17개 산업은 다음과 같다. ① 쌀, ② 곡물·과일 및 채소, ③ 육류 및 낙농, ④ 가공식품, ⑤ 기타 농업, ⑥ 수산업, ⑦ 채취업(임업, 석탄, 석유, 가스, 광물), ⑧ 섬유·직물, ⑨ 의복, ⑩ 화학·고무·플라스틱, ⑪ 철강, ⑫ 비철금속, ⑬ 자동차, ⑭ 기타 수송기기, ⑮ 전자, ⑯ 기계, ⑰ 기타 제조업(가죽, 목제품, 종이·인쇄, 광물제품)

또한 산업별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발효 FTA는 2013년 5월에 발효된 한·터키 FTA를 제외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과의 FTA(총 8건)이다.

표 2-13.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 전체 대상국에 대한 산업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4년 대비 2013년 증가율
쌀	45	18	46	53	99	94	110	201	98	179	300.7
곡물·과일 및 채소	1,940	1,277	1,890	2,216	4,418	2,718	3,471	3,968	3,445	2,851	47.0
육류 및 낙농	609	789	916	1,216	1,364	1,192	1,466	2,762	2,214	2,127	249.2
가공식품	2,547	2,584	2,895	3,515	4,258	3,629	4,372	5,548	5,822	6,192	143.1
기타 농업	1,021	1,035	916	1,038	1,482	898	1,297	2,044	2,181	2,289	124.1
수산업	54	65	63	73	62	43	49	75	84	138	156.7
채취업	8,338	10,854	13,458	13,383	17,137	13,256	19,228	26,302	28,303	23,739	184.7
섬유·직물	1,517	1,491	1,585	1,623	1,714	1,588	2,226	2,638	2,386	2,601	71.4
의복	365	410	509	598	666	715	1,060	1,860	2,256	3,086	745.4
화학·고무 ·플라스틱	13,494	15,372	18,079	22,311	25,634	20,224	26,672	31,911	34,203	35,086	160.0
철강	3,561	4,025	3,922	6,202	7,866	6,081	7,415	8,617	7,389	7,961	123.6
비철금속	4,835	3,850	5,541	7,119	7,605	5,320	7,413	9,021	8,794	9,629	99.1
자동차	2,461	2,892	3,577	4,555	4,946	3,628	5,058	6,632	7,241	7,963	223.5
기타 수송 기기	1,528	1,952	3,011	3,242	3,042	2,072	3,793	4,817	3,910	3,884	154.2
전자	16,784	17,752	17,992	18,450	19,061	16,199	17,111	18,333	16,986	18,089	7.8
기계	18,187	21,848	24,749	29,130	29,415	25,732	33,436	34,197	35,509	38,254	110.3
기타 제조업	4,235	4,507	4,906	5,999	6,441	4,775	5,869	6,316	6,126	6,475	52.9
합계 (십억 달러)	81.5	90.7	104.1	120.7	135.2	108.2	140.0	165.2	166.9	170.5	109.2

주: 기발효 FTA 전체 대상국에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이 포함되었다.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8. 2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무·플라스틱, 채취업 및 전자 품목이었다. 단 기계와 화학·고무·플라스틱 품목의 경우 FTA 체결 이전부터 EU와 미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FTA에 따른 수입증대효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전체 분석기간 동안 ASEAN으로부터는 채취업에 포함되

는 석유 및 가스 등의 원자재와 전자산업 품목의 수입이 많았다. 2004년 대비 2013년의 수입증가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FTA 상대국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수입이 증가한 분야는 육류 및 낙농과 자동차 산업이다.¹²⁾

2) 수출 현황

[표 2-14]는 2004~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 전체 대상국에 대한 산업별 수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차 산업(쌀부터 수산업까지)의 수출규모는 예상하는 바와 같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분석기간 동안 FTA 체결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은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전자, 기계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주력 수출산업과 동일하다. ASEAN 지역은 FTA 발효 이전부터 화학·고무·플라스틱 품목의 주요 수출처였으며, 2008년 이후 수출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 2004년 우리나라 자동차, 전자, 기계 품목의 수출은 주로 미국과 EU를 대상으로 활발하였으나 한·ASEAN FTA 발효 이후부터 ASEAN 회원국에 대한 수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대비 2013년의 전자품목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다.¹³⁾ 1차 산업을 논외로 하면 2004년에 비해 2013년에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인 분야로 화학·고무·플라스틱, 비철금속, 철강, 기계 산업을 들 수 있다.

12) 2004년 대비 2013년의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은 2개 분야는 의복과 쌀 품목이나 두 산업 모두 FTA 상대국에 대한 2004년의 수입규모가 매우 미미하여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3) 단 2004년 대비 2013년 우리나라의 대세계 전자산업의 수출증가율은 24.7%였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수출규모가 같은 기간 동안 2.3배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2-14.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 전체 대상국에 대한 산업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4년 대비 2013년 증감율
쌀	0	0	0	1	1	2	2	2	1	1	50,174.1
곡물·과일 및 채소	54	69	68	79	88	97	104	108	123	144	168.3
육류 및 낙농	15	16	18	24	32	40	41	45	52	66	329.3
가공식품	534	548	580	729	838	906	1,119	1,382	1,541	1,599	199.8
기타 농업	22	28	31	28	21	16	56	76	102	185	729.0
수산업	19	25	34	34	40	43	54	64	73	82	330.1
채취업	34	43	29	62	116	24	58	75	65	56	68.0
섬유·직물	5,027	4,834	4,785	5,144	5,120	4,567	5,470	6,634	6,772	7,095	41.1
의복	1454	873	681	543	503	389	478	571	630	789	-45.7
화학·고무· 플라스틱	11,203	16,722	19,108	25,256	33,004	24,581	33,041	43,952	48,483	48,795	335.6
철강	5,486	6,613	8,710	11,046	15,059	10,753	14,153	19,370	19,431	17,492	218.8
비철금속	1,764	1,755	2,924	2,977	3,335	2,802	3,966	5,001	5,601	5,526	213.3
자동차	21,255	22,819	24,739	25,567	22,001	15,950	22,638	30,269	32,291	34,603	62.8
기타 수송기기	6,723	8,113	10,216	12,499	18,863	18,687	22,910	22,997	18,441	15,058	124.0
전자	42,250	39,258	37,927	39,382	38,813	33,428	38,864	36,418	32,686	38,424	-9.1
기계	12,510	15,888	20,954	25,638	28,229	23,524	29,504	32,404	35,102	37,268	197.9
기타 제조업	2,560	2,784	3,073	2,967	3,508	2,435	3,094	3,332	3,504	3,829	49.6
합계 (십억 달러)	110.9	120.4	133.9	152.0	169.6	138.2	175.6	202.7	204.9	211.0	90.3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8. 2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15]는 앞서 확인된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의 FTA 체결 상대국 내 수입시장점유율 현황을 나타낸다. EU, 페루, 미국과의 FTA는 발효기간이 짧아 FTA와 우리나라의 상대국에 대한 시장점유율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었다.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2009~1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또는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점유율의 추이는 칠레가 2006년

표 2-15.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의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시장점유율 현황¹⁴⁾

(단위: %)

산업	상대국 시장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화학·고무 ·플라스틱	칠레(2004)	3.6	5.1	8.8	16.9	10.0	8.0	10.7	3.2	2.5	2.9
	싱가포르(2006)	2.7	2.9	3.2	3.8	6.5	5.3	6.0	6.8	8.0	7.7
	EFTA(2006)	0.3	0.3	0.2	0.3	0.3	0.2	0.2	0.2	0.2	0.2
	ASEAN(2007)	5.3	4.9	5.1	5.8	6.7	7.0	7.7	9.2	7.9	7.6
	인도(2010)	2.5	2.6	3.3	3.5	3.6	4.5	5.4	5.1	5.7	6.4
	EU(2011)	0.4	0.4	0.5	0.5	0.6	0.6	0.5	0.6	0.6	0.7
	페루(2011)	3.5	4.6	3.4	3.7	3.4	4.4	4.6	3.2	3.3	3.6
	미국(2012)	1.8	2.2	2.5	2.7	2.0	2.0	2.4	2.4	2.7	2.6
자동차	칠레	11.5	11.7	14.0	15.7	13.9	17.3	16.2	15.3	17.0	16.3
	싱가포르	5.8	5.8	4.2	3.4	3.3	5.3	3.6	2.9	2.6	2.5
	EFTA	1.9	2.4	2.5	2.2	1.4	0.9	0.7	1.2	1.3	1.5
	ASEAN	8.5	8.1	6.4	5.5	5.6	7.2	5.1	5.4	4.5	4.1
	인도	26.3	24.4	22.7	24.6	24.8	23.6	21.3	18.1	17.2	16.7
	EU	2.0	2.4	2.4	2.0	1.5	1.4	1.4	1.6	1.9	2.0
	페루	6.4	8.1	9.3	8.1	9.4	13.2	14.0	16.2	16.6	15.3
	미국	5.6	5.0	5.0	4.9	5.0	5.5	5.1	5.9	6.2	6.6
전자	칠레	5.6	5.8	5.9	4.4	4.1	4.1	2.2	2.2	1.4	1.8
	싱가포르	7.0	7.8	8.1	9.5	10.2	12.8	11.6	11.6	13.4	13.6
	EFTA	2.2	2.8	2.4	2.1	2.1	2.1	1.8	2.1	3.9	3.5
	ASEAN	7.1	6.7	8.0	6.9	6.0	6.9	8.7	7.9	7.9	4.4
	인도	14.1	16.2	10.1	4.2	7.0	5.4	6.3	5.5	3.8	4.9
	EU	4.3	4.7	4.7	5.3	5.1	4.8	4.6	3.2	3.7	3.6
	페루	9.8	6.6	5.2	6.4	2.9	3.3	2.6	5.8	5.6	4.1
	미국	9.0	6.3	5.4	5.8	6.4	6.6	6.1	5.7	4.3	4.9
기계	칠레	2.3	2.1	1.9	1.7	3.0	3.8	2.4	2.2	2.1	2.8
	싱가포르	1.5	1.9	2.3	1.6	2.0	2.1	2.0	1.9	2.3	2.3
	EFTA	0.3	0.3	0.4	0.3	0.3	0.4	0.3	0.4	0.5	0.5
	ASEAN	4.6	4.2	3.8	4.6	4.8	4.8	4.5	5.1	5.2	5.2
	인도	5.9	4.6	4.3	4.7	4.7	4.2	5.8	5.4	5.5	5.8
	EU	1.3	1.4	1.3	1.2	1.2	1.3	1.4	1.4	1.5	1.4
	페루	2.2	1.8	1.7	1.6	1.8	1.6	1.6	2.5	2.7	2.1
	미국	2.3	2.6	2.6	2.6	2.7	3.0	3.1	3.2	3.2	3.1

주: 1. 상대국 () 안은 FTA 발효연도이다.

2. 여기서 ASEAN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회원국 전체이다.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8. 2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중국, 2007년 일본과의 FTA를 발효하는 등 적극적인 FTA 정책을 지속 해온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FTA 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제품의 상대국 시장점점 효과는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상가포르 수입시장 점유율은 화학 · 고무 · 플라스틱과 전자 산업에서만 현재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와 기계 품목에서는 다소 감소했다. 그리고 한 · ASEAN FTA 발효 이후 ASEAN 내 화학 · 고무 · 플라스틱과 기계 품목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약간 상승하였으며, 자동차 및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분석모형

우리나라가 현재 발효 중인 FTA가 우리나라의 산업별 교역에 미친 영향은 중력모형(gravity model)¹⁵⁾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기본적인 중력모형은 국가의 경제규모와 거리의 함수를 통해 양국 간 교역액을 추정하게 되며, 공통 언어, 공통 국경, 내륙국가 여부 등 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그밖의 요인들을 더미변수로 추가하여 모형을 확장할 수 있다.

먼저 기발효 FTA가 우리나라 각 산업의 수입에 미친 효과는 [식 2-1]과 [식 2-2]를 통해 추정하며, 여기서 수입국은 한국으로 고정된다. 모형의 종속변수인 IMP_{jkt} 는 t 연도 한국의 교역상대국인 j 국 k 산업으로부터

14)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주력 수출산업의 한 · 중 · 일 시장점유율 추이는 [부록 5] 참고

15) 중력모형(gravity model)은 국가 간 무역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을 연구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석모형으로 Tinbergen(1962)에 의해 국제무역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Anderson(1979)에 의해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의 수입액을 의미한다. $\ln GDP_{jt}$ 는 t 연도 j 국 명목 국내총생산의 로그값으로서 일반적으로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교역량은 늘어나게 된다. $\ln Dist_j$ 는 한국과 상대국 수도 간 물리적 거리의 로그값으로 양국 간 거리가 멀수록 교역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교역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inland_j$ 는 상대국이 내륙국가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고, $partner_j$ 는 교역상대국의 특성을 통제하는 더미변수이다. 그리고 $year_t$ 는 연도별 거시경제적인 변동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이며, ϵ_{jkt} 는 오차항이다.

$$\ln IMP_{jkt}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Dist_j + \beta_3 FTA_{jt} + \beta_4 inland_j + \sum_j \gamma_j partner_j + \sum_t \delta_t year_t + \epsilon_{jkt}$$

[식 2-1]

$$\ln IMP_{jkt}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Dist_j + \beta_3 \ln Tariff_{jkt} + \beta_4 FTA_{jt} + \beta_5 inland_j + \sum_j \gamma_j partner_j + \sum_t \delta_t year_t + \epsilon_{jkt}$$

[식 2-2]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FTA_{jt} 는 t 연도에 우리나라와 j 국이 FTA를 체결한 상태일 때 1의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정의된다. [식 2-1]의 FTA 변수는 관세감축의 효과를 비롯하여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효과까지 포함하고 있다. [식 2-2]에서는 FTA의 효과를 관세와 그밖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 위하여 관세변수를 추가하였다. $Tariff_{jkt}$ 의 값은 한국과 j 국이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협정의 양허스케줄에 따른 특혜관세율을 이용하고, 양국 간에 발효

중인 FTA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대세계 실행관세율(MFN applied)을 적용하였다. 즉 *Tariff* 변수는 FTA 체결을 통해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를 반영하며, FTA 변수는 관세를 제외한 FTA에 수반되는 다양한 교역증대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한편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효과는 [식 2-3]과 [식 2-4]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IMP_{ijkt} 는 t 연도 한국과의 FTA 기발효국인 i 국의 교역상대국(j 국) k 산업으로부터의 수입액을 나타낸다. 즉 FTA 기발효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곧 우리나라의 수출효과로 보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식 2-1] 및 [식 2-2]와 비교하면, 수입국에 여러 대륙의 국가들이 포함된 만큼 지리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통 국경과 공통 언어 더미변수인 *Adjacency*와 *Language*를 추가하였다. 또한 FTA_e 는 수입국이 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FTA_k 는 수입국이 한국과의 FTA를 발효한 시점부터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므로 이 모형에서 우리의 관심변수는 FTA_k 가 된다.

$$\ln IMP_{ijkt}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Dist_{ij} + \beta_3 FTA_e_{jt} + \beta_4 FTA_k_t + \beta_5 Adjacency_{ij} + \beta_6 Language_{ij} \\ + \beta_7 inland_{ij} + \sum_j \gamma_j partner_j + \sum_t \delta_t year_t + \epsilon_{jkt}$$

[식 2-3]

$$\ln IMP_{ijkt}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Dist_{ij} + \beta_3 \ln Tariff_{ijkt} + \beta_4 FTA_e_{jt} + \beta_5 FTA_k_t + \beta_6 Adjacency_{ij} \\ + \beta_7 Language_{ij} + \beta_8 inland_{ij} + \sum_j \gamma_j partner_j + \sum_t \delta_t year_t + \epsilon_{jkt}$$

[식 2-4]

표 2-16. 변수의 통계적 특성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입국: 한국	<i>IMP</i> (천 달러)	28,488	127,424	935,027.4	0,001	3,56e+07
	<i>GDP_j</i>	31,677	5.88e+11	1.76e+12	1.44e+08	1.62e+13
	<i>Distance</i>	35,222	9,220,086	4,035,601	955,6511	19,629.5
	<i>Tariff</i>	35,096	9.4225	26.8030	0	1,866.9
	<i>FTA</i>	35,222	0.1896	0.3920	0	1
	<i>inland</i>	35,222	0.1627	0.3691	0	1
	<i>IMP</i> (천 달러)	1,120,586	74,399.88	831,705.9	0	1.54e+08
수입국: 한국의 FTA 상대국	<i>GDP_j</i>	1,410,722	5.22e+11	1.64e+12	1.55e+07	1.62e+13
	<i>Distance</i>	1,553,058	6,071,078	4,292,853	36,1766	19,812.04
	<i>Tariff</i>	1,752,020	0.8596	6.9349	0	1,529.81
	<i>FTA_e</i>	1,553,058	0.3127	0.4636	0	1
	<i>FTA_k</i>	1,553,058	0.0033	0.0576	0	1
	<i>Adjacency</i>	1,553,058	0.0339	0.1810	0	1
	<i>Language</i>	1,553,058	0.0986	0.2982	0	1
	<i>inland</i>	1,553,058	0.1571	0.3639	0	1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5. 20); World Bank Indicators Database,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검색일: 2014. 5. 20); CEPII Database, http://www.cepii.fr/CEPII/en/bdd_modelle/bdd.asp(검색일: 2014. 5. 20); WTO RTA-IS,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검색일: 2014. 5. 21); UNCTAD TRAINS, <http://wits.worldbank.org/wits>(검색일: 2014. 5. 26)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위와 같은 실증분석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2002~12년까지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국(45개국)과 244개 교역상대국 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가 간 연도별 수입액은 UN COMTRADE(검색일: 2014. 5. 20), 각국의 연도별 GDP와 1인당 GDP는 World Bank Indicators Database(검색일: 2014. 5. 20)에서 수집하였다. 교역상대국의 지리적 자료는 CEPII(Centre d'Etudes Prospectives)의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4. 5. 20)로부터 추출하였고, FTA의 체결 여부는 WTO의 지역무역협정 정보시스템(검색일: 2014. 5. 21)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와의 FTA를

발효 중인 국가의 관세율 정보는 UNCTAD의 TRAINS(검색일: 2014. 5. 26)에서 확보하였다.

[표 2-16]은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보여준다. 수입국이 한국의 FTA 상대국인 모형의 변수값을 살펴보면, 수입액의 최솟값은 0이나 전체 표본에서 0인 관측치의 수는 1,310개로 비중이 0.1%에 불과하므로 추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선형접근법을 채택하였으며, 패널형식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 연도 더미 등을 포함하는 고정효과(fixed effects)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변수들이 가외치(outlier)를 포함하고 있어서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후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다. 분석결과

그동안 연구들이 특정 산업(군)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반면, 본 연구에서는 모든 대분류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설명에 앞서, 본 분석방법론은 산업별 자료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산업별 이질성은 자료를 분리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FTA 변수를 통해 관세 및 다양한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총체적인 효과를 식별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밝힌다. 다만 FTA 상대국별로 교역구조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상품양허의 내용도 다를 수 있는데, FTA의 평균적인 효과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되, 결론에서는 산업별 영향을 추정치보다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산업별 수입효과

[표 2-17]은 [식 2-1]과 [식 2-2]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평균적인 산업별 수입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며, 통계적·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값들만 명시하였다. 산업별 FTA 계수의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발효 FTA는 가공식품, 섬유·직물, 철강, 기타 제조업 분야의 수입증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야들은 철강 산업을 제외하면 모두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특히 HS 15류(동식물성 유지), HS 17류(당류와 설탕과자), HS 21류(각종 조제식료품)의 수입이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HS 52류(면), HS 54류(인조 장섬유), HS 55류(인조 단섬유)를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섬유·직물의 경우 2011년까지 수입이 늘어나다가 2012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분석기간 동안 기발효 FTA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졌다. 철강산업은 크게 HS 72류(철강)와 HS 73류(철강의 제품)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4년을 기점으로 두 품목 모두 수입액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72류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과 중국이므로 기발효 FTA는 주로 73류의 지속적인 수입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제조업은 가죽제품, 목제품, 종이 및 유리와 같은 광물제품 등을 포함하며 ASEAN과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FTA의 수입효과는 [식 2-2]의 추정결과와 같이 관세 인하에 따른 혜택과 각종 비관세장벽의 완화효과로 나눌 수 있다. 즉 FTA 발효로 인하여 특혜관세가 적용되면 곡물·과일 및 채소, 가공식품, 채취업, 섬유·직물, 철강, 비철금속, 기타 수송기기, 전자산업에서 우리

표 2-17.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산업별 상품교역 효과: 수입

산업	변수	[식 2-1]	[식 2-2]	
		<i>FTA</i>	$\ln Tariff$	<i>FTA</i>
쌀				
곡물 · 과일 및 채소			-0.303*** (0.0529)	
육류 및 낙농				
가공식품		0.378* (0.228)	-0.167** (0.0775)	
기타 농업				
수산업				
채취업			-0.293*** (0.0657)	
섬유 · 직물		0.396* (0.234)	-0.189** (0.0806)	
의복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철강		0.439** (0.213)	-0.211*** (0.0459)	0.388* (0.215)
비철금속			-0.155*** (0.0358)	
자동차				
기타 수송기기			-0.434*** (0.0640)	
전자			-0.652*** (0.0709)	
기계				
기타 제조업		0.352*** (0.128)		0.339*** (0.129)
partner, year dummy		yes	yes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2) 관심변수의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추정치만 표기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나라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세를 제외한 여러 형태의 교역장벽 완화는, 특히 철강제품과 기타 제조업에 속하는 품목의 수입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곡물·과일 및 채소로 분류되는 품목은 최대 기본세율이 887.4%에 이르며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므로 FTA 발효 이후 협정관세가 적용되면 이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모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FTA 체결 시 양허제외 또는 10년 이상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의 수입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추정되는 곡물·과일 및 채소에 대한 수입증가효과는 발효 10년차인 한·칠레 FTA의 영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¹⁶⁾ 향후 한·ASEAN FTA와 한·미 FTA를 비롯한 그밖의 FTA 협정세율이 충분히 낮아지면 곡물·과일 및 채소의 수입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농산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채취업 또한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곡물·과일 및 채소의 수입증가와와는 차이점이 있다. 석유와 역청유,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은 제조업 생산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품목의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증가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FTA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HS 854231)를 중심으로 한 전

16) 예컨대 신선포도(기본세율 45%)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2014년 한·칠레 FTA 협정세율은 0%이나 여타 FTA에서는 여전히 관세가 남아 있고 한·미 FTA의 경우 계절관세로 37%(5. 1~10. 15)와 12%(1. 1~4. 30, 10. 16~12. 31)의 관세가 부과된다.

자품목(HS 85류, 기본세율은 0~13%)에 대한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더욱 원활하게 중간재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즉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이는 최종재의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2) 산업별 수출효과

[표 2-18]은 [식 2-3]과 [식 2-4]를 통해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산업별 수출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산업별 FTA 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육류 및 낙농, 가공식품, 채취업,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기타 제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육류 및 낙농 관련 품목과 가공식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은 미미한 편이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높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ASEAN FTA 발효 이후 ASEAN 회원국에 대한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HS 제0207호)의 수출이 급증하였고, 가공식품 중에서는 동·식물성 유지(HS 15류), 소스를 비롯한 조제품(HS 21류), 감미료를 첨가한 물(HS 제2202호) 등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발효 FTA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화학·고무·플라스틱 관련 제품의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이에 따라 FTA 체결 상대국의 수입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17)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HS 제2710호, 등유, 경유, 중유 등),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HS 제4002호) 등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산업별 상품교역 효과: 수출

산업	변수	식 (2-3)	식 (2-4)	
		FTA_k	$\ln Tariff$	FTA_k
쌀			-0.155* (0.0892)	
곡물 · 과일 및 채소			-0.173*** (0.0172)	
육류 및 낙농		0.533** (0.229)	-0.313*** (0.0260)	
가공식품		0.453** (0.187)	-0.480*** (0.0191)	
기타 농업			-0.295*** (0.0251)	2.931*** (0.423)
수산업			-0.632*** (0.0334)	
채취업		0.687*** (0.254)	-0.748*** (0.0310)	
섬유 · 직물			-0.539*** (0.0413)	
의복			-0.942*** (0.0517)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0.884*** (0.273)	-0.229*** (0.0296)	1.764*** (0.472)
철강		0.541*** (0.187)	-0.555*** (0.0250)	1.429*** (0.325)
비철금속		0.754** (0.341)	-0.520*** (0.0511)	
자동차			-0.747*** (0.0361)	
기타 수송기기			-0.844*** (0.0443)	
전자			-0.624*** (0.0280)	
기계			-0.477*** (0.0223)	
기타 제조업		0.303*** (0.105)	-0.807*** (0.0137)	
partner, year dummy		yes	yes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2. 관심변수의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추정치만 표기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점차 상승하였다. 예컨대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3.6%에서 2007년 16.9%로, ASEAN 지역에서는 2007년 5.8%에서 2011년 9.2%까지 상승한 바 있었다.

FTA의 수출효과는 [식 2-4]의 추정결과와 같이 관세감축과 비관세장벽 완화효과로 나눌 수 있다. 관세변수의 계수값이 모든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지므로 우리나라에 대한 FTA 상대국의 관세인하는 전 산업의 수출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자동차, 전자, 기계품목에 대해서도 상대국의 시장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TA 발효 이후 수출규모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품목들은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인 바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확대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칠레, 페루의 수입자동차시장과 싱가포르의 전자산업 관련 품목에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이후 한국산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의복산업과 기타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은 아니나 해당 품목에 대한 FTA 상대국의 관세율이 높은 편이므로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로 생각된다.¹⁸⁾

화학·고무·플라스틱 및 철강 품목의 수출은 관세요인을 제외한 여타 교역장벽이 완화될 경우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품

18) 의복산업(HS 61~63류)에 대한 FTA 상대국의 기본세율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칠레(6%)와 싱가포르(0%)의 경우에만 낮은 편이고 그 외에 ASEAN 회원국은 15%, 인도 10%, 페루 17%, 미국 16% 내외이다. 기타 제조업(가죽제품, 목제품, 종이·인쇄, 광물제품 등)에는 의복산업의 기준세율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품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목들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저해하는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 한·ASEAN FTA나 한·인도 FTA 등에서도 화학·고무·플라스틱 및 철강 산업의 일부 품목은 상대국이 민감품목 또는 양허제외품목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4. 부가가치 교역

가. 부가가치 교역의 의미

무역통계는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무역통계를 포함하며, 이는 양국 사이에 거래되는 생산물의 상업적 가치(commercial value)로부터 도출된다. 모든 생산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져 최종재 형태로 교역된다면 이러한 무역통계는 수출국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FTA는 체결국 사이에 존재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교역 비용을 감소시키므로 생산 네트워크의 국제적 분화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¹⁹⁾ 즉 전 세계적으로 협정 체결국가 간 중간재 교역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²⁰⁾

19) FTA가 생산 네트워크 분화(곧 수직적 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Lopez-Gonzalez and Holmes(2011), Lopez-Gonzalez(2012) 참고.

20) 이러한 현상은 수직적 특화(vertical specialization), 오프쇼어링(offshoring), 역할의 교역(trade in tasks)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WTO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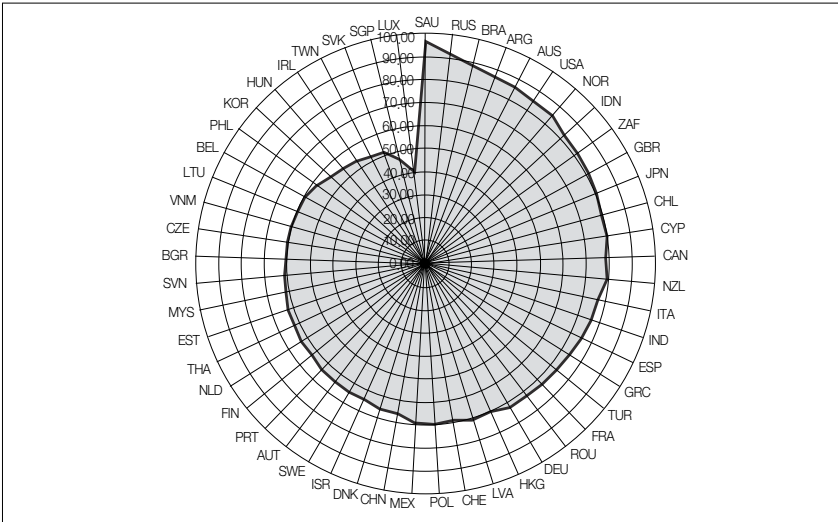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전통적인 총액 기준의 무역통계는 이중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운송, 물류, 금융 등 무역에 필수적인 서비스 부문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 교역을 측정하는 것은 이중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공급사슬(supply chain)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다양한 원천을 추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2-10]은 총액 기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체화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은 거의 100% 국내투입 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룩셈부르크는 40%로 그 비중이 크게 떨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6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총수출액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 그만큼 해외투입물에 더욱 많이 의존하게 되므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개입수준(즉 수직적 특화 정도)은 높아지게 된다.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주로 업스트림(upstream) 생산물의 수출업자가 되며 반대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 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림 2-11]은 2008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 및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 현황을 보여준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는 앞서 언급한 총수출에 체화된 해외 부가가치와 중간재 형태로 제3국에 수출된 국내 부가가치를 합하여 도출되며 [그림 2-10]이 나타내는 값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지수라고 할 수 있다.²¹⁾ 2008년 우리나

21) 부연하면 제3국에서의 생산공정을 위해 국내 부가가치가 투입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림 2-10. 총액 기준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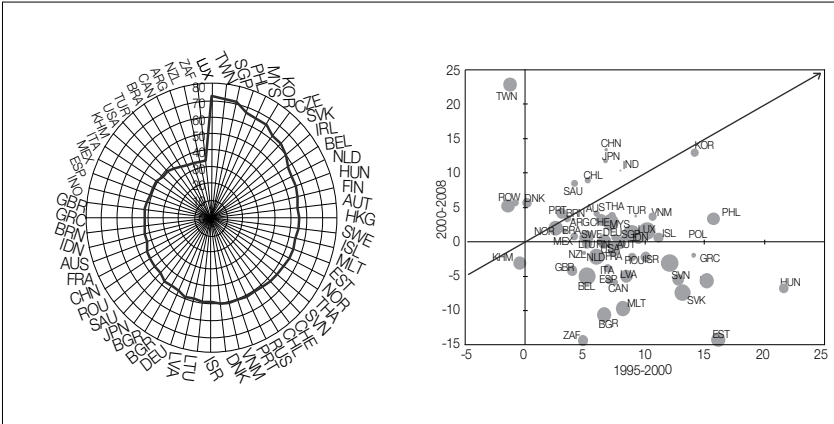
자료: Escaith and Gaudin(2014), p. 6.

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는 약 65%로 분석대상국가들 가운데 높은 편이며, 우리나라보다 높은 참여수준을 보이는 국가로 룩셈부르크,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캐나다, 브라질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가 40% 미만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의 산포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45°선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995~2000년 시기에 비해 2000~08년 시기에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수준이 더 낮았음을 의미한다. 45°선 위쪽의 국가들은 일본, 중국, 인도, 대만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많으며, 한국은 대략 두 시기에 가치사슬 내 활동 정도가 유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000년대

천연자원 수출국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2-11.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

(단위: GDP 대비, %)



주: 오른쪽 산포도에서 버블의 크기는 1995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 값을 의미한다.

자료: Escaith and Gaudin(2014), p. 7.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부가가치 교역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나. 분석 모형 및 데이터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2013년에 OECD와 WTO는 기존 총액 기준의 무역통계가 아닌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우리나라 부가가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²²⁾

$$\begin{aligned}\ln FDDVA_{jkt}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GDPpc_{jt} + \beta_3 \ln Dist_j + \beta_4 FTA_{jt} \\ &\quad + \beta_5 inland_j + \sum_{l=1}^9 \gamma_l region_l + \epsilon_{jkt} \\ \epsilon_{jkt} &= \alpha_k + \alpha_t + u_{jkt} \quad , \quad u_{jkt} \sim i.i.d.(0, \sigma^2)\end{aligned}$$

[식 2-5]

$$\begin{aligned}\ln FDFVA_{jkt}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GDPpc_{jt} + \beta_3 \ln Dist_j + \beta_4 FTA_{jt} \\ &\quad + \beta_5 inland_j + \sum_{l=1}^9 \gamma_l region_l + \epsilon_{jkt} \\ \epsilon_{jkt} &= \alpha_k + \alpha_t + u_{jkt} \quad , \quad u_{jkt} \sim i.i.d.(0, \sigma^2)\end{aligned}$$

[식 2-6]

[식 2-5]와 [식 2-6]은 각각 부가가치 수출(FDDVA)과 부가가치 수입(FDFVA)을 종속변수로 하고 있다. 양국 간 교역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과 달리 [식 2-5]와 [식 2-6]에서는 t 연도 교역상대국의 명목 1인당 국내총생산을 나타내는 $GDPpc_{jt}$ 변수와 교역상대국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인 $region_l$ 변수를 추가하였다.²³⁾ α_k 는 산업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인데 산업구분에서도 [식 2-1] ~ [식 2-4]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이번 분석에서 활용하는 산업분류는 부가가치 교역자료의 특성에 맞추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포함하

22)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Neiman(2010)과 같이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23) 지역은 총 9개로 ① 동아시아, ②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③ 중동과 북아프리카, ④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⑤ 카리브해와 남아메리카, ⑥ 북아메리카, ⑦ 유럽, ⑧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⑨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는 18개 부문이 된다.²⁴⁾ 또한 α_t 는 연도별 거시경제적인 변동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식 2-7]과 [식 2-8]에서는 [식 2-5]와 [식 2-6]의 FTA 변수가 한국이 교역상대국과 체결한 개별 FTA로 대체되었다. 가장 최신의 부가가치 교역자료가 2009년 자료인 관계로 개별 FTA 가운데 2007년 6월 발효된 한·ASEAN FTA까지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begin{aligned} \ln FDDVA_{jkt} =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GDPpc_{jt} + \beta_3 \ln Dist_j + \beta_4 CHL_{jt} \\ & + \beta_5 SGP + \beta_6 EFTA + \beta_7 ASEAN + \beta_8 inland_j + \sum_{l=1}^9 \gamma_l region_l + \epsilon_{jkt} \\ \epsilon_{jkt} = & \alpha_k + \alpha_t + u_{jkt} \quad , \quad u_{jkt} \sim i.i.d. (0, \sigma^2) \end{aligned}$$

[식 2-7]

$$\begin{aligned} \ln FDFVA_{jkt} =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GDPpc_{jt} + \beta_3 \ln Dist_j + \beta_4 CHL_{jt} \\ & + \beta_5 SGP + \beta_6 EFTA + \beta_7 ASEAN + \beta_8 inland_j + \sum_{l=1}^9 \gamma_l region_l + \epsilon_{jkt} \\ \epsilon_{jkt} = & \alpha_k + \alpha_t + u_{jkt} \quad , \quad u_{jkt} \sim i.i.d. (0, \sigma^2) \end{aligned}$$

[식 2-8]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비OECD 회원국(전체 54개

24) 18개 산업이란 ① 농림수산업, ② 채취업, ③ 가공식품, ④ 섬유·의복·가죽·신발류, ⑤ 목재 및 제지업, ⑥ 화학 및 비철금속, ⑦ 철강, ⑧ 기계·장비, ⑨ 전자·광학기기, ⑩ 운송기기, ⑪ 기타 제조업, ⑫ 전기·가스·수도, ⑬ 건설, ⑭ 도소매 및 호텔업·외식업, ⑮ 운송·저장·우편·통신, ⑯ 금융중개업, ⑰ 비즈니스 서비스업, ⑱ 기타 서비스업을 말한다.

국) 사이의 부가가치 교역자료는 OECD Trade in Value Added(TiVA) 데이터베이스(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가용)에서 추출되었다. 여기서 외국 최종수요에 내포된 국내 부가가치(Domestic value added embodied in foreign final demand)를 ‘부가가치 수출’로, 그리고 국내 최종 수요에 내포된 외국 부가가치(Foreign value added embodied in domestic final demand)를 ‘부가가치 수입’으로 보았다. 그밖에 GDP 및 1인당 GDP는 World Bank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 지리적 자료는 CEPII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다. [표 2-19]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통계적 특성을 보여준다.

표 2-19. 변수의 통계적 특성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i>FDDVA</i> (천 달러)	4,860	169,653.3	577,760.1	0	1.01e+07
<i>FDFVA</i> (천 달러)	4,860	159,440.6	568,910.5	0	1.60e+07
<i>GDP_j</i>	4,860	7.73e+11	1.85e+12	3.44e+09	1.47e+13
<i>GDPpc_j</i>	4,860	21,777.15	19,139.28	288,0203	112,028.5
<i>Distance</i>	4,860	8,074.038	3,662.491	955,6511	19,447.35
<i>FTA</i>	4,860	0.0926	0.2899	0	1
<i>inland</i>	4,860	0.1111	0.3143	0	1

자료: OECD TiVA, http://stats.oecd.org/BrandedView.aspx?oeed_bv_id=data-00648-en&doi=data-00648-en (검색일: 2014. 6. 17); World Bank Indicators Database,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검색일: 2014. 5. 20); CEPII Database, http://www.cepii.fr/CEPII/en/bdd_modele/bdd.asp(검색일: 2014. 5. 20); WTO RTA-IS,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검색일: 2014. 5. 21)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분석결과

FTA가 상대국과의 부가가치 교역에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는 이론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가 부가

가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내수용 중간재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한 요소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산업별 분석과 유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용한 부가가치 교역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FTA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밀한 심층연구는 후속 연구주제로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후술할 총교역의 관점에서 FTA 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부가가치의 관점에서의 FTA 효과를 비교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과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통상환경 속에서 FTA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표 2-20]은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가 부가가치 수출과 수입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FTA 계수의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양자 간 부가가치 교역규모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부가가치 수출액과 부가가치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식 2-5]와 [식 2-6]을 추정했을 때 FTA 변수의 계수값은 각각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수출입에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 수입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가 칠레와 같은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 2-7]과 [식 2-8]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부가가치 교역 효과를 각 FTA별로 분석해보면, 우선 한·칠레 FTA는 양국 간의 부가가치 교역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칠레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석유정제품(경유, 휘발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주력 수출품목이기도 한 만큼 국내 부가가치 비중

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원자재(구리, 동광, 펄프)와 농산물(포도, 돼지고기)은 전체 부가가치에서 생산지인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싱가포르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가가치 수입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상국인 싱가포르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정제품, 선박, 집적회로반도체 등이 있으나 반도체는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도 많은 품목이므로 부가가치 수출증가분을 상쇄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한·EFTA FTA와 한·ASEAN FTA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교역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FTA 계수값이 통계적·경제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EFTA 회원국 교역규모가 미미하며, 특히 분석기간인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선박의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교역규모가 더욱 축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 간의 교역규모는 크지만 전자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내 무역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FTA 체결에 따른 부가가치 교역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ASEAN 회원국에 따라 이 FTA 상품협정 발효일이 상이하고 서비스협정은 개별적으로 발효되었기 때문에²⁵⁾ 현재의 분석자료로 부가가치 교역에 대한 한·ASEAN FTA의 포괄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25)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일을 살펴보면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는 2007년 6월, 필리핀은 2008년 1월, 브루나이는 2008년 7월, 라오스는 2008년 10월, 캄보디아는 2008년 11월, 태국은 2010년 1월이며, 서비스협정은 2007년 11월에 발효되었다.

표 2-20.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부가가치 교역 효과

변수	부가가치 수출		부가가치 수입	
	[식 2-5]	[식 2-7]	[식 2-6]	[식 2-8]
<i>FTA</i>	0.124*** (0.0403)		0.224*** (0.0855)	
<i>CHL</i>		0.873*** (0.0814)		0.969*** (0.244)
<i>SGP</i>		0.294*** (0.0876)		
<i>EFTA</i>				
<i>ASEAN</i>				
region, industry, year dummy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4,845	4,845	4,736	4,736
Adjusted R ²	0.920	0.922	0.729	0.730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2) 관심변수의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추정치만 표기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5. 품목 다변화 및 집중도

가. FTA별 품목 다변화

다음에서는 FTA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입품목의 외연적 다양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품목 다양성은 양국이 교역하는 품목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FTA 정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TA를 통해 종전에 교역하지 않았던 품목이 수입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

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유사품목끼리 경쟁하게 되면서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중간재의 조달처가 다양화되면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FTA 발효 이후 상대국으로 과거에 수출하지 않던 품목을 수출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소수의 품목에 의존하여 수출함으로써 대외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새롭게 수출하기 시작한 품목들이 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FTA 정책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자생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품목 수는 [표 2-21]에 정리하고 있다. 각각의 FTA 체결 1년 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가 FTA 체결 상대국에 수출한 품목을 HS 10단위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해당 연도의 우리나라 총수출품목 수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품목 비중을 계산하였다.

한·칠레 FTA에서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품목은 발효 직전인 2003년 1,118개에서 2012년 총 1,821개 품목으로 700여 개 품목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총수출품목 수에서 칠레에 수출되는 품목의 비중도 같은 기간 13.1%에서 19.2%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칠레 FTA 수출품목 수와 비중은 대칠레 수출액이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크게 감소하였던 것에 반해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FTA에 대한 수출품목 수도 발효 전년도인 2005년에 1,394개 품목에서 2011년 1,715개 품목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다소 줄어 총 1,699

표 2-21.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수출품목 수 및 비중(HS 10단위)

(단위: 개,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칠레	1,118	1,173	1,245	1,226	1,307	1,495	1,536	1,648	1,785	1,821
(비중, %)	13.1	13.7	14.4	14.3	14.6	16.6	16.9	17.9	19.3	19.2
EFTA			1,394	1,427	1,491	1,507	1,575	1,639	1,715	1,699
(비중, %)			16.1	16.6	16.7	16.8	17.3	17.8	18.5	18.0
ASEAN				6,034	6,366	6,583	6,735	6,974	6,988	7,219
(비중, %)				70.2	71.3	73.2	74.1	75.9	75.4	76.3
인도							3,300	3,483	3,569	3,593
(비중, %)							36.3	37.9	38.5	38.0
EU								5,227	5,403	5,467
(비중, %)								56.9	58.3	57.8
페루								1,242	1,297	1,319
(비중, %)								13.5	14.0	13.9
미국									5,546	5,777
(비중, %)									59.8	61.1
총수출 품목 수	8,535	8,579	8,672	8,601	8,928	8,993	9,087	9,191	9,270	9,460

주: 빈 셀은 각 상대국과의 FTA가 발효되기 이전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개 품목이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출품목 비중도 2005년 16.1%에서 2011년에는 18.5%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18.0%를 차지하면서 약 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SEAN은 우리나라의 FTA 체결 대상국 중 수출품목 수에서 가장 높은 수를 기록하는 국가로 미국이나 EU로 수출되는 수출품목 수를 넘어선다. FTA 전후 수출품목 수를 비교해보면 FTA 체결 직전인 2006년 ASEAN에 대한 수출품목은 HS 10단위에서 총 6,034개 품목으로 당해 우리나라 총수출품목의 70.2%가 ASEAN으로 수출되었다. 2012년 ASEAN에 대한 수출품목 수는 총 7,219개로 비중에서는 76.3%로 약 6%포인트,

품목 수에서는 1,000개 이상 증가하였다.

여타 FTA의 경우도 발효 이후의 기간이 짧아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발효 초기 수출품목 수와 비중이 모두 소폭 상승하였다.

수입품목 수도 수출품목 수와 마찬가지로 FTA 전후를 비교했을 때 FTA 체결 이후의 품목 수와 총수입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칠레 FTA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입품목은 발효 직전인 2003년 222개 품목에서 2012년에는 500개 품목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입품목 비중도 2.2%에서 4.5%로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EFTA로부터 수입되는 품목 수도 2005년 2,833개에서 2012년 3,207개로, 대ASEAN 수입품목 수는 2006년 5,336개 품목에서 2012년 6,304개 품목으로 약 1,000개 가량의 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품목 수의 증가는 수출품목 증가 추이에 비해 증가 품목 수나 비중 변화에서 다소 약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품목은 FTA 이후 점진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액이나 수입액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늘고 주는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품목 혹은 수입품목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은 FTA가 상대국과의 교역 다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에서 눈에 띄는 교역품목 수의 증가는 FTA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2-22.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수입품목 수 및 비중(HS 10단위)

(단위: 개,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칠레	222	206	262	279	280	344	437	428	465	500
(비중, %)	2.2	2.0	2.6	2.8	2.6	3.3	4.1	4.0	4.3	4.5
EFTA			2,833	2,938	2,984	3,105	3,040	3,091	3,187	3,207
(비중, %)			27.9	29.0	27.6	29.4	28.4	28.8	29.7	28.8
ASEAN				5,336	5,491	5,779	5,907	6,050	6,171	6,304
(비중, %)				52.7	50.8	54.7	55.1	56.4	57.5	56.7
인도							3,147	3,355	3,446	3,713
(비중, %)							29.4	31.3	32.1	33.4
EU								8,248	8,493	8,759
(비중, %)								76.9	79.1	78.8
페루								369	399	464
(비중, %)								3.4	3.7	4.2
미국									8,219	8,466
(비중, %)									76.6	76.1
총수입 품목 수	10,160	10,115	10,145	10,126	10,799	10,569	10,722	10,721	10,732	11,120

주: 빈 셀은 각 상대국과의 FTA가 발효되기 이전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나. 기업유형별 품목 다변화

우리나라 기업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기타 기업으로 분류하여 각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를 정리한 내용은 [표 2-23]과 같다. 한·칠레 FTA, 한·EFTA FTA, 그리고 한·ASEAN FTA는 2007~13년 기간에 대해, 2010년에 발효한 한·인도 CEPA는 발효 1년 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EU FTA와 한·페루 FTA는 2010~13년, 그리고 2012년에 발효된 한·미 FTA의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는 2011~13년 기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대체로 수출품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2007년 1,030개에서 2013년 1,375개로 33.5% 증가하였고 중견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280개에서 488개로 7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 수출품목 수의 증가율(같은 기간 268개에서 606개로 126.1% 증가)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EFTA와 ASEAN²⁶⁾에 대한 수출품목 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대EFTA 수출품목은 2007년 202개 및 244개 품목에서 2013년 각각 343개와 387개 품목으로 늘어나 69.8%와 58.6%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대ASEAN 수출에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각각 52.9%와 67.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증가율은 EFTA 수출의 경우 약 13.7% 그리고 ASEAN 수출의 경우는 약 11.2%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증가율이 3.9%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품목 증가율도 대세계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인도, EU, 미국 등 상대적으로 발효기간이 짧은 FTA에서도 대기업의 수출품목 증가율 강세는 두드러진다. 인도의 경우 2009~13년 기간에 대

26) EFTA 및 ASEAN 국가별 수출품목 수는 [부록 2] 참고.

표 2-23.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단위: 개,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칠레								
기타	54	71	63	45	144	26	284	
대기업	268	411	455	483	585	611	606	126.1
중견기업	280	349	321	301	299	450	488	74.3
중소기업	1,030	1,107	1,181	1,305	1,372	1,401	1,375	33.5
EFTA								
기타	41	75	56	57	71	60	331	
대기업	202	260	288	341	310	307	343	69.8
중견기업	244	202	265	250	307	342	387	58.6
중소기업	1,299	1,296	1,323	1,388	1,445	1,406	1,477	13.7
ASEAN								
기타	650	730	585	536	1,203	453	3,589	
대기업	1,812	2,057	2,073	2,236	2,361	2,612	2,770	52.9
중견기업	2,046	2,266	2,451	2,584	2,489	3,266	3,429	67.6
중소기업	5,708	5,916	6,029	6,305	6,317	6,411	6,346	11.2
인도								
기타			107	100	275	73	849	
대기업			902	1,070	1,229	1,273	1,350	49.7
중견기업			969	887	944	1,268	1,262	30.2
중소기업			2,839	3,043	3,112	3,074	2,883	1.5
EU								
기타				432	877	343	2,001	
대기업				1,942	1,933	2,142	2,124	9.4
중견기업				1,731	1,837	2,363	2,457	41.9
중소기업				4,717	4,798	4,747	4,617	-2.1
미국								
기타					1,144	664	2,575	
대기업					1,807	1,959	2,039	12.8
중견기업					1,816	2,479	2,463	35.6
중소기업					4,977	5,137	5,043	1.3
세계								
기타	2,309	2,424	2,422	2,322	3,225	1,757	6,527	
대기업	3,862	4,227	4,390	4,684	4,832	5,116	5,223	35.2
중견기업	4,692	4,842	4,943	4,836	4,790	5,753	5,926	26.3
중소기업	8,577	8,663	8,753	8,901	8,926	9,066	8,912	3.9

주: 1) 증가율은 FTA별로 데이터 정리가간 동안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2) 빈 셀은 각 상대국과의 FTA가 발효되기 이전이다.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기업의 수출품목 수 증가율은 49.7%로 거의 50%에 육박한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은 약 1.5% 남짓 증가하였다. 대EU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은 발효 1년 전인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오히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 FTA 발효 2년 동안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수 증가는 1.3%에 그치고 있다.

다. 품목 다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1) 전체 수출입품목 수

[식 2-9]는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수 및 수입품목 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²⁷⁾ FTA로 인하여 체결국 사이에 존재하던 각종 교역장벽이 완화되면 기존에 거래가 이루어지던 품목의 교역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목의 거래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품목의 다변화는 우리 정부가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대하는 효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식 2-9]에서는 t 연도 한국의 교역상대국 j 에 대한 수출품목 수 또는 수입품목 수를 종속변수($Item_{jt}$)로 설정하고, 설명변수에 FTA 변수를 포함하여 현재 발효 중인 각각의 FTA가 우리나라의 교역품목 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²⁸⁾ FTA 체결 이후 수출품목 수가 증가한다

27) 분석에 필요한 한국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 수출품목 수, 수입품목 수는 한국관세무역 개발원의 월별 수출입데이터(HS 코드 10단위 기준)에서 가공하여 도출하였다. 한국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은 HS 코드와 GTAP 코드를 연계하여 산업별로 가중평균하여 도출하였고, 수출품목 수와 수입품목 수 역시 상대국의 산업별로 HS 코드 10단위 기준 품목 수를 계산하였다.

28) 단, 수출품목 수 및 수입품목 수의 기준이 되는 HS 코드 10단위(HSK)는 분석기간 동안

면, 이는 교역상대국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수입품목 수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국내시장의 경쟁이 심화되 는바 선택의 폭 확대에 따른 소비자후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begin{aligned}\ln \ddot{y}em_{jt} =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GDPpc_{jt} + \beta_3 \ln Dist_j + \beta_4 CHL_t \\ & + \beta_5 SGP_t + \beta_6 EFTA_t + \beta_7 ASEAN_t + \beta_8 \in D_t \\ & + \beta_9 EU_t + \beta_{10} PER_t + \beta_{11} USA_t + \beta_{12} inland_j \\ & + \sum_{l=1}^9 \gamma_l region_l + \sum_t \delta_t year_t + \epsilon_{jt}\end{aligned}$$

[식 2-9]

그리고 [식 2-10]은 t 연도 한국의 교역상대국 j 의 k 산업에 해당되는 수출품목 수 또는 수입품목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설명변수에 FTA 변수를 포함하여 산업별로 FTA의 교역품목 다변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begin{aligned}\ln \ddot{y}em_{jkt} =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GDPpc_{jt} + \beta_3 \ln Dist_j + \beta_4 FTA_{jt} \\ & + \beta_5 inland_j + \sum_{l=1}^9 \gamma_l region_l + \sum_t \delta_t year_t + \epsilon_{jkt}\end{aligned}$$

[식 2-10]

여섯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2002년 1만 1,237개 품목에서 2012년 1만 2,232개 품목으로 8.85% 자연증가하였으므로 효과분석 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표 2-24. 우리나라 기발효 FTA별 교역품목 수에 대한 효과

	수출품목 수	수입품목 수
<i>CHL</i>	0.456*** (0.103)	0.307*** (0.0648)
<i>SGP</i>	0.634*** (0.111)	0.295*** (0.105)
<i>EFTA</i>		
<i>ASEAN</i>	0.279*** (0.0533)	0.293*** (0.0486)
<i>IND</i>		
<i>EU</i>		0.353*** (0.0455)
<i>PER</i>		0.293* (0.152)
<i>USA</i>		
region, year dummy	yes	yes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2) 관심변수의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추정치만 표기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표 2-24]는 [식 2-9]를 이용하여 기발효 FTA가 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역품목 수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칠레, 싱가포르 및 ASEAN과의 FTA는 해당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품목과 수입품목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칠레와의 교역품목 수를 꾸준히 증가시켜온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싱가포르를 비롯한 ASEAN 회

29) 이러한 결과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칠레 수출기업 수의 변화를 분석한

원국은 FTA 체결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이었으며 FTA를 계기로 더욱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ASEAN FTA의 발효시기가 ASEAN 회원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FTA의 효과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U 및 페루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수입품목 수 증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EU FTA는 발효 3년차에 불과하나 EU는 이번 FTA를 통해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품목의 94%를 즉시철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EU 수입 다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아연광, 동광 같은 광물제품이나 한·페루 FTA 이후 여타 품목의 수입도 점차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EFTA FTA, 한·인도 FTA 및 한·미 FTA가 우리나라 상대국과의 교역품목 수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경제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EFTA FTA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EFTA 지역에 수출하는 품목은 선박과 자동차이며, 수입품목은 기계류와 원유, 금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인도 FTA의 경우, 인 도축 상품양허가 주로 이행 7년차 이상에서 관세가 철폐되는 일정이어서 FTA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미 FTA는 발효기간이 짧은 편으로 현재까지는 이 FTA가 우리나라의 수출입품목 수 증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배찬권 외(201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표 2-25.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산업별 교역품목 수에 대한 효과

	수출품목 수	수입품목 수
쌀		
곡물 · 과일 및 채소	0.144*** (0.0515)	0.501*** (0.0432)
육류 및 낙농	0.469*** (0.0667)	
가공식품	0.151*** (0.0431)	0.520*** (0.0423)
기타 농업	0.181*** (0.0518)	0.241*** (0.0470)
수산업		0.353*** (0.112)
채취업	0.257*** (0.0408)	0.498*** (0.0407)
섬유 · 직물	0.199*** (0.0603)	0.268** (0.104)
의복	0.190*** (0.0622)	0.222** (0.0907)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0.225*** (0.0327)	0.407*** (0.0615)
철강	0.147*** (0.0371)	0.306*** (0.0552)
비철금속	0.110** (0.0488)	0.329*** (0.0760)
자동차	0.104** (0.0446)	
기타 수송기기	0.250*** (0.0483)	0.270*** (0.102)
전자	0.130*** (0.0439)	0.391*** (0.0811)
기계	0.156*** (0.0423)	0.356*** (0.0798)
기타 제조업	0.160*** (0.0206)	0.304*** (0.0303)
region, year dummy	yes	yes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2) 관심변수의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추정치만 표기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2) 산업별 수출입품목 수

[표 2-25]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산업별 교역품목 수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FTA 변수의 계수값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양(+)의 부호를 가졌다. 즉 기발효 FTA는 쌀과 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수출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쌀, 육류 및 낙농,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수입품목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교역품목 수 증가는 FTA 체결국 사이에 특혜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더불어 각종 비관세장벽도 완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라. 품목 집중도

전 절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이 교역하는 품목의 개수에 초점을 맞춰 FTA가 품목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품목 다양성 개선이 충분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새로이 교역하는 품목들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야 한다. 즉 품목 다양성 개선이 품목 집중도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성과로 폄하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수의 대기업이 FTA의 성과를 독식하고 있고 FTA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중소기업과 농업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에서 FTA 발효 이후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기업유형별 세부 품목 자료를 이용하는 대신, HS 코드 6단위 수준에서의 허핀달지수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집중도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① 상위 k개의 품목에 대

한 의존도를 이용하는 CR(Concentration Ratio) k지수와 ② 허핀달(Herfindahl)지수가 있다. 전자는 상위 k품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여 집중도를 계산하므로 경쟁력 시장에서는 매우 작은 값을,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과점에서는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 측정이 쉽고 해석이 직관적이라는 장점과 함께 상위 몇 개를 분석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를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후자는 모든 품목의 비중을 제공하여 합산하는 방식($HHI = \sum_{i=1}^N s_i^2$)으로 역시 값이 작을수록 경쟁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허핀달지수를 이용하여 교역품목집중도를 측정해보았다. 앞서 새로이 교역을 시작한 품목들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상위 몇 개의 품목보다는 모든 교역품목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1) 수입품목집중도

[표 2-26]은 FTA 상대국과 전 세계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HS 6단위 품목별 수입 비중을 이용하여 허핀달지수를 계산한 것이다. 대세계 수입의 집중도 추이를 보면 2000년 0.037에서 2013년에는 0.048로 증가하여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HS 코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6단위 품목 수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 FTA 상대국의 집중도 추이를 살펴보면, 칠레와 미국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이가 비교적 뚜렷한 반면, ASEAN이나 EU는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다. 분석대상기간 동안 인도는 매우 빠르게 집중도가 강화되

표 2-26. FTA 상대국의 수입품목집중도

연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전 세계
2000	0,282	0,097	0,068	0,044	0,011	0,328	0,054	0,073	0,037
2001	0,250	0,035	0,066	0,080	0,007	0,139	0,035	0,191	0,034
2002	0,312	0,065	0,063	0,087	0,005	0,269	0,034	0,165	0,026
2003	0,261	0,046	0,063	0,070	0,006	0,195	0,038	0,028	0,028
2004	0,284	0,034	0,068	0,081	0,007	0,195	0,036	0,033	0,027
2005	0,203	0,024	0,076	0,154	0,006	0,202	0,030	0,024	0,035
2006	0,219	0,029	0,071	0,240	0,007	0,321	0,027	0,046	0,040
2007	0,197	0,051	0,078	0,299	0,009	0,332	0,026	0,125	0,038
2008	0,208	0,039	0,078	0,353	0,008	0,263	0,022	0,066	0,049
2009	0,222	0,034	0,079	0,309	0,007	0,213	0,015	0,098	0,035
2010	0,241	0,035	0,062	0,296	0,011	0,286	0,018	0,100	0,036
2011	0,220	0,035	0,063	0,348	0,009	0,207	0,017	0,101	0,046
2012	0,222	0,150	0,058	0,302	0,010	0,217	0,017	0,198	0,053
2013	0,199	0,029	0,056	0,173	0,010	0,146	0,013	0,083	0,04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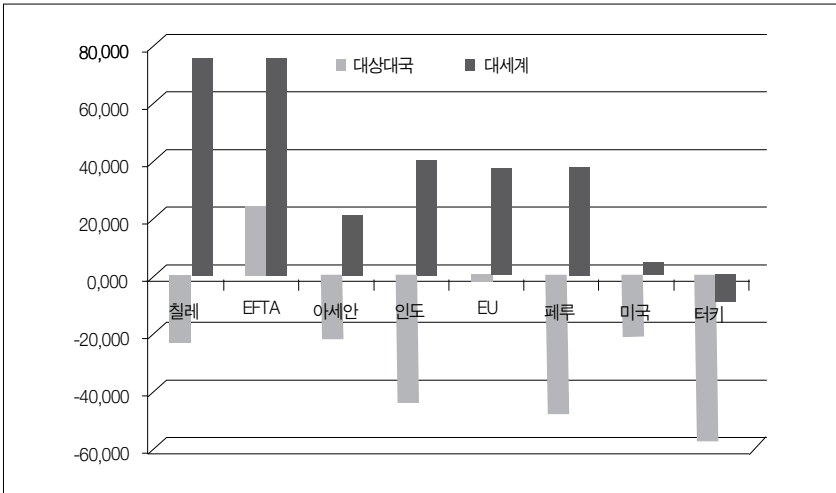
다 안정세로 돌아섰고 EFTA, 터키, 페루 등은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각 FTA별로 발효 전년과 2013년의 수입품목집중도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같은 기간 대세계 수입품목집중도의 변화율을 비교하면 [그림 2-12]와 같다.³⁰⁾ EFTA를 제외한 모든 FTA 상대국에서 수입품목의 집중도는

30) 실제 지수의 경우 대상대국과 대세계를 비교하기에는 그 절대적 수치의 차이가 매우 크다. 현재 품목단위에서 분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수치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보다 적절

그림 2-12. FTA 발효 전 후 수입품목집중도 변화(변화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크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FTA 이전에 비해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기 시작했거나 과거에는 수입 비중이 낮았던 품목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대세계 수입품목집중도는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집중도 완화는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상품 다양성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후생증가와 함께 경쟁구조의 변화를 통한 효과가 우리 경제에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기간 동안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변화율을 사용하였다.

2) 수출품목집중도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집중도를 허핀달지수를 통해 살펴 보았다. 대세계 수출집중도는 2000년 0.025에서 2013년 0.024로 소폭의 등락은 있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주력 수출 품목은 적지 않은 변화를 보였으나,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출품목집중도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FTA 상대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칠레에 대한 수출품목집중도는 0.045에서 2007년 0.348로 정점을 달한 뒤 다시 0.076으로 하락했고 EFTA는 0.268에서 0.467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타 상대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 추세이다.

표 2-27. FTA 상대국의 수출품목 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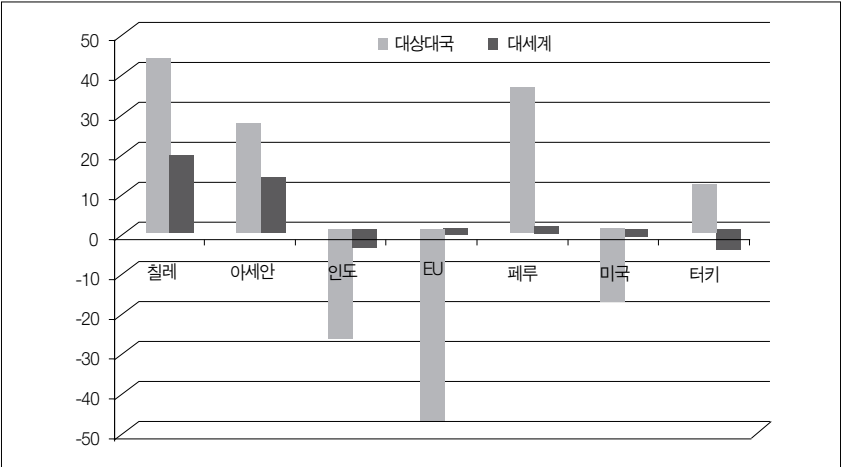
연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전 세계
2000	0,045	0,268	0,076	0,026	0,034	0,032	0,049	0,033	0,025
2001	0,051	0,214	0,044	0,027	0,030	0,033	0,048	0,060	0,018
2002	0,038	0,220	0,034	0,022	0,033	0,032	0,048	0,017	0,019
2003	0,053	0,282	0,035	0,086	0,030	0,036	0,063	0,029	0,021
2004	0,043	0,116	0,037	0,065	0,044	0,066	0,064	0,036	0,021
2005	0,074	0,119	0,047	0,071	0,055	0,032	0,048	0,032	0,021
2006	0,124	0,248	0,050	0,057	0,048	0,027	0,042	0,031	0,021
2007	0,348	0,142	0,052	0,027	0,044	0,035	0,046	0,033	0,023
2008	0,236	0,289	0,061	0,034	0,047	0,031	0,051	0,029	0,024
2009	0,108	0,288	0,047	0,025	0,064	0,065	0,067	0,022	0,025
2010	0,150	0,333	0,048	0,024	0,047	0,056	0,050	0,019	0,024
2011	0,077	0,309	0,062	0,021	0,034	0,057	0,047	0,017	0,024
2012	0,076	0,284	0,071	0,022	0,032	0,082	0,038	0,013	0,025
2013	0,076	0,467	0,064	0,019	0,025	0,075	0,039	0,014	0,024

자료: 저자 작성.

FTA 발효 이후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해, 발효 전년과 2013년도 수출집중도의 변화율을 계산했으며, 비교를 위해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집중도 변화율도 병기하였다. EFTA의 경우 2013년도의 급격한 집중도 강화현상으로 인해 제외하였다. FTA 발효 이후 수입집중도는 거의 모든 FTA 상대국에서 완화된 반면, 수출집중도의 경우에는 인도, EU, 미국에서는 완화된 반면 칠레, ASEAN, 페루, 터키 등에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상대국에 따라서는 FTA 발효 이후 종전에 주로 수출하던 품목의 교역액이 크게 증가하는 내연적 성장이 새로이 수출되기 시작한 품목의 교역액이 증가하는 외연적 성장보다 빠르게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내연적 성장을 이룬 품목들 중에서도 주력 수출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13. FTA 발효 전 후 수출품목집중도 변화(변화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6. 서비스 교역 및 투자

가. 서비스

1) 분석 모형 및 데이터

서비스 교역에 대한 분석모형은 [식 2-11]과 같으며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분석모형과 동일하다. 종속변수인 Y_{jkt} 는 t 연도 한국의 교역상대국인 j 국 k 서비스 부문으로부터의 수출액 및 수입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서비스 부문은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정보서비스,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문화·레크리에이션 서비스로 총 8개 부문이다. 분석을 위한 설명변수로는 상대국의 GDP 및 1인당 GDP, 양국 수도 간의 거리, 내륙국가 여부가 포함되며, 지역별·산업별·연도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식 2-11]을 통해 FTA가 전체 서비스 교역 및 각 서비스 부문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³¹⁾

$$\begin{aligned}\ln Y_{jkt}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GDPpc_{jt} + \beta_3 \ln Dist_j + \beta_4 FTA_{jt} \\ &+ \beta_5 inland_j + \sum_{l=1}^9 \gamma_l region_l + \epsilon_{jkt} \\ \epsilon_{jkt} &= \alpha_k + \alpha_t + u_{jkt}, \quad u_{jkt} \sim i.i.d.(0, \sigma^2)\end{aligned}$$

[식 2-11]

31) 서비스 교역 데이터 이용의 한계로 [식 2-11]의 FTA는 싱가포르 및 EU와의 FTA만을 대상으로 한다. 칠레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자료만 존재하여 2004년에 발효된 FTA의 효과를 식별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EFTA는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의 2009년 이후 자료만 확보되었다. 그밖에 ASEAN, 인도, 페루, 미국의 서비스 교역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각 FTA가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추정할 수 없었다.

위의 실증분석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2002~12년까지 우리나라와 52개 서비스 교역상대국 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서비스의 국가별 및 부문별 수입자료는 UN Service Trade Database(검색일: 2014. 5. 29)에서 구하였다.³²⁾ UN Service Trade Database는 주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서비스 수출입자료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에도 2005년까지의 자료만이 존재한다.³³⁾ 그러나 서비스 교역에는 관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수입)은 곧 한국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수출)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순찬(2012), 김영귀, 배찬권, 금혜윤(2013)에서와 같이 선진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수입)자료를 한국의 수입(수출)자료로

표 2-28. 변수의 통계적 특성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EXP(달러)	1,507	9.42E+07	3.98E+08	-3.91E+07	5.54E+09
IMP(달러)	1,555	9.78E+07	4.03E+08	-3.02E+09	4.31E+09
GDP_j	1,716	9.59E+11	1.59E+12	2.21E+09	1.31E+13
$GDPpc_j$	1,716	27,547.64	18,385.55	433,2351	112,028.5
Distance	1,716	7,582.20	2,119,546	955,6511	18,364.51
FTA	1,716	0.1783	0.3829	0	1
inland	1,716	0.1964	0.3974	0	1

자료: 저자 작성.

32) UN Service Trade Database는 운송서비스, 해외여행 등을 비롯하여 11개 부문별 서비스 교역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서비스 교역은 대체로 Mode 1(국경 간 공급)을 토대로 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FTA 체결의 효과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부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3) 전체 1,716개 관측치 가운데 75.6%에 해당되는 1,297개 관측치가 유럽국가들이며, 그 밖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라시아 등에 위치한 국가들에 대한 관측치가 존재한다. <https://unstats.un.org/unsd/servicetrade/default.aspx>(검색일: 2014. 5. 29).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그밖에 설명변수에 사용된 자료는 앞서 언급되었던 상품교역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동일하다. [표 2-28]은 서비스 교역에 대한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요약하고 있다.

2) 분석결과

[표 2-29]는 [식 2-11]을 이용하여 FTA 발효가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로 모형 (1)은 전체 서비스 교역, 모형 (2)는 각 서비스 부문의 교역을 나타낸다. 모형 (1)의 FTA 계수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양자 간 서비스 교역규모의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수입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FTA 체결을 통해 교역장벽이 완화되면서 Mode 1(국경 간 공급)³⁴⁾ 형태의 서비스 수입이 늘어났고 컴퓨터·정보서비스 및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부문에서 교역이 크게 활발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서비스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EU 회원국들이 분석 자료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형 (2)는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부문별 서비스 수출과 수입에 미친 효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FTA는 특히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컴퓨터·정보서비스, 기타 비즈니스서비스의 수출입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체로 상품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부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서비스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운송서비스 중에서는 국제 여객 및 화물의 해상운송이 더욱 활발해지

34)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들은 상대국에 시장접근의무, 내국민대우의무, 최혜국대우의무를 부여하여 Mode 1(국경 간 공급) 형태의 교역을 활성화시킨다.

표 2-29.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서비스교역 효과

변수	수출		수입	
	(1)	(2)	(1)	(2)
<i>FTA</i>	0.662*** (0.214)		0.935*** (0.186)	
운송서비스		1.020*** (0.239)		0.615** (0.301)
통신서비스		1.264** (0.574)		1.056** (0.459)
건설서비스				1.140** (0.550)
보험서비스		1.172*** (0.376)		0.890* (0.463)
금융서비스				
컴퓨터·정보서비스		1.146* (0.688)		0.859* (0.462)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1.343*** (0.252)		0.683** (0.328)
문화·레크리에이션 서비스				
region, year dummy	yes	yes	yes	yes
industry dummy	yes	no	yes	no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2) 관심변수의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추정치만 표기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면서 이와 관련된 보험서비스(수출입적하보험 등)의 거래도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와 같은 Mode 3(상업적 주재) 형태의 교역은 여전히 제한적이거나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Mode 1의 교역은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컴퓨터·정보서비스와 기타 비즈니스서비스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

라 국제교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³⁵⁾

그리고 건설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서비스 수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체결 상대국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정도가 상이하긴 하지만 건설현장조사업무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유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발효 FTA가 금융서비스와 문화·레크리에이션 서비스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³⁶⁾ 우리나라는 여러 FTA 금융협상을 통해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금융자료 처리와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및 이전, 중개를 제외한 자문서비스와 같이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시장개방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FTA가 금융서비스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상대국도 대체로 보험서비스에 비해 여타 금융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 폭을 낮게 설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역시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 양허를 약속한 분야가 매우 한정적인 관계로 FTA의 교역 효과를 파악할 수 없었다.

35) 기타 비즈니스서비스에는 예컨대 경영컨설팅서비스,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통신 자문서비스, 인쇄 및 출판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36) 일반적인 FTA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금융서비스의 하위범주로 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와 ②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서비스는 보험서비스를 제외한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나.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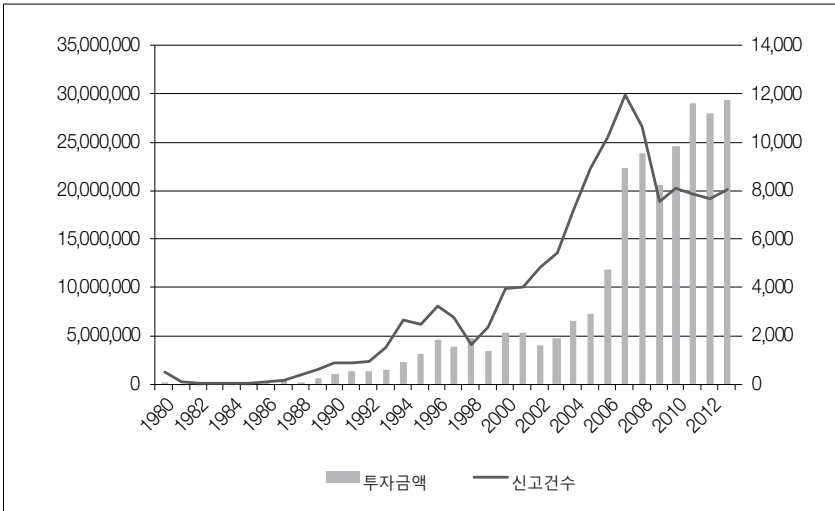
1) 현황

한국의 해외투자(Outward FDI)는 1990년대 초중반을 시작으로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對세계 투자신고건수와 투자금액은 1968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각각 13만 2,136건, 총 2,651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200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해외투자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전년 대비 약 19%의 투자액이 감소했으나 이후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의 FTA 기체결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OFDI)는 FTA 발효 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양국 간 FTA 협정을 토대로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자국 내 기업과 투자국 내 모기업 간 제품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해외투자채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Thangavelu & Findlay 2011). 본 장은 한국과의 FTA 기체결국별 투자 현황을 정리하고 FTA 체결이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대경제권인 미국과 EU의 경우 각각 FTA 발효 2년, 3년차로 이행 및 활용률을 평가하기에는 통계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난점이 있다. 하지만 이 절에서는 FTA 발효 전후의 기체결국별 투자동향을 비교하고 FTA와 해외투자 유입 및 유출 관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림 2-14. 한국의 IFDI 신고건수 및 투자

(단위: 건, 천 달러)



주: 1) 1990~2014년 8월 현재까지의 신고건수 및 투자금액.

2) 투자금액은 왼쪽, 신고건수는 오른쪽.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type=04>(검색일: 2014. 8. 25, 8. 26, 8. 27.).

가) 칠레

칠레와의 첫 번째 FTA 체결국가로 2014년 발효 10년차인 우리나라는 FTA 체결 이후 칠레에 대한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칠레 해외투자규모는 2억 8,164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FTA 체결 직전인 2003년까지 약 20년 동안 칠레로의 우리나라 투자규모가 6,167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을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4.6배 급증한 투자유출액은 수치적으로만 보아도 FTA 체결로 인한 효과로 예상할 만하다. 한·칠레 FTA 체결 이전에는 주로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농·임·어업, 광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졌으나, FTA 체결 이후에는 기존 업종과 더불어 건설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업종별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1980~2014년(8월) 도착 기준 칠레로 유출된 한국의 업종별 전체 해외투자 누계는 약 3억 4,331만 달러로 이 중 농·임·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8%(286만 달러), 광업 69.2%(2억 3,758만 달러), 제조업 6.1%(2,082만 달러), 건설업 6.0%(2,044만 달러), 도매 및 소매업 16.6%(5,688만 달러), 교육서비스업 1.1%(385만 달러)에 이르며 광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광업은 대부분 FTA 발효 이후 누계된 해외투자로 전체 투자액 중 99.9%(2억 3,746만 달러)에 이르며, 도매 및 소매업도 전체 투자액 중 67.9%(3,861만 달러)를 차지하는 등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칠레의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다소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칠레 FTA 발효 직후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된 투자건수는 12건으로 약 885만 달러 규모만이 집계되었다. KSIC 산업분류 기준으로 2004~14년 동안 칠레로부터의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99.4%(880만 달러)로 대부분 도매 및 소매업과 운수 및 창고(물류)업에 대한 투자가 강세를 띠었다. KOTRA 무역관 조사에 따르면 현재 LG상사, LG전자,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전자, 포스코건설, 한진해운 등을 비롯하여 27개 우리나라 기업들이 칠레에 주재하고 있다(OIS 해외투자 진출 정보포털, 검색일: 2014. 8. 28).³⁷⁾

37) OIS 해외투자 진출 정보포털,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562&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pds&p_deps2=(검색일: 2014. 8. 28).

나) 싱가포르

한·싱가포르 FTA 발효 전 한국의 對싱가포르 해외투자규모를 살펴보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약 12억 1,716만 달러에 해당하는 정도이다.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로 투자관계가 더욱 밀접해진 2006~14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건수는 1,261건으로 FTA 체결 전 566건에 비해 2.8배 증가했고, 투자금액은 약 4배 증가한 47억 4,084만 달러로 크게 상승했다. 한국의 對싱가포르 해외투자는 FTA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1980~2014년 상반기까지 투자금액 기준 11위(59억 5,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도착 기준 해외직접투자를 주요 업종별로 분류하면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93건, 15억 9,825만 달러로 투자금액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신고건수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407건(13억 9,165만 달러)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제조업 290건(10억 8,903만 달러),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1건(9억 886만 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0건(3억 7,085만 달러) 순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광업,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강세를 띠고 있다. 과거에는 도매 및 소매업을 포함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FTA 체결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對싱가포르 투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 체결 전 490만 달러에 불과한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FTA 체결 후 13억 6,579만 달러에 육박하는 등 무려 280배 가량 대폭 증가하였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FTA 체결 전과 비교했을 때 8억 1,268만 달러 규모로 303배 이상 증가하였다. KOTRA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에 주재한 한국 기업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 등 포함)은 172개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대한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OFDI) 유입도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토대로 한·싱가포르 FTA 발표 이후 투자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 투자규모가 현저히 확대되었으나, 각 연도별 투자규모에 대한 증감률이 일정치 않게 나타나 FTA 체결과 투자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따르고 있다.

다) EFTA

유럽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국은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를 지목하여 처음으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對EFTA 해외투자 역시 EFTA 체결 후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EFTA 체결 전 5년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건수는 19건(3,996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체결 후 5년간 81건(17억 5,459만 달러)으로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EFTA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업종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각각 49건(2억 5,762만 달러), 49건(1억 6,914만 달러)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높으나, 투자금액에서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6억 9,834만 달러의 규모로 가장 크다. 특히 한국의 對EFTA 해외투자의 상당 규모를 차지하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99.9% 이상이 EFTA 체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보아 FTA 체결이 이 업종 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음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라) ASEAN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OFDI) 현황을 살펴보면 동아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2-30 참고).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9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ASEAN 해외직접투자가 꾸준히 투자액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對ASEAN 투자는 2012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3년도에 이내 증가하여 우리나라와의 FTA를 체결한 ASEAN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對ASEAN 투자금액은 총해외직접투자(2,541억 달러)의 14.5%(368억 달러)를 차지한다(표 2-31 참고).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은 베트남으로 ASEAN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27%(9.9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표 2-30. 한국의 ASEAN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베트남	1,376,529	608,861	855,384	1,048,118	965,239	1,118,289
인도네시아	544,260	379,516	927,729	1,295,285	977,483	456,191
말레이시아	349,942	173,198	1,599,793	251,688	705,220	484,014
싱가포르	581,580	272,733	401,804	1,042,467	319,781	528,122
미얀마	35,800	350,894	197,388	423,102	327,615	507,524
캄보디아	527,636	191,838	120,780	104,298	93,045	79,174
필리핀	197,213	118,246	226,658	202,659	935,455	465,420
태국	91,401	30,410	81,894	582,530	72,204	145,941
라오스	43,755	31,327	15,450	13,937	26,641	53,073
브루나이	-	936	2,204	2,812	1,039	1,720
합계	3,738,116	2,157,959	4,429,084	4,966,896	4,423,722	3,839,468

주: 2013년 누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도착 기준(1968~2013년).

21%(7.7억 달러)를 차지하며 동남아 내 제2의 투자 대상국으로 나타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 싱가포르(8.3%)와 말레이시아(6.5%) 등에 대한 투자 비중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액은 2014년 1분기 누계 기준으로 8,099건, 98억 8732만 달러로 베트남은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제 1위 투자국이다(표 2-31 참고). 2013년 한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는 1,020건, 11억 1,829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2년 대비 건수와 금액 면에서 각각 64.4%, 86.3%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ASEAN FTA 발효 이후 투자 관세저하효과로 인해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KOTRA 베트남 무역관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부터 2014년까

표 2-31. 한국의 ASEAN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순위 및 누적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누적금액
1	베트남	9,887,315
2	인도네시아	7,721,284
3	싱가포르	5,313,465
4	말레이시아	4,533,472
5	미얀마	1,977,748
6	필리핀	3,118,917
7	태국	2,001,172
8	캄보디아	1,988,606
9	라오스	255,242
10	브루나이	10,771
	합계	36,807,991,000

주: 2014년 1분기 누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도착 기준(1968~2014년, 1분기).

지 총 2,700여 개에 이르는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호치민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에 약 50%, 하노이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에 약 34%의 투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 인도

한국의 對인도 해외투자건수는 1,843건이며 총 34억 9,084만 달러에 이른다. 인도에 대한 해외투자는 다른 국가와 달리 1997년 한국 IMF 외환 위기 때에도 투자액이 크게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도리어 투자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한·인도 FTA 발효 이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다. 한·인도 FTA 발효 전후 4년을 비교하면 발효 전 2006~09년 사이의 총 8억 2,858만 달러에 비해 발효 후 2010~13년 사이 약 15억 249만 달러로 투자금액이 약 2배 급증한다. 하지만 FTA 발효 이후 매년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의 증감 변화가 큰 편이라 향후 한국의 對인도 투자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 중 총투자금액 중 86.3%에 달하는 30억 1,282만 달러(1,227건)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약 6%에 해당하는 도매 및 소매업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 외에도 도매 및 소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서비스 업종 위주의 투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바) EU

한국의 對EU 투자액은 1980~2014년 7월 누계 기준으로 5,022건, 374억 4,481만 달러이며 네덜란드, 저지, 독일, 영국, 벨기에 순으로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對EU

표 2-32. 유럽 상위 5대 투자국(2009~13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위	영국	영국	영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2위	네덜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저지
3위	아일랜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4위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	영국	영국
5위	독일	러시아	저지	터키	벨기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4. 3), 「2013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p. 11.

해외투자는 한·EU FTA 발효 3년차 투자금액 신고 기준 56억 달러로 발효 전(38억 달러)뿐만 아니라 2년차(38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11년 유럽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EU에 대한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의 한국투자 추세는 FTA 효과보다는 금융 위기, 재정위기 등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소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 연합국 중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네덜란드로, 한·EU FTA 발효 전에는 대부분 제조업, 광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FTA 발효 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화공, 비금속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M&A형은 비금속광물, 금융·보험 업종 위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4).

한국의 對EU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업종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크게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전문서비스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외국인직접투자(IFDI) 신고건수는 1,186건, 158억 413만 달러의 규모로 한·EU FTA 발효 전 4년차 신고건수 1,716건, 191억 7,587만 달러에 비해 투자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KSIC

산업분류 기준으로 EU 국가는 주로 금융 및 보험 등 서비스업, 운송용 기계 등 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에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을 두고 있다. 한·EU FTA 발효 이후인 2012년부터 전기·전자, 의약, 화공, 비금속광물 등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 도·소매 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EU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유럽국가의 EU 가입 이후인 2005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온 것으로 파악되는 바, 한국의 대EU 해외투자증가가 한·EU FTA 발효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표 2-33. 한국의 대EU 주요 해외직접투자 업종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융 및 보험업	203	15	598	36	941	2,515.5%
제조업	903	816	1,307	843	906	7.5%
광업	775	3,304	1,504	297	423	42.4%
전문서비스업	1,105	380	501	1,498	353	△76.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07	1,077	30	3	279	10,325.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4. 3), 「2013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p. 11.

사) 페루

한국의 對페루는 2011년 8월 FTA 발효 후 전년 대비 다소 증가세를 보였고, 2013년에 약 5배 가량 투자규모가 증가했다. 1994년부터 2014년 도착 기준까지 누계된 신고건수는 총 138건, 13억 5,048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한·페루 FTA 체결 전인 2002~03년 사이에 한차례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한 적이 있었고, 이후 다소 무난한 추이를 보이다 FTA 체결 후 투자액이 급증했다. 한·페루 FTA 전후 3년차를 살펴보면 FTA 발효 전 3년간 투자액이 총 1억 7,042만 달러에 불과한 것과 달리

FTA 발효 후 3년간 총투자액이 3억 7,193만 달러로 FTA 발효를 기점으로 약 3배 규모의 투자액이 증가했다. 한국의 對페루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업종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광업이 12억 9,606만 달러로 주를 이루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각각 18건(2,964 달러), 19건(1,710만 달러)로 뒤를 잇는다.

아) 미국

미국은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으로 미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전세계 총투자금액의 20% 규모인 53억 2,789만 달러에 이른다. 한국의 對미 해외투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1990년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하고는 대체로 투자건수가 상승하였으나, 도리어 한·미 FTA 발효 이후 투자액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의 對미 해외직접투자가 한·미 FTA 발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 5년간 미국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최대 투자업종인 광업이 2011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다. 2011년 한·페루 FTA 체결을 기점으로 한국의 對미국 광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페루로의 투자 진출 이전을 예측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 전후를 비교하면 FTA 체결 전 한국은 주로 도·소매업, 광업, 제조업 투자에 큰 비중을 두었으나, FTA 체결 후에는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FTA 발효 후 전년 대비 112% 상승하였으며, 2013년 16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주투자업종이었던 광업은 FTA 발효 1년차에 72% 가량 감소하였으며, 발효 2년차인 2013년도에는 60%가 추가로 감소하여 28억 달러에 육박하던 해외투자금액이 2년 만에 12억 달러로 대폭 하락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IFDI) 신고건수는 한·미 FTA 발효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투자유입액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 발효 직후인 2011년부터 2014년 도착 기준까지 신고된 투자건수는 총 1,029건으로 약 120억 8,044만 달러에 달하며, FTA 발효 전 4년차보다 약 1.7배 증가한 71억 1,786만 달러 규모가 집계되었다. KSIC 산업분류 기준으로 미국은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농·축·수산·광업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제조업(자동차, 선박) 및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금융 및 보험 등)에 대한 투자가 강세를 띠고 있다.

표 2-34. 미국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2009~13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제조업	1,010	731	363	555	959	449
도매 및 소매업	1,428	795	419	1,388	279	672
광업	1,333	627	154	2,780	2,003	1,200
금융 및 보험업	54	122	1,648	1,210	1,359	2,17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8	259	89	42	114	41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8	94	208	131	144	99
숙박 및 음식점업	45	37	41	57	50	2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09~13년).

표 2-35. 미국의 對한국 주요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08~13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제조업	297	415	398	1,092	1,804	1,187
서비스업	1,001	1,070	1,573	1,275	1,354	2,339
전기·가스·수도·건설	31	N/A	3	5	517	N/A
농·축·수산·광업	N/A	N/A	N/A	N/A	N/A	N/A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2008~14년 2분기).

2) 평가

가) 선행연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체결 이후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문종철(2011)은 중력방정식과 이차차분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이 체결한 FTA가 해외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으며, 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는 등 FTA가 해외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FTA 체결을 통해 무역증진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FTA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최낙균 외 2009).

배찬권 외(2012)는 지식자본모형에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지식자본모형과 Egger and Pfaffermayr(2004), Jang(2011)을 참고한 실증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발효 FTA로 인한 해외투자 유출입효과를 분석하였다. FTA가 한국의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직적 해외투자가 수평적 해외투자보다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어 국제 생산분업구조의 효율적인 활용이 주된 투자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수평적 해외투자가 수직적 해외투자보다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종덕 외(2013)는 이론모형을 사용하여 FTA 등 무역자유화가 수평적 및 수직적 해외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arr, Markusen and Maskus(2001)의 지식자본모형을 바탕으로 Leshner and Miroudot (2006)

과 배찬권 외(2012)에서 고려한 변수 및 양자 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Trade Agreement) 체결 여부 등을 추가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양국 GDP의 합과 유사한 경제규모에 대해서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받았고, 이외 변수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종덕 외(2013)는 이 연구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중력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한국 OFDI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때 FTA 더미변수 외 투자대상국의 경제개방정도, 경제규모, 인프라 상태 등의 중력변수들을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수평적 또는 수직적 투자에 관계없이 투자를 계획하는 국가의 상대적인 고정비용의 크기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FTA 체결이 반드시 해외투자를 늘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의 FTA 기체결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OFDI)는 FTA 발효 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양국간 FTA 협정을 토대로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자국 내 기업과 투자국 내 모기업 간 제품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해외투자채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Thangavelu and Findlay 2011). 본 장은 한국과의 FTA 기체결국별 투자 현황을 정리하고 FTA 체결이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대경제권인 미국과 EU의 경우 각각 FTA 발효 2년, 3년차로 이행 및 활용률을 평가하기에는 통계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전술한 FTA 발효 전후의 기체결국별 투자동향을 토대로 같은 기간 대세계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FTA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나) 평가

투자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선행연구에서 정치한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한 바 있으나 투자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미국이나 EU와 체결한 FTA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EU와 체결한 FTA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격한 통계분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함에서 모든 FTA를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방식을 이용하여 FTA의 투자효과를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FTA 허브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FTA 허브국가라는 목표는 제도 선진화와 FTA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투자의 허브가 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투자 상대국인 미국과 EU 등 선진경제권으로부터의 투자를 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중차분에 의한 효과분석은 상대국으로부터의 투자증가율을 FTA 발효 전후로 비교하고 같은 기간 대세계 외국인투자증가율을 차감하여 FTA가 상대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하는 방식이다.

$$E(FTA \text{ 상대국으로부터의 투자증가율} | FTA = 1)$$

$$- E(FTA \text{ 상대국으로부터의 투자증가율} | FTA = 0)$$

$$- E(\text{대세계 투자증가율} | FTA = 1) - E(\text{대세계 투자증가율} | FTA = 0)$$

표 2-36. 이중차분방식을 이용한 FTA 외국인투자 효과

(단위: %)

FTA 상대국	대세계		FTA 상대국		발효 전후		
	발효 전 평균 증가율 (A)	발효 후 증가율 (B)	발효 전 평균 증가율 (C)	발효 후 증가율 (D)	대세계 변화율 (E=B-A)	FTA 상대국 변화율 (F=D-C)	FTA 효과 (F-E)
미국	9.21	4.22	26.48	25.43	-4.99	-1.05	3.94
인도	0.04	6.72	40.98	2,943.23	6.67	2,902.25	2,895.58
EU	7.75	4.35	-3.39	29.43	-3.40	32.82	36.22
ASEAN	18.05	4.98	14.05	30.26	-13.07	16.21	29.27

자료: 저자 작성.

예를 들어 미국의 결과를 보면, 2012년도 발효 이전 대세계 외국인투자증가율은 연평균 9.21%였는데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4.22%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대미 투자는 26.48%에서 25.43%로 감소하였다. 감소 폭을 비교해보면 대세계 투자감소가 4.99% 발생한 반면 대미 투자는 1.05%만 감소하여 한·미 FTA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다소 감소 폭을 완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FTA의 투자효과로 보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도가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2,000%가 넘는 투자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마힌드라 그룹의 쌍용차 인수로 인한 일회성 투자증가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EU와 ASEAN의 경우에는 각각 36.22%와 29.27%로 높은 수준의 효과가 보였고 미국은 3.94%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작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FTA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유사한 방식으로 FTA 상대국인 미국, EU, ASEAN, 인도로의 FTA 발효 전후 투자증가율을 같은 기간 대세계 투자증가율과 비교하였다. 투자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인도를 제외하고는 미국, EU, ASEAN으로

의 투자는 같은 기간 대세계 투자성과에 못 미쳤다. 즉 FTA발효 전후로 FTA 상대국으로 더 활발하게 투자가 이뤄졌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³⁸⁾ 선행연구에서 포괄적인 FTA가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통해 관세 우회를 위한 해외직접투자(tariff-jumping FDI)에 대한 유인은 줄이고 내수 진출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유인은 높인다는 점을 고려하

표 2-37. 이중차분방식을 이용한 FTA 해외직접투자 효과

산업	FTA 상대국	대세계		FTA 상대국		발효 전후		
		발효 전 평균 증가율 (A)	발효 후 증가율 (B)	발효 전 평균 증가율 (C)	발효 후 증가율 (D)	대세계 변화율 (E=B-A)	FTA 상대국 변화율 (F=D-C)	FTA 효과 (F-E)
전체	미국	16.29	-6.6	35.57	-24.37	-22.89	-59.94	-37.05
	인도	36.16	4.85	49.18	38.19	-31.32	-10.99	20.33
	EU	4.13	-0.15	28.58	-21.3	-4.28	-49.89	-45.61
	ASEAN	41.5	0.94	51.67	10.37	-40.56	-41.3	-0.74
제조업	미국	40.4	4.05	-2.2	5.31	-36.36	7.51	43.86
	인도	12.47	22.22	58.04	52.83	9.75	-5.21	-14.97
	EU	2.55	10.74	-27.1	43.15	8.19	70.26	62.07
	ASEAN	27.3	10.36	38.46	52.77	-16.94	14.32	31.25
서비스업	미국	3.29	-8.99	22.32	-14.27	-12.28	-36.58	-24.3
	인도	49.71	-2.85	45.24	37.75	-52.56	-7.49	45.08
	EU	-5.71	-2.18	60.85	12.27	3.53	-48.58	-52.11
	ASEAN	53.17	-5.85	83.68	-1.18	-59.03	-84.86	-25.84

주: ASEAN은 2007년 상품협정, 2009년 투자협정이 발효되었으므로 2009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38) 실제 개별 기업과의 심층인터뷰 결과, 해외로의 투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FTA 외에도 투자상대국의 시장규모와 전망, 생산요소비용이나 정치경제적 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요소가 일정할 경우 해당국으로 투자의사결정에 FTA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여타 요소가 투자결정에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 FTA가 체결됐다는 이유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면, 전자의 효과가 후자의 효과보다 크기 때문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황분석을 위해 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국, EU, ASEAN의 경우 FTA의 제조업에 대한투자 효과는 긍정적인 반면, 인도의 경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우회를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효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EU, ASEAN으로의 서비스업에 대한 상대적 투자감소는 FTA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³⁹⁾

39) FTA 체결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해야 할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EU, ASEAN 등으로의 해외투자 감소는 FTA로 인한 효과라기보다는 글로벌 위기 이후 등 여타 요소에 의해 투자상대국으로서의 매력감소가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제3장 FTA의 대내부문 평가

1. 경제성장 및 소비자후생
2. 산업별 기업별 이익분배구조
3. 국내제도 변화



1. 경제성장 및 소비자후생

그동안 우리나라는 FTA를 추진하면서 주로 수출시장개척을 강조해왔다. 협소한 내수시장과 빈약한 부존자원으로 인해 수출을 통한 성장전략이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효한 정책이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토대로 FTA를 추진하다보니 상대국 시장접근성 개선이 주요 정책목표가 되어왔다. 따라서 그 목표달성의 관점에서 FTA 성과를 평가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양자 교역에서 수출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가 일차적인 관심이 되었다.

하지만 양자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FTA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자칫 FTA 이행에 따른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오류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실제 FTA로 인해 양국 간 수출입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그 증가율과 증가액이 같지 않기 때문에 FTA로 인한 양국 간 무역수지는 개선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FTA 체결 이후 대상대국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우선 FTA는 상대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FTA 발효 이전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은 FTA 상대국의 낮아진 문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대보다 증가율이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입은 국내수입수요가 일정한 경우에도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재 상대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무역창출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양자 교역에서는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대세계 수출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순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차적으로는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역내산 중간재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세계 수출을 위한 수입중간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수입상대국으로부터 수입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후자는 여타국으로의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통해 유발되는 대세계 수출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로 인해 대세계 수출을 위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중간재 수요는 FTA와 무관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수출을 위한 가공용 수입중간재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관세를 환급해준다는 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서는 해당 수입중간재에 대해 이미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중간재 수요가 증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우선 FTA 협상은 상품양허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비관세장벽의 감축을 통한 교역비용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서는 관세를 포함한 교역비용이 수입중간재에 지급하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일부의 지적이 맞다면 FTA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는 단지 수입최종재에 국한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FTA로 인해 원자재에 해당

하는 품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FTA 효과가 최종재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부분은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최종재의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비단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수입증가나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입증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선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기존의 교역하던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다양성의 이익(*love of variety*)을 가져온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기존의 수입하던 품목에서 수입이 늘어났다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해당 품목의 수입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더 값싼 수입재를 소비하게 되어 발생한 가처분소득 여유분을 국내재와 수입재 소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입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국내 민간소비도 진작시키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아울러 소비 증가로 인해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절에서는 이렇듯 FTA로 인한 양자 교역의 변화가 대세계 교역과 경제 전반에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절의 구성은 우선 분석 모형 및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이어 대세계 수출에 대한 영향, 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 그리고 소비자후생에 대한 영향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 분석 모형 및 자료

본 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그동안 주로 초점을 맞춰왔던 양자 교역의 대세계 교역

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CGE 모형이란 경제의 균형상태를 연산이 가능한 여러 방정식으로 표현해놓은 모형을 지칭한다. 모형에 포함되는 방정식은 민간가계, 정부,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이 각 산업별 생산, 소비, 투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나타내는 행태방정식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시장청산방정식을 포함한다. 이렇게 구축된 방정식과 기준연도(Reference year)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방정식에 등장하는 변수들의 값을 정하게 된다.

FTA는 FTA 상대국에 부과되던 관세를 감축 내지는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상대가격의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와 생산, 투자를 조정하게 되어 경제가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경제균형과 기준연도를 토대로 구성한 균형을 비교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게 된다.

이렇듯 경제의 균형상태를 여러 경제주체들과 산업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균형과 달리 특정 부문에서의 변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고 나아가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urdue 대학교에서 개발한 축차동태 GTAP 모형을 이용하는데, 이 모형은 여러 CGE 모형 중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GTAP 모형이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전체 방정식 체계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모형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연구결과를 반복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후술한 GTAP Database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이라는 점이다.

특히 GTAP의 기본모형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본의 축적과정과 국제이동을 반영한 축차동태 GTAP 모형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이 지난 10년간의 여러 FTA 성과라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미국과 EU 등 선진경제권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모형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2004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GTAP Database Version 7.1(이하 GTAP DB V7.1)이 이용되었다. GTAP DB V7.1은 전 세계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12개 국가 또는 지역의 57개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산업을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각각 16개 국가 또는 지역과 상품과 서비스의 2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우선 국가는 한국과 FTA 상대국인 칠레, 페루, ASEAN(싱가포르 포함), 미국, EU, EFTA, 터키, 인도를 재분류하였다. 이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중국, 그리고 기타 세계로 세분하였다. 산업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기 위하여 산업을 세분하지 않고 상품(농림어업, 광업, 제조업)과 서비스로만 분류하였다.

나. 분석시나리오

기준연도인 2004년부터 1년 단위로 2014년까지 10년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시나리오는 우선 FTA를 통한 상품교역과 투자증가

에 따른 영향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였다. 분석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FTA의 효과는 앞서 사용된 분석 모형과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FTA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분석 대상, 시점, 방법론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특히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단순히 FTA 상대국과의 교역을 발효 전후로 비교하는 방법부터, 발효 이후 대세계 혹은 주요국과의 교역 변화와 비교하여 FTA 상대국과의 교역을 살펴보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학술적으로 엄밀한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양자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통제한 후 FTA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1) 상품교역

FTA 효과에 대한 추정치가 정책실험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우선 여러 접근법에 따른 추정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본절에서 수행한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회귀분석방식은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차분은 FTA 발효를 전후로 FTA 상대국과의 교역 변화를 같은 기간 대세계 또는 주요국들과의 교역변화와 비교하는 방식을 말한다. 본절에서는 FTA 상대국별로 FTA 발효 이전 4년의 연평균 수출입증가율 평균과 FTA 발효 이후 연평균 수출입증가율 평균을 같은 시점 대세계 수출입증가율과 비교하였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FTA의 수입효과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입증가율을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과 비교하였고, 수출효과는 FTA 상대국의 대세계 수입증가율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과 비교하여 추정하였다. 수출효과를 상대국의 관점에서

표 3-1. 이중차분방식을 이용한 FTA 수출효과

(단위: %)

FTA 상대국	대세계		FTA 상대국		발효 전후		
	발효 전 4년 평균 증가율 (A)	발효 후 증가율 (B)	발효 전 4년 평균 증가율 (C)	발효 후 증가율 (D)	대세계 변화율 (E=B-A)	FTA 상대국 변화율 (F=D-C)	FTA 효과 (F-E)
칠레	5.88	19.23	1.51	25.54	13.35	24.02	10.67
EFTA	12.00	7.29	14.55	11.31	-4.71	-3.24	1.47
ASEAN	17.03	12.02	16.19	16.52	-5.01	0.34	5.35
인도	19.49	23.08	18.54	18.59	3.59	0.06	-3.53
EU	4.35	5.19	0.90	-0.28	0.84	-1.18	-2.02
페루	22.64	18.84	31.76	26.71	-3.80	-5.05	-1.25
미국	4.78	3.15	5.74	4.09	-1.64	-1.65	-0.01

자료: 저자 작성.

분석한 이유는 FTA 체결이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중차분방식을 통해 FTA 발효 전후 상대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을 같은 기간 대세계 증가율과 비교해본 결과, 2010년 이후 발효된 인도, EU, 페루, 미국 등에서는 모두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의 경우에는 대세계 수출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로의 수출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충분히 증가하지 않았고 EU로의 수출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유사한 방식으로 FTA 발효 이후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을 같은 기간 대세계 수입증가율과 비교해본 결과, 인도를 제외한 모든 상대국으로부터 평균보다 높은 수입증가율이 관측되었다. 인도의 경우 2010년 이후 대세계 수입증가율이 기저효과로 인해 10%대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도 수입증가율은 한·인도 CEPA 발효 이전보다 낮았다.

표 3-2. 이중차분방식을 이용한 FTA 수입효과

(단위: %)

FTA 상대국	대세계		FTA 상대국		발효 전후		
	발효 전 4년 평균 증가율 (A)	발효 후 증가율 (B)	발효 전 4년평균 증가율 (C)	발효 후 증가율 (D)	대세계 변화율 (E=B-A)	FTA 상대국 변화율 (F=D-C)	FTA 효과 (F-E)
칠레	4.43	13.99	8.59	22.10	9.56	13.52	3.96
EFTA	16.82	12.00	10.76	24.87	-4.82	14.11	18.93
ASEAN	19.47	10.93	15.49	10.99	-8.54	-4.51	4.04
인도	7.49	18.01	26.16	21.26	10.51	-4.90	-15.41
EU	10.79	11.20	7.62	14.47	0.42	6.86	6.44
페루	10.79	11.20	13.87	35.89	0.42	22.02	21.61
미국	12.79	-0.92	7.56	-3.16	-13.71	-10.73	2.98

자료: 저자 작성.

이중차분의 분석결과는 양국의 경제상황, 교역 추세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⁴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몇 가지 모형과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FTA의 수출입효과를 회귀분석하였다.

먼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현재 발효 중인 FTA가 우리나라 교역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발효 FTA별 수입효과는 [식 3-1]과 [식 3-2]를 통해 측정되며, 여기서 수입국은 한국으로 고정된다.

$$\begin{aligned} \ln IMP_{jt} =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Dist_j + \beta_3 CHL_t + \beta_4 SGP_t \\ & + \beta_5 EFTA_t + \beta_6 ASEAN_t + \beta_7 IND_t + \beta_8 EU_t + \beta_9 PER_t \\ & + \beta_{10} USA_t + \beta_{11} inland_j + \sum_j \gamma_j partner_j + \sum_t \delta_t year_t + \epsilon_{jt} \end{aligned}$$

[식 3-1]

40) 이러한 한계는 전 장의 투자분석결과 해석에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begin{aligned}
\ln IMP_{jt} =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Dist_j + \beta_3 \ln Tariff_{jt} + \beta_4 CHL_t \\
& + \beta_5 SGP_t + \beta_6 EFTA_t + \beta_7 ASEAN_t + \beta_8 IND_t + \beta_9 EU_t \\
& + \beta_{10} PER_t + \beta_{11} USA_t + \beta_{12} inland_j + \sum_j \gamma_j partner_j \\
& + \sum_t \delta_t year_t + \epsilon_{jt}
\end{aligned}$$

[식 3-2]

모형의 종속변수인 IMP_{jt} 는 t 연도 한국의 교역상대국인 j 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의미한다. 설명변수는 앞서 살펴본 [식 2-1] 및 [식 2-2]와 동일하며 다만 FTA 변수가 한국이 체결한 개별 FTA로 각각 대체되었다. CHL 은 한·칠레 FTA, SGP 는 한·싱가포르 FTA, $EFTA$ 는 한·EFTA FTA, $ASEAN$ 은 한·ASEAN FTA(싱가포르 제외), IND 는 한·인도 FTA, EU 는 한·EU FTA, PER 은 한·페루 FTA, USA 는 한·미 FTA를 의미하며, t 연도에 우리나라와 해당국 간에 FTA가 체결되었다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의된다.

또한 FTA별 우리나라의 수출효과는 [식 3-3]과 [식 3-4]에서 수출국을 FTA 발효 상대국 전체가 아닌 개별 FTA 상대국으로 두고 FTA_k 계수를 추정하여 도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ln IMP_{ijt} =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Dist_{ij} + \beta_3 FTA_e_{jt} + \beta_4 FTA_k_t \\
& + \beta_5 Adjacency_{ij} + \beta_6 Language_{ij} + \beta_7 inland_{ij} + \sum_j \gamma_j partner_j \\
& + \sum_t \delta_t year_t + \epsilon_{ijt}
\end{aligned}$$

[식 3-3]

$$\begin{aligned}\ln IMP_{ijt} = & \beta_1 \ln GDP_{jt} + \beta_2 \ln Dist_{ij} + \beta_3 \ln Tariff_{ijt} + \beta_4 FTA_e_{jt} \\ & + \beta_5 FTA_k_t + \beta_6 Adjacency_{ij} + \beta_7 Language_{ij} + \beta_8 inland_{ij} \\ & + \sum_j \gamma_j partner_j + \sum_t \delta_t year_t + \epsilon_{ijt}\end{aligned}$$

[식 3-4]

지금까지 본 연구는 FTA를 외생적인 설명변수로 보고 FTA의 수출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으나,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는 FTA의 내생성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Magee(2003), Baier and Bergstrand (2002, 2004, 2007), Baier, Bergstrand and Egger(2006) 등은 FTA 변수를 내생적 접근법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Magee (2003)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양자 교역이 FTA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Baier and Bergstrand(2002, 2004, 2007)는 중력모형에서 FTA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에 의해 체결할 FTA를 선택하는 것이 내생성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았다. 즉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변수들이 FTA 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중력모형을 추정한다면 FTA 계수에는 심각한 편의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Magee(2003)와 같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이용한 추정법도 활용하였다.⁴¹⁾

41) 즉 FTA 변수의 도구변수로 상대국의 개방도(교역액/국내총생산)와 수출 비중(상대국 수출/대세계 수출) 2개를 선택하여 FTA 변수의 적합값을 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래 식을 추정하였다.

분석자료가 산업별 수출입액이며 로그를 취하여 FTA가 수출입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기 때문에 교역이 없는 경우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오차항의 형태에 의한 편의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고정효과 패널분석과 함께 PPML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산업별로 수출입액의 차이가 크고 종속변수에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매우 작은 교역액을 가진 산업이 가외치(outlier)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입액이 1,000달러 이상인 품목을 대상에서 제한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표 3-3]은 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추정치를 정리한 것이다. 회귀분석결과, 모형 설정과 분석자료에 따른 FTA의 효과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EU로부터의 수입은 모형과 자료에 관계없이 FTA로 인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경우에는 모형에 따라 부호가 바뀌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 되는 등 안정적이지 않았다. 미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한·미 FTA 발효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수출의 경우에는 칠레, ASEAN, 인도, 페루로의 수출증가가 모든 경우에 안정적으로 (+)를 보여 FTA로 인한 수출증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여타 상대국으로의 수출증가는 모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지거나 또는 (-)를 보이는 등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따라 추정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은 관측치 수를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발효된 FTA의 경우에는 연간 산업별 수출입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분기 또는 월별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수준의 FTA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i 의 t 년도 수입액을 IM_{it} 라고 하면 이는 산업 k 의 수입액을 모든 k 에 대해 합산한 것과 같다. 즉 $IM_{it} = \sum_{k=1}^K IM_{it}^k$ 이 성립한다. 따라서 산업별 추정식($IM_{it}^k = X_{it}\beta_k$)과 국별 추정식($IM_{it} = X_{it}\beta$)의 계수들 간에는 $\beta = \sum_{k=1}^K \beta_k$ 의 관계가 성립한다. 본 연구와 같이 종속변수에 로그를 취하거나 추정식의 우항에 지수를 취하는 경우에는 두 추정계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2014년은 FTA 정책이 10년을 맞이할 뿐 아니라 통상절차법에 의해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평가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2014년 칠레와 체결한 FTA의 이행성과를 체결한 배찬권 외 (2014)의 연구에서는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가 제안한 PPML

표 3-3. 다양한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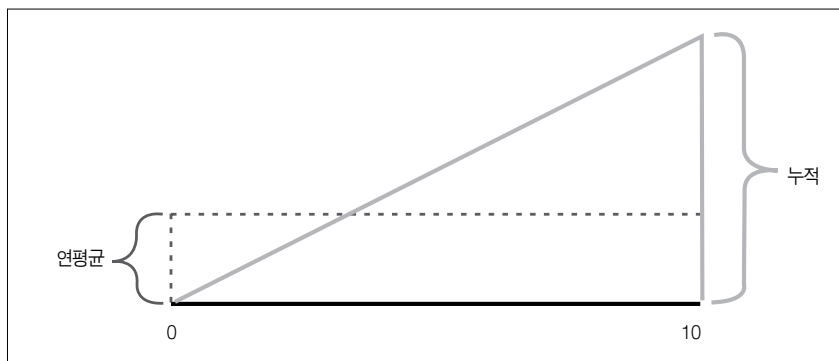
	수입효과					수출효과				
분석대상	ln(IM)	ln(IM)>0	ln(IM)	Import		ln(IM)	ln(IM)>0	ln(IM)	Import	
추정법	고정효과	고정효과	IV	PPML		고정효과	고정효과	IV	PPML	
칠레	0,383	0,412	0,412	0,316	0,690	0,327	0,767	0,355	1,660	0,694
싱가포르						0,306		0,338	0,728	
EFTA		0,081		0,145	0,354		0,903		0,770	0,337
ASEAN					0,075	0,192	0,400	0,202	0,256	0,482
인도		0,075	0,057		0,234					0,050
EU						0,206		0,202	0,523	
페루	0,314	0,363	0,358	0,803	0,510	0,255		0,215	0,762	
미국						0,134		0,135	0,186	0,023
통제		tariff					tariff			

주: 추정치는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이다.
 자료: 저자 작성.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PPML 추정방식을 이용한 이유로 이분산성과 교역량이 없는 관측치 문제를 들고 있다. 이를 준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PPML 추정결과를 이용하고자 한다.

배찬권 외(2014)의 방식을 준용하여 평균적인 교역효과를 누적치의 거시경제적 효과로 환산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였다. 한·칠레 FTA를 예로 들면 [그림 3-1]과 같이 칠레와의 FTA를 통한 교역효과 추정치는 발효 이전과 비교한 발효 이후 평균적인 증가액에 해당한다. 연평균효과를 누적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전술한 FTA의 평균 수출입효과를 증가율로 활용하여 GTAP DB V7.1에서의 대FTA 상대국 수출입금액에 적용한 뒤, 이를 누적 수출입효과로 환산하였다. 구체적으로 연평균을 누적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표 3-4]에 정리하였다. 각각 FTA 발효 직전의 수출입에 평균 수출입증가율을 적용하여 증가액을 산출한 뒤, 이를 10년 누적금액으로 환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증가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3-1. 연평균효과와 누적효과의 차이



자료: 배찬권 외 (2014), 산업통상자원부 수탁연구보고서(대외비), 「한·칠레 FTA 이행 상황 평가」.

앞서 살펴본 FTA의 교역효과를 CGE 모형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를 이용하여 실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출입증가율(또는 증가액)은 모형 내 경제주체들이 가격 등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반응하면서 결정되는 내생변수이다. 따라서 내생변수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를 찾아 어느 정도의 외생변수의 변화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생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지 계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귀, 배찬권, 금혜윤(2013)의 제안에 따라 FTA 발효로 인해 생산자-모형 내에서는 수출입업자와 동일한 개념-의 교역비용 감소로 공급가격을 낮추는 것을 생산성증대로 공급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유사하게 해석하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생산성증대가 양자 FTA로 인한 수출입을 유발하는지를 계산하여 정책충격을 구성하였다.

투자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김영귀 외(2014)의 방식을 준용하였다. FTA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평가를 다

표 3-4. 수출입 연평균효과와 누적효과										
(단위: 백만 달러, %)										
	FTA발효 전 수출액 (백만 달러)	수출효과				수입효과				
		FTA 효과 (%)	10년간 효과액 (백만 달러)	누적 환산액 (백만 달러)	연평균 효과 (%)	FTA발효 전 수입액 (백만 달러)	FTA 효과 (%)	10년간 효과액 (백만 달러)	누적 환산액 (백만 달러)	연평균 효과 (%)
칠레	800.97	100.17	8,023.36	1,458.79	18.21	1,933.55	99.37	19,213.97	3,493.45	18.07
EFTA	1612.59	40.07	6,462.28	1,174.96	7.29	2,195.42	42.48	9,325.18	1,695.49	7.72
ASEAN	37725.73	61.93	233,639.12	42,479.84	11.26	33,109.54	7.78	25,751.39	4,682.07	1.41
인도	9922.32	5.14	5,097.71	926.86	0.93	5,674.46	26.36	14,960.39	2,720.07	4.79
EU	56375.01	N/A	N/A	N/A	N/A	45,010.65	N/A	N/A	N/A	N/A
페루	1491.54	N/A	N/A	N/A	N/A	1,950.46	66.53	12,976.25	2,359.32	12.10
미국	60978.95	2.37	14,437.33	2,624.97	0.43	40,003.68	N/A	N/A	N/A	N/A

자료: 저자 작성.

루고 있는 전 절에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 투자가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그 영향이 간접적이라는 점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축차동태 GTAP 모형에서는 양국 간 투자를 직접 모형화하는 대신 Global Trust를 가상의 주체로 도입하여 각국은 Global Trust에 저축하고 Global Trust가 각국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총저축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출처가 어느 국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⁴²⁾

투자의 출처보다는 그 액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EU만이 유의한 분석대상이 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21%이며, EU의 경우 그 비중이 약 25.08%에 이르고 있다. FTA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3.94%, EU로부터의 투자가 36.22% 증가했으므로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로 환산하면 각각 0.71%와 2.77%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로의 외국인투자가 각각 0.71%와 2.77%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Risk Premium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하는지를 계산하여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다. 분석결과

본 절은 그동안 양자 교역 중심의 FTA 효과를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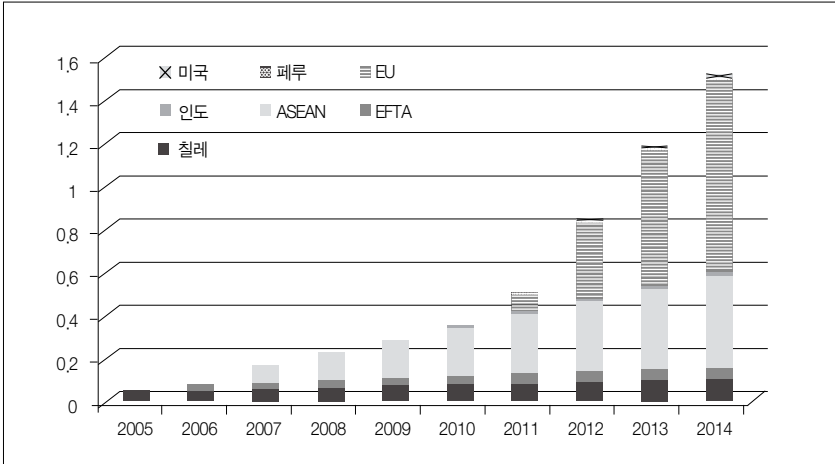
42) 투자의 형태에 따라 선진경제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에 체화되어 있는 생산성증대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따라서 투자의 출처와 상관없이 유입되는 자금의 양이 중요한 것으로 가정한다.

조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기여가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해석에 앞서 두 가지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분석결과는 앞서 분석한 양자 교역 및 투자 효과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미 설명한 자료 및 방법론 따라 교역 및 투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연평균효과로 측정된 교역효과를 연산가능 일반균형의 틀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가정은 국내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정책충격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아직까지는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반균형의 틀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결과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크기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우선 각 FTA별로 교역 및 투자로 인한 성장효과를 2014년까지의 누적치로 비교해보면, EU가 0.8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ASEAN과 칠레가 각각 0.426%와 0.11%의 추가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U의 경우에는 발효시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친 데다 연도별 분석을 위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교역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FTA 발효 전후 EU로부터의 투자를 같은 기간 전 세계로부터 유입된 투자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증가가 관측되었다. 따라서 본 분석결과는 EU로부터 유입된 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친 파급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ASEAN이나 칠레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양자 교역증가가 가져온 성장효과로 볼 수 있다. 투자증가는 그 자체로 수요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 FTA별 경제성장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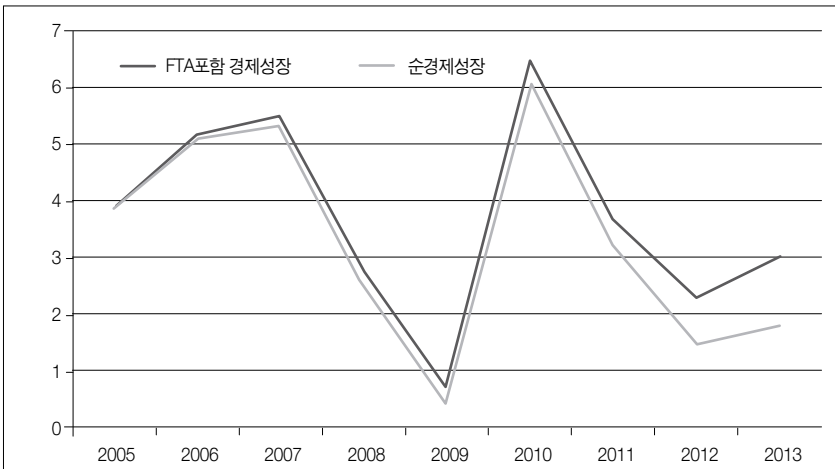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3. 경제성장률과 FTA의 영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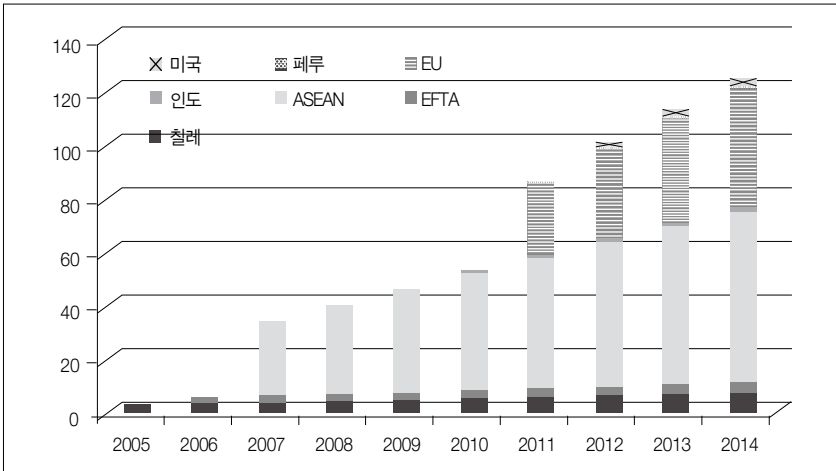
분석대상기간 동안 FTA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의 총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기간 총경제성장률을 살펴보았다.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직후인 2005년에는 FTA 정책으로 인한 성장효과는 0.048%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은 3.9%에 이르렀다. 2013년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그동안 발효되었던 7건의 FTA로 인한 추가적인 성장효과를 합산하면 1.19%이며 총경제성장률은 3%였다. 따라서 FTA 정책이 부재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총성장률은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큰 여파를 가져왔던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에는 무역이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ASEAN과의 FTA 등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방식으로 FTA로 인한 소비자후생효과를 FTA별로 정리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온 FTA는 ASEAN과 체결한 FTA로 약 64.14억 달러의 후생증가를 가져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EU, 칠레와의 FTA가 각각 45.10억 달러와 8.01억 달러에 해당하는 소비자후생을 가져왔다. EU의 경우에는 투자로 인한 경제성장효과는 지대했으나, 투자의 결실이 다시 투자이익의 형태로 EU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후생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만이 경제성장이나 후생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 역시 값싼 중간재 조달과 최종재 공급을 통해 성장과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 FTA로 인해 상대국으로부터 증가한 수입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수입의 긍정적인 역할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림 3-4. FTA별 소비자 후생 효과

(단위: 억 달러)



자료: 저자 작성.

우선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역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효과가 큰 경우는 칠레로 2014년 기준 0.08%의 경제성장을 견인했고 그 다음으로는 ASEAN과 EFTA가 각각 0.07%와 0.05%의 추가성장을 가져왔다. 칠레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입효과가 컸을 뿐 아니라 동광 등 주요 광물자원의 수입대상국이어서 그 효과가 가장 컸다. 수입으로 인한 성장효과를 FTA로 인한 총효과와 비교해보면 2014년에는 수입으로 인한 효과와 FTA 전체효과가 각각 0.217%와 1.526%로 전체 효과의 약 1/6은 수입으로 인한 효과임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장 영향이 큰 FTA 상대국은 ASEAN으로 약 4.52억 달러의 후생증가를 가져왔다. 그 다음으로는 칠레와 EFTA가

표 3-5. FTA로 인한 수입의 성장효과

(단위: %)

연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수입효과 총합	FTA 효과 총합
2005	0,045							0,045	0,048
2006	0,050	0,024						0,074	0,080
2007	0,055	0,027	0,040					0,122	0,176
2008	0,059	0,030	0,044					0,134	0,231
2009	0,063	0,033	0,049					0,145	0,288
2010	0,068	0,036	0,054	0,009				0,166	0,358
2011	0,071	0,038	0,058	0,010		0,003		0,181	0,502
2012	0,075	0,041	0,063	0,011		0,004		0,194	0,847
2013	0,078	0,043	0,067	0,013		0,004		0,206	1,190
2014	0,081	0,046	0,071	0,014		0,005		0,217	1,526

주: 빈 셀은 각 상대국과의 FTA가 발효되기 이전임.

자료: 저자 작성.

소비자후생을 각각 3.98억 달러와 2.41억 달러 증가시켰다. 수입의 성장 효과가 중간재 조달과 관련 있는 반면, 소비자후생의 효과는 최종재 수입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ASEAN과 체결한 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우리의 소비자후생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직관과 일치한다. 칠레와의 FTA 체결 시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로 국내 보완 대책 수립 및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중요한 이슈였는데, 실제 지난 10년간의 효과를 살펴보면 주요 교역상대국인 ASEAN과 체결한 FTA의 소비자후생효과와 비교하여 한·칠레 FTA의 효과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6. FTA로 인한 수입의 소비자후생효과

(단위: 억 달러)

EV(D)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총 합	총 합
2005	2,48							2,48	3,54
2006	2,59	1,62						4,21	6,11
2007	2,74	1,78	2,69					7,21	34,74
2008	2,90	1,93	2,94					7,76	40,53
2009	3,07	2,06	3,19					8,32	46,44
2010	3,25	2,17	3,46	0,75				9,63	53,55
2011	3,45	2,27	3,72	0,84		0,24		10,52	86,65
2012	3,64	2,34	3,99	0,94		0,27		11,17	101,59
2013	3,82	2,38	4,26	1,06		0,29		11,80	113,97
2014	3,98	2,41	4,52	1,19		0,31		12,41	125,53

주: 빈 셀은 각 상대국과의 FTA가 발효되기 이전임.

자료: 저자 작성.

2. 산업별 기업별 이익분배구조

본 절에서는 기업수준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30여 년간 산업별 · 기업별 분배구조 변화를 통해 개방정책이 산업 및 기업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어왔다. 이규복(2009)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대 · 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확대되어 2003년을 전후로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 ·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수익성 양극화가 고용 및 연구개발투자 양극화로 이어져 다시 수익성 양극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해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60%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도급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대기업의 기술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고, 현재와 같이 대

기업이 과도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에 귀속되어 중소기업 입장에는 연구개발투자를 할 유인이 감소하여 그 연결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보았다.

황선웅, 신우용(2012)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양극화 추이를 다양한 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1997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도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이익률 등 성과지표를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자산규모가 작아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자산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0년간 FTA 정책을 통한 수출입 증가 및 투자가 우리 산업 및 기업 규모별 분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다. 분배구조는 국가 또는 산업의 전체 이윤을 각 기업이 어떻게 배분받았는지를 단일지표로 측정한 것이므로 FTA를 통해 전체 파이가 커지고 이를 통해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 혜택의 배분이 비대칭적이라면 분배구조가 악화되었을 수 있다. 또한 수출하는 기업과 국내에만 판매하는 기업의 분배구조에 미쳤을 영향도 다르고 개방도가 상이한 산업별로도 그 영향이 다를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요인들이 기업의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터인데 이 중에서 FTA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기업의 분배구조가 각 기업의 이익과 국가 또는 산업별 총이익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본 절에서는 우선 분배구조와 함께 기업 또는 산업의 평균 이익률을 비교함으로써 과거 30년간의 추세와 최근 10년간의 변화

를 비교하고자 한다. 지난 10년간의 변화가 비단 모두 FTA의 영향은 아니지만 이규복(2009)이 지적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구조는 오랜 기간 형성되어왔다는 점과 국내 및 수출 기업이 FTA 정책에 의해 받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회적으로 FTA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가 가져온 개방의 기회가 산업별로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장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 분석자료

본 절에서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 Korea Information Service)가 제공하는 상장기업, 코스닥기업 및 외부감사대상기업 자료가 이용되었다. 자료에는 198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의 중분류로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모든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본 절의 목적은 FTA로 대표되는 개방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지난 10년간 산업별 분배구조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수혜산업인 제조업과 피해산업으로 분류되는 농림어업, 영향이 불명확한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은 제품 또는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과 모두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액을 비교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연구개발투자자료를 모았다.

나. 분석결과

1)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우선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분배구조를 지니계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1985년부터 완만하게 악화되다 급격히 나빠져 1998년에 정점을 다다랐다.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다수의 한계기업들이 정리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만이 생존하면서 분배구조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을 계기로 다시 악화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 변화를 수출하는 기업과 국내에만 판매하는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두 집단에서 변화추세가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1993~94년을 전후로 다소 개선되었다가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즉 수출기업들 간의 매출액 편차가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국내에만 판매하는 기업들의 경우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분배구조가 개선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전체적인 추세나 내수기업의 추세는 지난 20여 년간 완만하게 악화되다 개선되는 반면, 수출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다라면 0.9를 넘는 매우 악화된 상황을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개방이 본격화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분배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힘들었으며, 오히려 수출기업에서 다소간의 분배구조 악화가 관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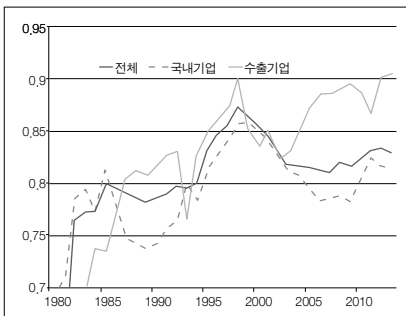
이러한 수출기업에서의 분배구조 악화가 개방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발생한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기업군과 내수기업군 전체

의 영업이익률 및 기업의 평균 이익률을 비교하였다. 전체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내수기업군의 경우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익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기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등락을 거듭하며 다소간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대폭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인 추세를 비교하면 개방에 더 민감한 수출기업군의 이익률 변동이 매우 크다는 사실과 함께 최근 다소간 상승추세임을 알 수 있다.

두 기업군 간의 차이를 산업별로 비교해보면, 농업의 경우 내수기업들은 최근 10년간 정체상태이며 수출기업군의 경우 점차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기업군을 전체로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수출기업군의 영업이익률이 내수기업군보다는 높은 편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소간 낮아졌다 2004년을 계기로 더 높아졌다. 서비스업은 내수기업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수출기업은 2009년까지는 개선되다가 2010년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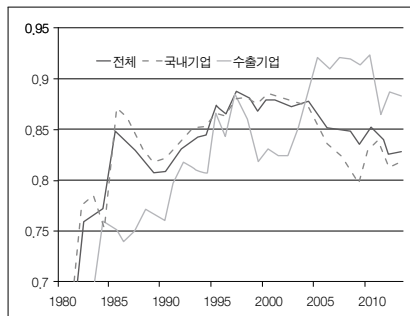
일련의 추세 변화를 비교해보면, 개방이 진전될수록 국내에서 영업하는 내수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기업의 이익률을

그림 3-5. 수출 여부에 따른 분배구조
(매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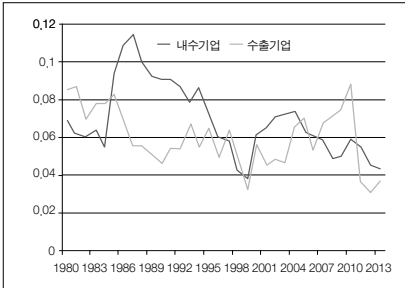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6. 수출 여부에 따른 분배구조
(영업이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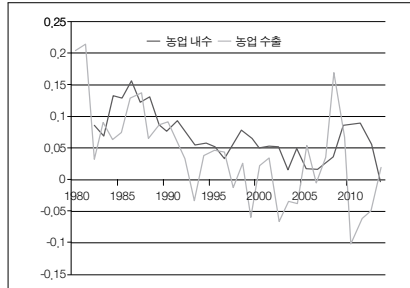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7. 수출 여부에 따른 영업이익률
(전체)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8. 수출 여부에 따른 영업이익률
(농업)



자료: 저자 작성.

개선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출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충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등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술한 분배구조를 감안하면 내수기업의 분배구조 개선은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로 인한 현상이며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같은 이유로 수출기업의 분배구조 악화는 대외충격이 강한 기업과 대기업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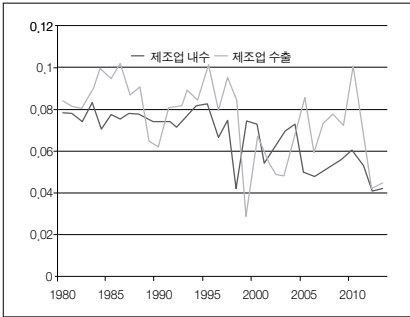
2)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어떠한 분배구조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분배구조를 중소기업과 대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로 규정하였다.⁴³⁾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배구조

43)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본문의 기준이 제조업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서비스업 등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분석대상자료에 자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편의상 제조업 기준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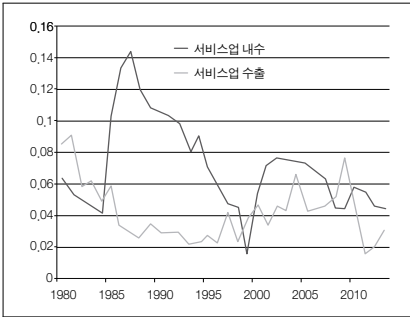
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최근 10년간 전체적으로는 다소간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기업집단이 모두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이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2004년 이후 중소기업 집단에서는 다소간의 분배구조 악화추세가 보이는 반면 대기업 집단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 3-9. 수출 여부에 따른 영업이익률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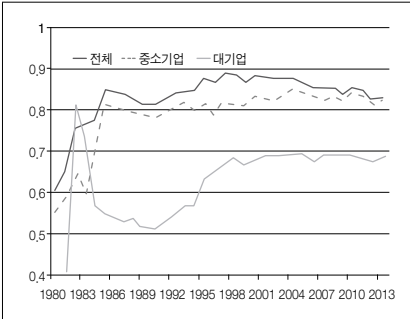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0. 수출 여부에 따른 영업이익률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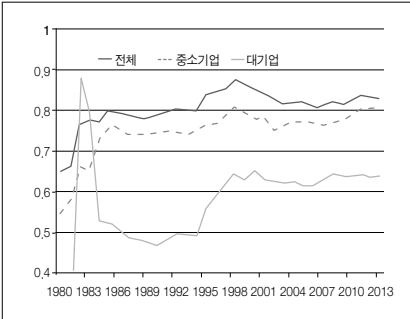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1. 기업규모별 분배구조 변화 (매출액 기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2. 기업규모별 분배구조 변화 (영업이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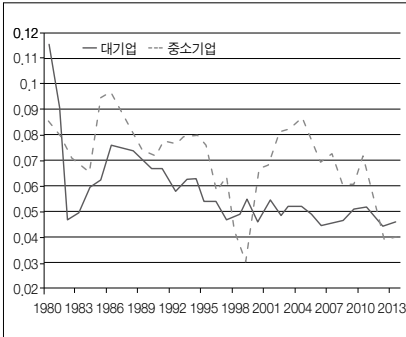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계기업이 청산되면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대기업보다 높았다. FTA 정책이 본격화된 2004년을 기점으로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1990년 이후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제조업 수출 및 내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균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내수 중소기업의 경우 1990년도 8%에 이르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감소하여 2013년에는 4% 초반까지 하락한 반면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8% 중반이던 영업이익률이 1999~2000년과 2008~11년 상승안정세를 보이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영업이익률 추세가 내수기업의 경우 계속되는 양상인 데 비해, 수출기업의 경우 2006년 ASEAN과의 FTA가 발효된 시점을 계기로 영업이익률이 급속하게 개선되다 최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격적인 개방은 주로 국내시장과 대기업 납품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들에 보다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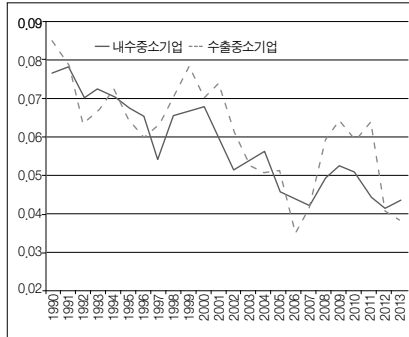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커 대외충격이나 기회요인에 덜 민감한 대기업에 비해 개방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은 훨씬 컸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입시장이 개방되면서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새로운 수출시장에 뛰어들어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내수기업을 위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13. 기업규모별 총영업이익률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4.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자료: 저자 작성.

전술한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수출시장 진입 여부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다. 종속변수를 영업이익률로, 주요 설명변수를 연구개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 중소기업 여부, 수출 여부, 중소기업과 수출 여부의 교차항, 수출 비율(수출액/총매출액)로 하는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연도와 산업은 더미변수를 통해 통제하였다. 기업은 전체 기업과 영업이익률이 0보다 큰 정상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낮지만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내수 중소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개발 비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었는데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해 영업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종속변수인 영업이익률이 평균 0.05(5%)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수가 지나치게 큰 값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로 판단된다. 우

표 3-7. 중소기업 수출 여부가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전체 기업)

종속변수: 영업이익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연구개발비/총매출액	-1.897*** (0.383)	-1.897*** (0.383)			-0.598 (0.420)	-0.601 (0.418)
중소기업 더미	-8.984* (5,245)	-9.190* (5,272)	-9.006* (5,245)	-9.213* (5,272)	-16.16 (11,45)	-17.47 (12,41)
중소기업 여부*수출 여부	5.562* (3,313)	5.560** (2,694)	5.583* (3,313)	5.590** (2,694)	8.369 (5,870)	11.44 (8,166)
수출액/총매출액	13.27 (10,30)		13.26 (10,30)		13.48 (9,713)	
수출 여부		4.673 (4,456)		4.661 (4,456)		1.693 (1,421)
분석산업	전 산업			제조업		
관측치 수	295,493	295,493	295,493	295,493	140,900	140,900

주: *** p<0.01, ** p<0.05, * p<0.1, () 안은 robust 표준오차이다.

자료: 저자 작성.

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이 제조업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선 분석 대상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추가로 살펴보았다(모형 5, 6). 이 경우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분석대상기업들 중에는 영업이익이 최대 -800%에 이르는 비정상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이러한 가외치(outlier)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들 중에서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전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얻고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수출 여부 또는 수출액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출 여부에 따른 영업이익률의

차이는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이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을 제조업을 국한하여 영업이익률과 수출 여부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았다. 모형 11과 12에 의하면, 제조업에 속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다소 낮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내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서비스업과 농수산업의 경우 내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고 제조업의 경우 수출 중소기업이 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얻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3-8. 중소기업 수출 여부가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정상기업)						
종속변수: w영업이익률	모형 (7)	모형 (8)	모형 (9)	모형 (10)	모형 (11)	모형 (12)
연구개발비/총매출액	0,000895*** (5,69e-05)	0,000906*** (5,63e-05)			0,000914*** (8,86e-05)	0,000912*** (8,86e-05)
중소기업 더미	0,0233*** (0,000628)	0,0261*** (0,000684)	0,0233*** (0,000628)	0,0261*** (0,000684)	-0,000642 (0,000659)	-0,00124* (0,000746)
중소기업 여부*수출 여부	-0,00488*** (0,000645)	-0,0197*** (0,00114)	-0,00488*** (0,000645)	-0,0197*** (0,00114)	0,00228*** (0,000683)	0,00453*** (0,00119)
수출액/총매출액	0,00536*** (0,00124)		0,00535*** (0,00124)		-0,00240* (0,00129)	
수출 여부		0,0169*** (0,00103)		0,0169*** (0,00103)		-0,00310*** (0,00106)
분석산업	전 산업			제조업		
관측치 수	238,943	238,943	238,943	238,943	119,166	119,166

주: *** p<0,01, ** p<0,05, * p<0,1, () 안은 robust 표준오차이다.
 자료: 저자 작성.

3. 국내제도 변화

가. 서론

1) 연구 목적과 범위

이 절에서는 그간 한국정부가 선진국과의 FTA 체결의 궁극적 목표로 중시해온 제도 선진화의 의도가 실제 FTA 추진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한·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체계화하여 파악하고 유형화한 것이 이 연구의 부가가치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FTA의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치중한 반면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무엇보다도 일천한 FTA 역사로 인해 이에 대한 분석이 시기상조라는 측면도 있다. 우리의 제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는 한·미 FTA 및 한·EU FTA 정도인데 이 둘은 발효된 지 각기 2년과 3년밖에 경과하지 않아 그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도 변화’는 매우 광범위하여 수출이나 투자에 미친 효과분석과 같은 정량적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화가 우리 FTA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FTA 정책 10년을 평가하는 마당에 제도 변화에 관한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의미하다.

첫째, FTA를 통한 제도 변화의 효과는 성격상 서서히 드러나는 동시에 일단 국제법적 강제력을 부여받아 국내제도로 안착하면 역진이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긍정적 효과 확대 및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만일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

이를 최대화하고 타 분야에도 확산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조기에 대응해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필요시 향후 협정문 개정 협의에 대비한 사전정지작업이기도 하다.

둘째, 한·미 FTA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듯 이를 계기로 하는 국내제도 변화를 바라보는 국내시각에도 양 극단이 공존한다. 일각에서는 ‘제도 변화=제도 선진화’라는 등식을 강조해온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미국에 비해 훨씬 많은 국내 이행법령 수를 근거로 ‘제도 변화=미국화’ 내지는 불평등조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를 나타낸다. 그러나 정작 양측 모두 제도 변화의 전체상과 실태를 보여주는 데는 미흡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먼저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에서는 연구범위에 관해 언급해두고자 한다.

한국이 맺은 FTA 중 제도 변화와 연관지어 논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과의 FTA이며, 특히 한·미 FTA를 꼽을 수 있다. 한·EU FTA도 선진국과 체결한 대표적인 FTA이나 큰 틀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모델(template)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미 FTA를 주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한·EU FTA에 관해서도 논할 것이다.

한·미 FTA가 제도 선진화의 계기로서 유의미하려면 형식과 내용, 두 측면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한·미 FTA에 의한 국내제도의 명시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이 암묵적인 관행이나 의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데 그쳤다면 파악이 어렵거니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명시적인

변화를 초래한 국내법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제도 변화가 명실상부한 제도 선진화인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단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고,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위치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 장에서는 우선 첫 번째 측면에 초점을 맞추되 향후 본격적인 평가를 위한 분석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필요시 논점을 제시한다.

이 절에서는 한·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하되 이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법령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FTA에 따른 제도 변화의 영향권 안에는 중앙정부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도 포함된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입법기능이 취약하여 FTA 이후 새로운 법체계에 적응하지 못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2011년 말 기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수는 무려 7만 9,043건으로, 4,000여 건인 중앙정부의 법령 건수의 약 20배에 달한다(김봉철 외, p. 156). 2011년 법제처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1곳씩을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상위법 위반,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위임사항 미제정, 내용상 불합리한 사항 등 다수의 문제 사례가 파악되었다. 이리하여 정비가 요구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A도의 경우 135건, B시의 경우 123건으로 드러났다. 2012년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관련 비합치 법령 중 지자체 조례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서울시에서는 자체조사를 통해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환기시킨 바 있다(김봉철 외 2012, pp. 157~160). 그러나 여기에서 지자체의 법규까지 다룰 경우 연구범위가 광대해지므로 중앙정부의 그것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한·미 FTA 이후 개정된 국내제도는 중앙정부의 법령 기준으로 총 25건이다. 이

중 발효 이전에 제·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한 것이 23건이며 발효 후 개정이 필요한 것이 2건이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타 FTA에 비해 광범위하게 국내제도의 변화를 초래한 한·미 FTA를 중심으로, 이를 계기로 변화한 중앙정부의 법령 23개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한 논점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정책시사점을 모색할 것이다. 단 현 시점의 평가는 잠정평가일 뿐 본격적인 평가는 한·미 FTA가 최소한 1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의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2) FTA와 제도 변화

FTA와 제도 변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Schiff and Winters(2003)의 견해가 유용하다. Schiff and Winters(2003)는 RTA의 근본적인 추진 배경으로 다음을 꼽는다. 첫째, 소련 붕괴 이후 서유럽이 동유럽의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안정화를 지원할 필요성에 직면했고, 둘째,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개발의 한 방편으로 RTA의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셋째, 개방확대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마하며 국내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법적 협정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FTA 추진배경에는 국내 경쟁력 제고 및 제도개혁이 필요하나, 국내 기득권의 반발로 자발적인 개혁이 곤란할 경우 FTA를 일종의 외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적잖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혁과 개방이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깝게는 중국이 개방을 지렛대로 국내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FTA를 통한 제도 변화를 바라보는 국내 법학계의 시각도 이와 유사하다. 김봉철 외(2012)는 FTA 체결과정에서 국내법의 개선이 이어지면 이

는 대외적으로 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따라서 규범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무역 및 투자 촉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김봉철 외 2012, pp. 33~34). 이러한 국내법 체계의 개선범위는 관세, 보조금, 원산지, 검역 등의 직접적인 개방 관련 분야에서 서비스, 기술협력, 구조조정, 투자, 노동, 사회보장, 기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관련 법규의 정비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한다(김봉철 외 2012).

WTO(2011)는 FTA가 제도 선진화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FTA의 증가세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사실상 통합 및 각국 간 경제정책의 연관성 심화에 따른 정책의 국제화 필요성을 반영한다. 이때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것이 포괄적 FTA의 확산현상이다. 과거에는 상품 무역만으로도 소기의 자유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점차 관세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상대국 내의 비관세장벽(behind-the-border barriers)이 외국기업들에 걸림돌로 부각된 것이다. 특히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는 관세 철폐를 통해 개방하는 상품무역과 달리 상대국의 제도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방이 가능해지므로 상대국의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지식재산권이나 경쟁정책 등의 변화도 수반된다. 전 세계 RTA의 1/3이 서비스 시장자유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의 1/10에 비하면 매우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FTA를 일국의 개방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역행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 외압장치로 삼고자 하는 의도는 대체로 소국개방경제가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로 인해 미래 통상정책에 대한

표 3-9. FTA에서의 'WTO+'와 'WTO-X'

WTO+ 분야	WTO-X 분야	
공산품/농산물 무역	반부패	보건
통관	경쟁정책	인권
수출세	환경법	불법이민
SPS	IPR	불법미약
국영무역	투자	산업협력
기술장벽	노동시장 규제	정보사회
상계관세	자본이동	광산업(mining)
반덤핑	소비자보호	자금세탁
정부보조	데이터보호	원자력 안전
공공조달	농업	정치대화
TRIMs	법률 적용	공공행정
GATS	시청각	지역협력
TRIPs	시민보호	연구&기술
	혁신정책	중소기업
	문화협력	사회적 현안
	경제정책대화	통계
	교육훈련	과세
	에너지	테러리즘
	금융원조	비자 및 망명

자료: Horn and Sapir(2010).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해외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왜 한·미 FTA를 추진하고자 하는지, 왜 국내의 반발을 무릅쓰면서도 자발적으로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서 고강도 개방에 나서는지에 대해 적지 않게 설명해준다.

Horn and Sapir(2010)은 미국과 EU가 체결하는 FTA의 정책 및 제도 분야를 협정문의 장 제목(chapter heading, 미국)과 조 제목(article heading, EU)을 토대로 약 100개의 FTA를 대상으로 제도와 정책의 조율을 추구하는 심도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의 요소를 52개로 분류한 뒤 크게 WTO+ 및 WTO-X로 나눠 유형화하였다. 여기서 WTO+ 분야(14개)는 WTO에서 다루는 자유화 의제이나 WTO 양허수준에서 더 나아간 것을, WTO-X(38개)는 WTO에서 다루기 버거워 아예 배제된 의제를 의미한다. [표 3-9]는

이렇게 하여 분류한 52개 분야이다. 이들은 대부분 상대국 비관세분야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결국 상대국의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제도 선진화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단순한 시장개방의 제도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TPP 협상의 ‘국유기업’분야에서 단적으로 보듯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측은 이를 제도 선진화라 주장하는 반면 이를 꺼리는 개도국 측에서는 과도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3) 한국의 FTA 정책과 제도 변화

산업통상자원부는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를 통한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서 상품 분야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및 무역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인 동시에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언급이

없다. 이에 여타 정부문서를 통해 FTA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선진화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해보자.

우리나라 FTA 정책의 골격이 갖추진 것이 2003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유무역협정 추진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의해서이다(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03).⁴⁴⁾ ‘로드맵’에서 정부는 FTA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FTA의 세계적 확산 및 경제블록화에 대응하여 시장 확보 및 고립 탈피를 위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FTA 추진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동아시아 블록의 핵심 멤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21세기 세계 무역질서를 형성할 DDA 협상이 진행 중인 당시 상황에서 UR보다 확대심화된 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FTA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제기한다. 셋째,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한계를 노정하고 주요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소극적인 개방정책과 불필요한 규제에 의해 선진국 수준의 개방화·국제화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그에 대한 대안이 FTA를 통한 시장확보 및 경쟁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특히 거대 선진경제와의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FTA 정책의 효과극대화를 위한 대내적 조치로 ‘로드맵’은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분야에서 경제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고부가가치산업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체질 고도화로 국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강화로 FTA 및 DDA 협상 이후 예상되는

44) 로드맵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평가는 김양희, 정준호(2006)를 참고.

법률, 교육, 의료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FTA의 투자효과 극대화를 제시한다.

2006년 관계부처 합동의 한·미 FTA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전략의 궁극적인 지향점⁴⁵⁾은 한·미 FTA라고 밝힌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한·미 FTA는 단순한 수출시장 확보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선진국 도약과 한·미 동맹관계 강화라는 포괄적 가치창출”이라고 설명한다(『헤럴드경제』 2006. 4. 13).

이처럼 한·미 FTA는 수출시장 확보 이상의 경제통합을 지향한다. 여기서 핵심어는 바로 경제의 ‘선진화’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2005년 4월 ‘선진통상국가’ 개념을 국가발전 어젠다로 설정하고 ‘서비스’, ‘부품·소재, IT 분야 육성’, ‘해외투자과 외국인투자 확대’,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을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최낙균 외 2005).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제선진화’를 한·미 FTA가 추진할 것이란 시각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육성이 핵심 의제로 등장하는데, 이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경쟁우위가 있는 미국기업과의 협력과 분업을 통해 국내 생산활동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능동적 개방화 전략을 구사하면 중국의 추격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인 것으로 인식된다(관계부처 합동 2006).

이상과 같이 우리 정부의 공식문서에 등장하는 ‘FTA 체결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선진화’라는 정책목표는 요약하자면 전 산업에서의 생산성 향

45) 정부는 중, 인도 등 여타 FTA 추진도 가속화하는 계기로서 한국이 세계시장의 허브(Gateway)로 발돋움하는 주춧돌로 한·미 FTA를 바라본다(관계부처 합동, 2006, http://www.fta.go.kr/fta_korea/greeting_usa.php, 검색일: 2014. 6. 13).

상과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 더 높은 수준의 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개방친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2006년 6월 한덕수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미재계회의에서 행한 연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 선진화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도개혁 없는 세계화는 외부충격에 약한 사람들을 양산하거나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양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미 FTA를 통한 개방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경제 각 부문의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정브리핑 2006. 6. 20). 그가 밝힌 제도개선의 주된 내용은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등이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추진과 ‘포스트 로드맵’을 통한 기업규제 완화와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언급하였다.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정책 추진 또한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경제사회시스템 선진화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내외기업 CEO를 대상으로 행한 ‘FTA 시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는 2006년 한덕수 장관이 언급한 원론적 수준의 제도 선진화가 가장 구체화된 형태로 드러난다(재정기획부 2007). 그는 FTA가 시장확대보다 더 중요하게 혁신주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보다 선진화되고 국제화된 규범을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체계를 갖춰야 FTA 효과가 발현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내경제 선진화 과제

를 크게 원활한 생산요소이동, 상품노동시장의 경쟁촉진, 거래비용축소를 위한 제도개선의 세 가지로 나뉘 구체적으로 제시한다.⁴⁶⁾ 이를 요약하자면 시장친화적 시스템 구축 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라 하겠다.

나. FTA 관련 국내 이행 법령 현황

1)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구성요소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선진국과 추진한 매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의 한·미 FTA 코너(<http://www.fta.go.kr/us/info/1/>, 검색일: 2014. 6. 10)에서는 한·미 FTA 타결의 의의를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생산·고용·교역 및 외국 인투자 증대,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외국 인투자증대 등으로 꼽는다. 이 중 경제사회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과 서비스 부문의 획기적인 개선’을 뜻한다.⁴⁷⁾

한·미 FTA에 버금가는 포괄성과 개방수준을 보이는 한·EU FTA도 그 의의로 EU 시장진출의 교두보 마련, 국내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이익

46) 단 이 자료는 강연의 기초자료라서 실제 강연내용은 자료와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첫 페이지에 기재해놓았으나 큰 틀에서의 방향이 강연에서 바뀌진 않으리라는 상식적인 가정하에 세 가지 정책과제를 개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47) 한·미 FTA와 관련하여 김현중(2011)은 실제 협상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노무현(2009)도 한·미 FTA를 바라보는 최고지도자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변양균(2013)도 한·미 FTA의 추진과정을 언급하고 있으나 세 문헌 모두 제도 개선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어 그들의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피상적임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의 분석은 대표적으로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2007)을 참고.

표 3-10. 한·미 FTA, 한·EU FTA의 협정문

한·미 FTA	한·EU FTA
1. 최초 규정 및 정의	1. 목적 및 일반정의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3. 농업	(전자제품 비관세)
4.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및 부품 비관세)
5.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비관세)
6.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	(화학물질 비관세)
7.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3. 무역구제
8.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5.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10. 무역구제	6. 관세 및 무역 원활화
11. 투자	7.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12. 국경 간 서비스 무역	8. 지급 및 자본이동
13. 금융서비스	9. 정부조달
14. 통신	10. 지식재산
15. 전자상거래	11. 경쟁
16. 경쟁 관련 사안	12. 투명성
17. 정부조달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18. 지식재산권	14. 분쟁 해결
19. 노동	15. 제도 일반 및 최종 규정
20. 환경	
21. 투명성	
22. 제도 규정 및 분쟁 해결	
23. 예외	
24. 최종 조항	

자료: 한·미 FTA 협정문; 한·EU FTA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중대, 외국인투자 촉진, 경제시스템 선진화, 동아시아 FTA 허브로의 부상
 계기 마련을 꼽는다(<http://www.fta.go.kr/eu/info/1/>). 이 중 경제시스템 선
 진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EU FTA가 한국 경제시스템의 투명성, 신뢰
 성, 개방성을 제고하여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
 한다. 또한 한·EU FTA가 국내 투자환경 개선, 투자자에 대한 정책투명

성 제고, 서비스 시장개방 등으로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 한·미 FTA 계기 국내 법령 개정 현황

한국에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FTA라는 국제조약의 체결은 별도의 국내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내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법제처 2012). 국내에서 FTA와 관련된 법적 논란이 제기될 경우 FTA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 국내법과 FTA가 충돌할 경우에는 특별법·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FTA 규범이 우선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가 기존의 국내법과 상충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내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이행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정민정 2011).

한·미 FTA 협정문은 총 2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서한 포함)과 상품양허표, 품목별 원산지규정, 유보목록으로 이루어진 첨부 부속서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의 내용은 상품시장개방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정부조달분야 개방에 이르기까지 시장접근범위가 넓으며 관련 규범 또한 국내경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한·미 FTA가 워낙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맞춰 이루어진 국내법 정비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⁴⁸⁾

2013년 6월 기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발효(2012년 3월 15일) 이전 제·개정된 법령은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으로 총 66건이다. 한·EU FTA로 개정됐거나 개정

48)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령 개정 전반에 관한 내용은 법제처(2007, 2012)를 참고.

되어야 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예규는 총 49개에 달한다. 이중 한·미 FTA와 공통되는 이행법률은 8개다(최재천·의원실 2014).

한·미 FTA 계기 개정 법령이 총 66건이라 할 경우 이 수치는 최상위 법령인 법률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단순합산한 것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는 국내법 제도 변화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FTA 협정문의 구성요소(상품, 서비스, 규범)를 부문으로 간주하고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혹은 시행규칙이든 이를 하나의 분야로 간주하여 부문별·분야별로 재구성해보면 개정 법령의 윤곽이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전 부문에 공통되는 법령 개정은 3개 분야이며 상품무역부문 8개 분야, 서비스부문 9개 분야, 규범 10개 분야(정부조달 1개 분야, 지식재산권 9개 분야)로 총 30개 분야에서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즉 개정 법령건수는 66건이나 이는 한·미 FTA를 구성하는 4대 부문의 30개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 부문에 공통되는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의 2개 법률과 「법제업무운영규정」 1개의 시행령으로 총 3개 분야에서 법령 개정이 있었다.

상품무역부문은 총 9개 분야로, 이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만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모두 개정되었다.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은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은 법률만 개정하였다. 한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세 개는 시행규칙만 개정한 것이다.

표 3-11. 한·미 FTA 체결 계기 개정 법령의 부문별·분야별 현황(2013년 6월 기준)

부문 (분야 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동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소계	2	법제업무운영규정 1	
상품 무역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지방세법		
	개별 소비세법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계	5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서비스 (9)	외국법자문사법 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¹⁾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파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소계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시행령	
소계	8	6	6
규범 (정부 조달) (1)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 규정	
소계		1	

표 3-11. 계속

부문 (분야 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규범 (지식 재산권) (9)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소계	9	6	9
합계(30)	24	17	19

주: 1) 외국법자문사법은 제정 및 개정, 시행령 중 '특허권 등의 등록령'과 시행규칙 중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은 제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정 법령임.

2) 음영은 한·미 FTA와 한·EU FTA 공통 법령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서비스의 경우 9개 분야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이 중 「외국법자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및 「우편법」의 4개 법률은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모두 개정하였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은 시행규칙의 개정을 동반하였고 「보험업법」은 발효후 3년 이내 개정법률이나 개정완료하였으며, 「전과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법률 개정으로 끝났으며 방송법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에 그쳤다.

규범부문은 총 10개 분야에서 법령 개정이 있었으나 이 중 9개 분야가

표 3-12. 한·미 FTA 체결 계기 개정 법령의 시기별 구분(2014년 9월 기준)

법률(담당부처)	시행일	유예상황
「불공정무역 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08. 09. 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9. 03. 20	
「대외무역법」	09. 10.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12. 02	
「개별소비세법」	12. 01. 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2. 03. 15	
「행정절차법」	12. 03. 15	
「특허법」	12. 03. 15	
「실용신안법」	12. 03. 15	
「상표법」	12. 03.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2. 03. 15	
「디자인보호법」	12. 03. 15	
「지방세법」	12. 03. 15	
「우편법」	12. 03. 15	서명 5년 후(완료)
「전파법」	11. 01. 24	13. 3. 15 이후(완료)
「전기통신사업법」	10. 09. 23	14. 3. 15 이후(완료)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2. 03. 15	14. 3. 15 이후(완료)
「보험업법」	14. 11. 21	15. 3. 15 이후(완료)
	11. 07. 01	14. 3. 15 이후(완료)
「저작권법」	12. 03. 15	
	12. 03. 15	14. 3. 15 이후(완료)
「방송법」		15. 3. 15 이후
「약사법」	12. 03. 15	
		15. 3. 15이후(추가)
	09. 09. 26	
「외국법자문사법」	11. 04. 30	14. 3. 15 이후(완료)
		17. 3. 15 이후(3단계)
「공인회계사법」	11. 07. 01	17. 3. 15 이후(2단계)
「세무사법」	11. 07. 01	
		17. 3. 15 이후(2단계)

주: '유예상황'란의 (완료)는 발효 후 개정사항이었으나 시기적으로 이미 개정이 완료('농업협동조합법'은 201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미 개정 완료)된 것을, (추가) 혹은 (2단계) 및 (3단계)는 해당 법률의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뤄져 일부는 이미 개정이 완료되었고 향후 예정된 나머지 내용 혹은 단계의 최종 개정시기를 의미.

자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한·미 FTA-한·미 FTA 관련 법제」, <http://oneclick.law.go.kr/CSP/CnpCisMain.laif?popMenu=ov&csmsSeq=640&ccfNo=1&cciNo=2&cnpCisNo=1>(검색일: 2014. 6. 13)를 토대로 저자 작성.

지식재산권에 해당된다.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시행령인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정」만 개정하였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법령 수로 가장 많은 24건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9개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저작권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법률 개정은 2건의 시행령과 3건의 시행규칙 개정을 수반한다. 「관세법」 개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고 「약사법」개정은 3건의 시행규칙 개정을 동반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은 법률만 개정되었다.

25개 법률(2014년 9월 기준)을 대상으로 시행 여부를 살펴보면, 20개 법률이 이미 시행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애초 시행유예는 2015년 3월 15일 이후), 저작권법은 발효 후 개정 법률이나 이미 개정이 완료되었다. 나머지 5개 법률은 시행이 유예되거나 단계적 개방약속에 따라 늦어도 2017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 5년 후) 이후에는 법률이 개정되어 이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방송법」, 「약사법」, 「외국법자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의 5건으로, 이 중 방송법을 제외한 4건은 한·미 FTA 발효 이전 개정된 법률 중 일부를 추가 개정하는 것이다.⁴⁹⁾

49) 최재천 의원실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도자료에서 이행법률이 23개가 아니라 29개라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 기사화하였으나 발효 후 개정되는 법률 6건 중 4건은 발효 전 개정 법률 23개 중 일부의 추가 개정이라 엄밀히 말해 새로운 법 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추가 개정되는 4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새로이 개정되는 2건 중 1건도 이미 개정이 완료되었다.

표 3-13. 한·미 FTA 계기 개정 법률의 유형화

	법률명	주요 경로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한·미 간 규제 조화(4)
2	「전파법」	
3	「대외무역법」	
4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개별 소비세법」	제도 간소화(3)
7	「지방세법」	
8	「우편법」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3)
9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0	「보험업법」 ¹⁾	
11	「공인회계사법」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
12	「세무사법」 ¹⁾	
13	「외국법자문사법」 ¹⁾	
14	「전기통신사업법」	
15	「방송법」 ¹⁾	
16	「저작권법」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
17	「약사법」 ¹⁾	
18	「디자인보호법」	
19	「특허법」	
20	「상표법」	
21	「실용신안법」	
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	「관세법」	
25	「행정절차법」	제도투명성 제고(1)

주: 1) 발효 3년 뒤(2015년 3월 15일 이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 중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것은 개정 완료되었음.
 자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한·미 FTA-한·미 FTA 관련 법제」, <http://oneclick.law.go.kr/CSP/CnpCisMain.laf?popMenu=ov&csmSeq=640&ccfNo=1&cciNo=2&cnpCisNo=1>(검색일: 2014. 6. 13)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한·미 FTA 계기 개정 법률의 유형화

지금까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의 개정 현황을 한·미 FTA의 구성요소에 맞춰 개괄해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이러한 법 개정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제도 선진화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25개 법률을 그 경로별로 유형화해보면 향후 이들 법 개정의 제도 선진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실마리를 얻게 된다.

개정 법률의 유형화를 시도해보면 이들은 크게 ‘한·미 간 규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제도투명성 제고’(1건)의 6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경로별 각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기보다는 다소 중복될 수도 있는 것으로, 어떤 경로가 보다 주요한가 하는 구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요 경로별 유형화를 통해 국내 이행법률이 궁극적으로 제도 선진화에 기여할지 추후 평가하는 데 일종의 준거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형화해보면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 강화’가 총 25개 법률 중 9개 법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미 FTA 관련 국내제도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접근성 제고’가 5건으로,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점 또한 국내법 개정의 주요 취지임이 드러난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한·미 간 규제 조화’로, 이는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각 유형별 법률 개정의 주요 쟁점과 현안을 분석하여 이후 평가의 토대로 삼기로 하자.

다. 한·미 FTA 계기 개정 법률의 쟁점과 현안⁵⁰⁾

1) 한·미 간 규제 조화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과법」, 「대외무역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으로 이미 모두 이행이 완료되어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한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FTA 특혜관세대상상품의 통관절차 신속화·간소화와 양자 세이프가드(SG)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상호 다자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를 개정의 주내용으로 한다. 「전과법」은 IT 기기 인증 관련 상호 인정 도입(시험기관 지정,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양국 간 IT 기기의 교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대외무역법」은 섬유·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을 담은 내용이다.

이 유형은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한다기보다는 양국 간 FTA 체결에 따른 무역 활성화를 위해 세이프가드규정 간소화와 원활화, 그리고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상호 인증(MRA) 등 무역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50) 각 개정 법률의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한·미 FTA-한·미 FTA 관련 법제」,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0&ccfNo=1&cciNo=2&cnpClsNo=1>(검색일: 2014. 6. 13); 국회입법조사처(2012a, 2012b)를 참고.

향후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무역규범의 조화와 통일이 양국간 IT 기기 및 섬유 무역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 될 것이다.

2) 제도 간소화

‘제도 간소화’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별 소비세법」, 「지방세법」의 3개 법령이 포함되며 모두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를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내수기업과의 경쟁심화 및 이를 통한 내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미국의 ‘동의명령제’를 모델로 한 ‘동의의결제’⁵¹⁾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동의의결제’란 경쟁당국에서 집행조치의 대상자와 상호 협의를 전제로 위법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경쟁당국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국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⁵²⁾ 공정거래 위원회는 경미한 공정거래 위반사안의 경우 신속한 경쟁제한상태 해소를 통해 법적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활동의 지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찬성하였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것이 재벌의 공정거래위반행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의 2 제1항에서는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 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 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다음에서 그 예의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52) 이 제도의 도입 경과 및 찬반 논란과 실효성 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국회입법조사처 (2012b, pp. 677~712)를 참고.

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였다. 야당 일부 의원들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 위반 기업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저자세를 취할수록 처벌수위가 약해질 우려가 있고 행정 벌과 형벌이 혼재되면 삼권분립정신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 2012b, p. 685).

「동의의결제」 도입 이후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사업자 두 곳이 이를 활용하였다.⁵³⁾ 국회입법조사처(2014)는 이 포털사업자들이 이 제도에 의한 구제안을 제시할 때 보인 문제점으로, 이들이 주로 장래 피해방지 차원에서만 구제안을 마련한 반면 직접적인 피해구제는 미흡했다고 평가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 2014, pp. 39~40).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공공이익보장 한계, 공정위의 독점적 집행남용 우려, 의견수렴보장의 미흡이라는 세 가지를 지적하며 「동의의결제」의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입법과제로 공공이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을 확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외국사례와 같이 경쟁당국의 분권화, 불공정거래금지규정을 위한 행위 동의의결대상에서 제외, 의견수렴대상 확대 및 관계 전문가 추가 등을 제시하였다.

동의의결제는 2011년 12월 2일 시행한 지 이제 겨우 3년이 되는 것이므로 그 성과에 대한 선분류 판단은 유보해야 하나 지금까지의 적용사례

53) 이에 관한 사건경과 및 찬반양론을 소개한 분석기사는 「‘네이버 첫 적용’ 동의의결제 활성화될까」(『연합뉴스』 2013. 11. 29)를 참고. 한편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자는 2014년 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되었다.(「3월의 공정인, 네이버·다음에 동의의결제를 최초로 적용한 담당자 선정」, 『매일경제』 2014. 2. 27).

를 놓고 볼 때 이것이 외국기업의 국내시장진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입법조사처의 견해와 같이 이를 명실상부한 제도 선진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보완해야 할 입법과제가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개별 소비세법」 개정은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발효 이후 3년 내 5% 단일관세율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세법」은 고배기량의 차량일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기존 세제를 단순화시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세율은 기존과 같이 80~220원으로 하는 개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차종별 세율확대를 목적으로 배기량 기준의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거나 배기량별 요율차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개별 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은 세법을 간소화하여 대한 무역적자가 심한 미국 자동차업체의 대한 수출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시장이 공고한 현대·기아 자동차 독주체제인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상의 독점구조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자동차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소비자후생증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를 계기로 일본이나 독일의 친환경 중대형차 판매가 늘어날 경우 국내 자동차업계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도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제도 선진화인가 하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최대 국정목표로 삼았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협약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탄소배출제품인 자동차의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배기량 기준 세제를 이에 역행

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는 점은 정책목표 간 상충을 야기한다. 동시에 국민의 환경권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

향후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와 같은 세제개편이 외국산 자동차업체의 친환경 자동차 수입증대로 그칠지, 아니면 국내 생산업체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촉진할지 여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세제개편은 명실상부하게 제도 선진화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3)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이는 사실상 국영기관인 우체국의 보험과 농협 등 4대 공제기관이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해 양자 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편법」 개정은 대표적 공기업인 우체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세금면제, 정부의 지급보장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행사를 명시하였다. 아울러 이 법 개정 시 우편물 분실에 대한 산업부장관의 손해배상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손실보상청구원 등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일부 개선시켰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기존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의 신상품 출시를 금지하였다. 아울러 우체국보험의 종류 수정 및 결산 종료 시 금융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을 위시하여 외국의 민간 금융기관이 한국의 우체국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보험업법」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4대 공제기관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의 건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민간 금융기관과 달리 이 기관들에 대한 감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는데 그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보험판매 관련 지급능력사안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맡도록 한 것이다. 단 이 중 최대 규모인 농협에 대한 개정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 기관은 법률이 아닌 고시 개정으로 대신하였다.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한·미 FTA 협정문은 매우 다양한 규제의 도입 혹은 완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개방을 요구했으나 이 중 국내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이상과 같은 세 분야에 국한된다. 이들이 과연 제도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국영보험이자 유사보험인 우체국보험에 대해 투명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국내 금융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공헌하는 선진화의 내용을 담는 것이라 하겠다.

일각에서는 우체국보험이나 농협보험의 경우 민간 보험사와 달리 취약계층을 주요 고객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정책 추진 차원에서 이 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및 정부의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전제조건하에서 가능하다. 첫 번째, 과연 이 유사보험들이 공공성 유지 차원에서 경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기업의 방만경영 및 불투명한 경영의 문제점이 심심찮게 제기되어왔음을 상기할 때 이들의 보험사업이 공공성 유지에 기여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명쾌히 답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유사보험들에 대한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조치가 애초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

는가 하는 점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한·미 FTA 이후에도 투명성 제고조치가 제대로 입법화되지 못한 점은 이 기관들의 특수성으로 인한 건전성 제고의 한계를 엿보게 한다.⁵⁴⁾ 이런 점에서 우체국보험 및 4대 공제기관의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약 60여 개의 ‘유사보험’에 대해 RBC (Risk Based Capital, 자기자본규제제도) 등의 건전성 제고조치가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되고 있는 점은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⁵⁵⁾

공기업 개혁은 한·미 FTA뿐 아니라 TPP에서도 최대 현안이자 난제로 대두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 분야의 법률 개정은 미국에 비해 공기업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한국 상황에서 국내 공기업이 공공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영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제도 선진화로 이어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4)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접근성 제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접근성 제고’를 겨냥하여 개정된 법률은 모두 5개다. 전문서비스직의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공인회계사법」, 기획재정부 소관의 「세무사법」, 법무부 소관의 「외국법자문사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기 외국법인에 대해 2017년 3월까지의 단계적 개방을 골자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은 한·미 FTA 협상결과에 따라 통신 및 방송 서비스 시장의

54) 『뉴스핌』(2013. 7. 4) 「정부 국회, 유사보험업 규제 안하나 못하나」.

55) 최근의 일련 조치에 대해서는 『한국금융신문』(2014. 8. 28) 「<포커스> 한·미 FTA 두 돌.....유사보험 감독일원화 ‘첫단추’」를, 우체국보험의 특성에 대해서는 『한국금융신문』(2013. 10. 6) 「<포커스> 잠자는 사자 ‘우체국보험’... 농협 버금가는 덩치」 참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개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전문직 서비스 시장개방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에 의한 법조시장개방이다.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시장개방 2단계에 있는 대표적인 전문직 서비스업인 법조시장의 경우 이듬해인 2012년 7월 외국로펌이 국내시장에 처음 진출한 뒤 2014년 9월 1일 현재 많게는 소속 변호사 수가 4,000명이 넘는 영미계 대형로펌 19곳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한국로펌은 중국에 11곳, 베트남에 9곳, 일본에 3곳 등 총 23곳이 해외에 진출해 있다.⁵⁶⁾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2~5월간 법률서비스 적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제고에 의한 것인지 경기침체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⁵⁷⁾ 국내시장이 개방된 이후 현재는 외국로펌에 비해 국내로펌이 다소 불리하거나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개방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불리한 경쟁여건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⁵⁸⁾ 그러나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개방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EU 기업은 2016년 7월, 미국기업은 2017년 3월)에나 가능할 것이다.⁵⁹⁾

56) 「국제 경쟁력 갖춰 세계화된 법률서비스 시장 이끌어 나가야」(『대한변협신문』 2014. 9. 1).

57) 「법률시장 개방 2년, 한국로펌 vs 외국로펌 성적표는?」(『머니투데이』 2014. 7. 2).

58) 「‘법률시장 완전개방 긴급진단(3)’ 3중고 빠진 국내로펌<끝>」(『법률신문』 2014. 4. 15).

59) 국내 법조시장개방에 대한 기대효과 및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2012b), pp. 713~773을 참고하라. 한편 한국 법률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로펌들은 임의단체형식으로 연합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어 완전개방 이후에도 국내로펌에 비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시장 완전개방’ 긴급진단(1) 외국로펌 연합체 뜬다」(『법률신문』 2014. 4. 8).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핵심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 완화로 KT와 SKT를 제외하고는 공익성 심사 통과 시 간접투자(외국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 100% 가능해진 것으로,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밖에 전기통신사업자 허가제도와 이용약관 인가제도의 간소화 및 완화,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 제공(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기간통신사업자나 도로 등 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하여 통신망의 확충과 고도화를 꾀하는 설비제공제도 및 설비공동사용제도 도입,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신설 등을 담은 전면 개정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조문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하고 가급적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바꿔 국민의 법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하는 등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 규제 완화는 협상 당시부터 찬반 양론이 엇갈린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찬성 측은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여건이 조성되어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에도 불구하고 KT와 SKT는 제외되므로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며 사실상 외국인의 인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외국자본유입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촉진보다는 투기자본의 유입에 그칠 공산이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간접투자로 제한하고 공익성 심사를 거치더라도 이것

이 국가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개정이 향후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촉진 및 그에 따른 서비스요금 인하 혹은 국내 서비스업체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대 측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으로 그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지배적 통신사업체의 과도한 요금 책정과 부실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외국인사업자의 국내진출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반대 측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 또한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아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방송법」은 국내법을 일부 개정하여 미국에서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전문채널,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의제(擬制)외국인(개인, 법인, 정부)의 간접투자(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를 통해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투자하는 허용기준이 기존의 49%에서 100%로 늘어난다. 단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14조의 개정은 발효 3년 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로 유예되었다. 또한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쿼터를 하향조정하고 해외수입 방송프로그램 중 1개국 편성쿼터 비율은 상향조정하여 수입물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였다.

방송법 개정 또한 협상 당시부터 미국기업 진출에 따른 경쟁촉진을 통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의 영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도태 및 그 귀결로서 막강한 자본력과 경쟁력을 지닌 미국기업의 국내 방송시장 잠식 우려 사이에서 논란이 가중되었다. 최근 타임워너, 뉴스코

퍼레이션, 21세기폭스 등 거대 미국계 글로벌 미디어그룹들이 국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를 마쳤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들이 시장이 협소해 광고시장도 정체되어 있는 국내 방송시장에 선뜻 진출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진 국내 방송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류 붐을 타고 이들이 국내 콘텐츠의 해외보급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⁶⁰⁾ 이 법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이 유보되어 있어 아직 이에 대한 평가는 어려우나 일부에서는 막강한 미국 PP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나 해외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한 PP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⁶¹⁾

방송시장개방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에 자극받아 국내 PP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방송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 선진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PP와 국내 PP의 경쟁력 격차가 클 경우 국내 PP의 대다수를 점하는 영세업체의 도태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의 자구노력이 우선되나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은 문화부의 「저작권법」,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특허청의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

60) 『이데일리』(2014. 3. 12), 「방송 한·미 FTA 발효 D-1년, 외산 프로 쓰나미 몰려오나」.

61) 『디지털타임스』(2014. 4. 16) 「방송콘텐츠시장 완전개방 초읽기」, 방송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PP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뉴스웨이』(2014. 4. 1), 「<포커스> 한·미 FTA 발효 1년.. 국내 PP 현주소는?」를 참고하라.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법무부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9건으로 개정 법률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한다.

지식재산권은 일종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다보니 국제적으로 관련 제도와 규범 제정 시 산업계에서는 특허보호와 경쟁촉진 사이에서 양자 간 균형추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작권의 권리와 이용 간 균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무수한 논란이 제기되어온 분야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미 FTA 협상 및 이후 이행과정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야는 무수한 논쟁을 불러모았다. 이처럼 개정 법률 중 지식재산권 분야가 가장 많은 데다 각 법률별로 다루어야 할 현안도 적지 않아 다음에서는 이 중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저작권법과 약사법을 중심으로 쟁점 및 현안을 간략히 분석하기로 한다.

「저작권법」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변화가 많은 법으로,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에서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이 이루어졌다.⁶²⁾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물의 공정이용 제도 도입, 위조라벨 배포행위 등 저작권자 권리침해행위 금지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출판권과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방송 제외) 등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요건 구체화, OSP가 저작권 등의 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요건으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62) 저작권법 개정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협회(2011), 이에 관한 비판적인 검토는 남희섭(2012)을 참고.

자의 계정 해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제도도 도입하였다. 저작권자 보호수준도 강화되어 저작권자의 권리침해행위,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 위조라벨을 배포하는 행위, 영화상영권 등에서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공중 송신하는 행위 및 방송 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강화되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배상원칙에서,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실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등을 대신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정보제공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른 당사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다른 당사자는 영업비밀보호 차원에서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일반화된 비밀유지명령제도도 도입되었다. 법원은 필요 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국제조약상의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약사법」 개정은 2015년 3월 15일 도입 예정인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핵심이다.⁶³⁾ 이를 위하여 개정 약사법은 의약품특허목록 등

63)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2014)를 참고하라.

재 및 공고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특허권자 등에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먼저 어떤 의약품의 품목허가권자(특허권자)는 해당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특허권자나 존속기간 등의 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식약처장은 특허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렇게 하여 특허목록에 등재된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또 다른 의약품(복제약)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는 그 사실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복제약 허가신청이 허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허권자에게 통지되어 만일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복제약 판매를 제한하는 판매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약사법」에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소위 「제네릭 독점권」)」제도를 도입하여 등재 의약품의 자료를 근거로 최초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가 등재특허에 대해 승소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1년간 이와 유사한 다른 복제약의 판매를 제한하여 최초 복제약 생산자의 특허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약사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논쟁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선진적인 제도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이 1984년 개정한 약사법인 「해치-왁스만(Hatch-Waxman)」법에 뿌리를 두는 이 제도는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중시하는 미국적 풍토에서 형성된 것으로 EU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강력하게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

는 특성으로 인해 개도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WTO TRIPs에서도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미국 이외에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요르단, 싱가포르, 페루, 파나마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이며 이 중 페루와 파나마의 경우는 이 제도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위 문제와 연결되는 질문은 특허권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늦추는 소위 ‘특허영속화(evergreening)’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강구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에서 2000~08년까지 유효약리성분(API)의 물질특허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소송에서 14개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가 신약 제조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총 48건 중 37건으로 승소율이 77%에 달한다(남희섭 2014). 2010년 10건에 불과했던 의약품 특허소송은 2011년 37건으로 늘어났고, 2012년 51건, 2013년 70건으로 급증했으며 2014년에는 7월 말까지만 50건이 청구되어 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특허권자의 특허위반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약뉴스』 2014. 8. 5). 문제는 이러한 특허소송 중 1심 무효심판은 2010년 1건, 2011년 20건, 2012년 18건, 2013년 25건이며 2014년엔 22건이다. 이렇듯 기존에 특허소송의 무효심판 비중이 높다는 것은 특허권자의 특허연계제도 남용가능성을 내포한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심화된다면 그로 인한 제네릭 출시 지연에 따른 의약품 가격상승은 일반소비자의 후생저하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정 약사법에서는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신약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도

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되었으나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경우 이들이 소송 기간에 책정한 높은 약가로 인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제약회사의 이익단체인 한국다국적 의약품협회(KRPIA)는 특허권자의 패소사실만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유지분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하고 환수한다는 것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향후 정부 대응 여하가 주목된다.

정부가 약사법 개정 시 도입한 「제네릭 독점권」 제도는 국내 제네릭 제약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진화법인가? 이 제도를 도입한 애초 취지는 특허권자에 도전한 제네릭사가 승소할 경우 1년간 독점판매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제네릭 제약사의 특허소송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제도와 관련하여 식약처가 2014년 5월 9일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제네릭사의 미약한 혁신성에 비취볼 때 과도한 특허이며, 한·미 FTA에는 합성의약품만 포함되어 있고 바이오의약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 약사법에서 바이오약은 제외되어야 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특허위반 여부는 식약처가 아닌 공정위가 판단할 사안으로 이는 식약처의 월권이라는 지적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제네릭사가 특허소송을 취하하는 반대급부로 오리지널사로부터 일정 기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도 우려된다(『약업신문』 2013. 1. 10). 2012년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역지불 합의’가 약 40건에 이르렀으며 그와 관계된 의약품 수가 3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에 비취볼 때 이 제도가 불공정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다(고가영 2014). 미국의 비영리 보건연구단체인 US PIRG에 의하면 ‘역지불 합의’는 제네릭 출시를 평균 5년에서 최대 9년 가량 지연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가영 2014).⁶⁴⁾

그밖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개정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법」 개정은 특허권 설정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이 주를 이룬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란 특허출원인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비밀유지명령제도」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예외인정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특허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특허권취소제도를 폐지하였다.

「디자인보호법」은 한·EU FTA와 한·미 FTA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이 핵심으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에도 모두 포함시켰다. 「실용신안법」 개정에서는 실용신안권 설정등

64) 실제 공정위는 201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대 다국적제약업체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 간 ‘역지불 합의’ 사례를 경쟁법 위반행위로 적발하고 이를 계기로 제약분야의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014년 2월 27일 선고한 「특허권 행사 명목 의약품 제조 담합 사건」(2012두24498 판결)을 참고.

특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비밀유지명령제도, 공지예외적용시기 연장이 핵심이다. 개정 시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실용신안권취소제도도 폐지하였다.

6) 제도투명성 제고

마지막으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의 「행정절차법」 개정이 있다. 이 개정은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입법을 위한 행정절차에서 예견가능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특히 FTA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법 개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 점 역시 FTA에 따라 외국인투자 및 무역확대로 인하여 국내법 개정 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범위가 내국인에서 외국인까지로 확대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라. 전망 및 평가와 정책시사점

1) 국내제도 변화에 대한 미국의 평가

미국이 한·미 FTA 이후 우리의 국내제도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이는 일차적으로 우리 정부가 국내진출을 원하는 미국기업의 시각에서 선진화가 필요한 한국의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그것이 설령 제도 선진화의 내용이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이들이 제기하는 사항은 추후 이행위원회에서 실제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추가적인 제도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해마다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라는 제하에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해 발표하는데 2014년 3월 31일(현지 시간)에는 2014년 연례보고서가 발표되었다.⁶⁵⁾ 이 보고서는 ‘국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기술장벽’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한국에 대한 것은 2013년에 이어 한·미 FTA 발효 이후 시장접근 및 제도 개선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사실상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미국은 이 중 적지 않은 것을 ‘한·미 FTA의 완벽한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USTR은 한·미 FTA 이후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된 점을 평가하며, 특히 2011년 대비 2013년 자동차 수출이 80% 증가하여 미국 수출기업의 시장 접근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한다. 국내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전자상거래 상 원화 결제 관련 제한 완화,⁶⁶⁾ 「화학물질평가및등록에관한법률」 하위 법령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일부 반영,⁶⁷⁾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65)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경 의회에 제출한다. 2010년부터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항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하고 있다(산업통상부 2014. 4. 2).

66) 금융위원회는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 해외에 본점이 있고 5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체(contents store)에 대해 소비자 카드정보의 저장, 모방 일 기기에서의 원클릭(one-click) 구매를 허용하였다(2013. 11. 27).

표 3-14. 2014년 미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수입정책	○ (쇠고기) 2008년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따라 양국 수출입업자 간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키로 자발적으로 제한, 이 위생조건이 그간 원활히 이행 ○ (쌀) 2005년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및 최소 시장접근에 따른 미국산 쌀의 對韓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 ○ (원산지 검증) 한국정부의 원산지 검증과 관련 광범위한 우려가 존재하며, 양국 간 상호 이해제고 노력 중
정부조달	국제공통 평가기준에 대한 상호 인정협정(CORA) 회원국 제품에도 추가인증 요구
산업보조금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 중
지식재산권 일부만 시행	○ 한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기업 내 사용자의 침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 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복제, 소비자 복제 등에 대한 우려
서비스장벽	○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의 외국프로그램 쿼터 제한, 외국 재송신채널에 대한 한국어 더빙 제한 등에 대한 우려 ○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인 법률전문가 고용 및 외국로펌 한국사무소 개설이 허용되었으며, 향후 단계적 개방이 이루어질 계획 ○ 한국정부가 금융정보 해외이전 관련 규정 등을 제정한 바, 향후 이행상황 검토 예정 ○ 금융당국의 신용카드정책 진행상황에 대한 관심 ○ 고해상도 영상 및 관련 지도의 해외반출 제한상황에 대한 우려 ○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에 대한 특례 제한사례 발생에 대한 우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의 정책효과성에 대한 검토 필요
전자상거래	한국정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결제시스템상 일부 장애해소노력 평가
투자장벽	○ 자본시장 개혁 통한 투자장벽 제거는 긍정 평가하나, 과세 등 투자 관련 규제 결정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제기 ○ 한·미 FTA 이행에 따라 현재 외국인 49% 투자제한이 있는 기간통신규제가 철폐돼 2014년 3월부터 외국인 100% 소유 가능 - 단 지상파·케이블·위성사업자 등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 외국위성재송신채널 지분 제한 등 유지 ○ 쌀·보리 경작, 육류 도매, 발전, 전기 유통 및 판매업, 뉴스 간행 및 출판 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 등 존재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감면, 무관세수입, 노동조건 완화(장래인 의무고용 예외허용 등) 등 기업환경 개방노력 긍정적 평가
환경쟁적 관행	FTA 관세인하와 수입품 가격 간 영향분석에 대한 정밀한 접근 필요
기타 장벽	규제개혁·투명성 최소 입법 예고기간 연장(20일→40일 이상)에 대해 평가
	자동차 ○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저탄소협력금제도 관련, 미 자동차업체의 우려
	오토바이 최근 오토바이 소음기준 완화 평가하나, 고속도로 주행금지에 대한 검토 필요
	의약품 의료기기 약가 및 치료재료 가격결정이 혁신가치를 반영하면서 형평성 있게 추진될 필요성을 제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미 무역대표부, 201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2014. 4. 2).

- 67) 화평법(2013)에 의거, 2014년 2월 환경부는 1톤 이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규정하는 하위법령안을 발표하였다.

표 3-15. 2014년 미 무역장벽보고서(SPS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생명공학	○ 한국이 2008년부터 시행 중인 LMO(Living Modified Organism)법은 ① 특정 제품 수입시 카르타헤나 의정서보다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② 관련 검토절차가 중복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어 새로운 제품의 수입승인이 지연될 수 있음. - 또한 LMO법은 유전자변형식물만 염두에 두고 작성된 바, 유전자변형동물의 초국경적 이동에 대해 적용되기 어렵다고 언급 ○ 2012년 말 LMO법이 개정되었으나, 미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우려(① 종자용과 식품가공/사료조제용 간의 非구분, ② 중복적 위험관리절차 상존) - 2013년 한국정부는 식용 단일종 품목 5건, 사료용 단일종 품목 2건 허가를 완료
식품안전	최고기 2008년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따라 양국 수출입업자들 간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키로 자발적으로 제한, 이 위생조건이 그간 원활히 이행
	최대잔류량 제한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최대잔류량제한(Maximum Residue Limits)'이 적용되고 있어, 미국 농산물 생산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MRL이 적용될지 불분명한 상황
	감자 zebra chip 바이러스 발생을 이유로 2012년 8월 미국 북서부산 신선감자 수입을 금지한 바 있고, 2012년 9월 가공용도의 얇게 썬 감자의 수입재개를 허용하였으나, 식용감자의 수입은 여전히 금지된 상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미 무역대표부, 201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2014. 4. 2)

요구 간소화⁶⁸⁾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우려사항으로는 의약품·자동차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보호 등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였으나 이 중에는 기존 개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도 있어 추후 개정요구를 해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표 3-15]의 SPS 보고서나 [표 3-16]의 TBT 보고서에서도 기존의 국내법 개정과 무관하고 ‘한·미 FTA의 완벽한 이행’ 요구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무역장벽으로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미국 USTR 보고서를 우리의 FTA 관련 국내 이행법령 현황과 비교해보면 제도개선을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이 유사하면서도 다

68) (기존) 통관 위해 상품의 모든 제조법 및 구성물질 100% 공개요구 → (개선) 주요 구성물 1~2개만 공개.

표 3-16. 2014년 미 무역장벽보고서(TBT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양자 협의	○ 한국과 미국은 정기적인 양자 회의를 통해 TBT 문제를 논의 - WTO TBT 위원회, 자동차 작업반 등 한·미 FTA하에 설립된 작업반, 기타 양자 협의 등을 활용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안	2013년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년 2월 하위법령안이 발표된 바, 1톤 이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규정하였으나,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해소 필요
유기농산물 인증제	유기농산물의 한국 내 판매를 위해서는 한국기준에 따른 인증 내지 상호 동등성협정 체결이 필요
전자통관	전자통관시스템상 상품 구성성분 중 주요 성분 1~2개 목록만 공개토록 변경한 점 평가
정보기술장비 전자 안전규제	국가기술표준원은 공급자 적합성선언 적용범위의 확대 등 업계의 우려를 수용하였으나 일부 우려사항(예: 생산공장별 별도의 안전인증 필요) 상존.
태양광 패널 인증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한국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한국 태양광패널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미국 측은 미국산 박막 태양광패널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된 국제기준 도입을 요청 중
자동차부품	향후 자기인증제 대상범위 확대가 예상되어, 미국측은 지속적으로 주시할 예정
자동차 구성품	○ 섀시프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제기로 섀시프 안전성 시험 실시 ○ 당해 시험방식과 관련 국제기준 간 합치 여부에 대한 의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미 무역대표부, 201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2014. 4. 2)

른 점이 드러난다. 즉 양국 모두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한국시장의 접근성 개선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공통되나 한국 측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 선진화에 방점을 찍는 반면, 미국 측은 그 결과로서 한국시장에의 접근성 개선에 더 큰 관심이 있다. 이는 한·미 FTA가 곧 한국의 제도 선진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중 일부는 여전히 우리의 법제도가 불투명하고 신뢰도가 낮음을 반영하는 것이나 어떤 점에서는 시기상조인 국내시장개방이 우리 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저해하거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애초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2) 국내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정책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이행법령은 발효 이전 제·개정된 법령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으로 총 66건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제도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강조했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많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특히 이행법령 수가 우리보다 적은 미국과의 형평성 위배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위법령인 법률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단순합산하여 66건이라 할 경우 국내제도 변화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한·미 FTA 협정문의 구성요소(상품, 서비스, 규범)를 부문으로 간주하고 특정 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법령을 하나의 분야로 간주하여 부문별·분야별로 재구성해보았다. 이를 통해 개정 법령건수는 66건이나 이는 한·미 FTA를 구성하는 4대 부문의 29개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일어났다는 특징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한·미 FTA 계기 국내제도 변화의 윤곽을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다.

단 이 중에는 약사법과 같이, 입법기관의 통제가 가능한 법률은 하나만 개정된 반면 그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위임규정이 35개에 달해, 각 분야별로 어느 수준에서의 법령 개정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추구는 삼권분립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국내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최상위법령인 법률을 개정하여 이

를 통한 의회 내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4개 법률 중 19개 법률이 이미 개정 완료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FTA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환경을 맞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5개 법률은 시행이 유예되거나 단계적 개방약속에 따라 늦어도 2017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 5년 후) 이후에는 법률이 개정되어 이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방송법, 약사법, 외국법자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의 5건으로, 이 중 방송법을 제외한 4건은 한·미 FTA 발효 이전 개정된 법률 중 일부를 추가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는 아직 제도 변화를 실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되는 것은 적어도 2020년 이후가 될 것이다.

개정된 국내법을 바라보는 평가의 핵심은 법령의 개수가 아닌 제도 변화의 방향일 것이다. 즉 이러한 제도 변화가 곧 제도 선진화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제도 선진화로 이어지는가 하는 관점에서 경로별 유형화를 시도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이들 법 개정의 제도 선진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준거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은 ‘한·미 간 규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제도투명성 제고’(1건)의 6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유형화해보면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 강화’가 총 25개 법률 중 9개 법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미 FTA 관련 국내제도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미 간 규제 조화’는 국내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 인증(MRA)과 같은 상호제도의 조화와 통일이므로, 이는 제도 선진화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도 간소화’에 포함되는 3건의 법률 중 「동의를결제」는 국내의 적용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듯이 명실상부하게 선진적인 제도의 도입이라고는 보기 곤란한 측면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개별 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은 기존의 세제개편을 통한 미국기업 배려라는 측면이 다분히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추진정책과도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 이 또한 제도 선진화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동차시장의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판매동향을 예의주시해가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유형에 포함되는 3건의 법률 개정은 금융공기업과 미국계 민간 금융기관 간에 공정한 경쟁여건 제공이라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이 자체로는 제도 선진화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것이 단지 미국계 금융기업에 대한 시장개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국내 금융서비스시장의 제도 선진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기업이 공공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영상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의 후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특히 공룡급 금융기관이 되어 있는 농협보험과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건정성 제고 노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접근성 제고’에 포함되는 5건의 법률은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7년이므로 다른 법률보다도 이에 대한 평가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내시장이 개방된 이후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지닌 외국로펌에 비해 국내로펌이 다소 불리하거나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것도 외국계로펌의 국내시장 진출과 그로 인한 국내로펌의 도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 통신 및 방송 시장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2건의 법률 개정의 경우는 아직 그에 따른 외국기업의 진출이 없어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방송시장개방이 국내 영세한 PP의 도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은 가장 많은 9건이 포함되는 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 이 분야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여기에서는 이 중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또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법률의 개정을 둘러싼 현안은 결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특허권자의 보호와 제네릭 제약사의 경쟁 촉진 간에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제도를 남용하여 특허영속화를 도모할 우려에 대한 예방책은 있는지, 후자를 위한 제도화 장치는 「제네릭 독점권」으로 충분한지로 집약된다. 2015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의 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투명성 제고’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은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선진적 제도라 할 수 있다. 특정 제도 도입에 앞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도 선진화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미국도 2013년에 이어 2014년 무역장벽보고

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14년 담뱃값 인상 시 정부는 입법고시기간을 불과 3일로 함에 따라 선진제도 도입이라고 강조하고 미국 측으로부터도 평가받은 제도를 스스로 어겼다. 이는 국제법적 효력을 지니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정부가 편의에 따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서 향후 FTA에 따른 국내제도 변화의 지속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측면이라 하겠다.

제4장 향후 정책방향

1. 지역경제통합에의 대응
2. 기업의 FTA 활용
3. 역외가공지역 조항
4. 산업별 맞춤형 정책
5. 산업계와의 연계성
6.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행 모니터링



1. 지역경제통합에의 대응

그동안 빠르게 확대되던 양자 FTA와 병행하여 최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복잡한 FTA 네트워크로 인한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현상의 만연, 동아시아 가치사슬구조의 발달에 따른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 부각,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 증대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이 APE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TPP 협상을 주도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중국 역시 중화권 국가들과의 FTA(홍콩, 마카오, 대만)와 한·중·일 FTA를 통해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ASEAN도 RCEP을 통해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함으로써 ASEAN의 결속력과 영향력을 높이고, TPP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ASEAN 국가들(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 대응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APEC 차원에서 FTAAP에 대한 구상이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수 APEC 회원국과 겹친다는 점에서 FTAAP은 TPP와 RCEP를 아우를 수 있는 거대경제통합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FTA 로드맵의 원칙에 따라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경제규모와 협정문의 포괄범위를 가중치로 평가할 경우 연결중심성으로 측정된 성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시장에 대

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동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할 경우 매개중심성은 일본이나 ASEAN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논의과정 매개자로서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온 FTA 플랫폼보다는 일본이나 ASEAN이 기체결한 FTA 형태가 보다 많은 국가들에 설득력 있을 수 있다.

경제규모에 대한 고려를 위해 가중치가 반영된 지표를 비교하면, 연결 중심성에서는 일본이 두드러지고, RCEP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역 경제통합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추가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느냐를 비교하면 TPP에서의 일본과 RCEP 및 FTAAP에서의 중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FTA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할 상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근거로 FTA 네트워크 확대는 적절하지 않아보인다. TPP와 RCEP이 동시에 발효되는 경우를 FTAAP과 유사한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보다는 그동안 FTA 네트워크 형성이 다소 부족했던 일본과 중국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제통합 논의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양자 FTA를 통해서도 충분한 시장접근성을 확보했음에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식별하게 이에

초점을 맞춰 협상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첫 단계는 양자 FTA와 지역경제통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영귀(2014a)에 따르면, “큰 틀에서는 양자 FTA나 지역경제통합 논의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지역경제통합은 양자 FTA와 달리 다수의 국가들이 논의에 참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으로는 협상의 타결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단 타결이 되어 발효된다면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는 참여하는 다수의 국가들이 공통의 협정을 적용받는다든 점에서 이 국가들과 동시에 양자 FTA를 체결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협상 참여국에 한해 배타적 특혜를 부여하는 상품양허와 같은 분야에서는 양자 FTA와 달리 공통양허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수의 참여국 중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민감한 분야도 개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개방수준이 높기 어렵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히 여러 국가들과 개별 FTA를 체결한 경우 FTA마다 상대국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활용에 따른 행정비용이 오히려 많이 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역경제통합에서는 통일된 규정 적용을 통해 이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국제생산분업구조와 가치사슬구조가 발달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재 교역이 활성화되어 있어 다수의 양자 FTA로 인한 스파게티 볼 현상에 대한 대비로서 지역경제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 중요한 차이는 지역경제통합이 WTO와 마찬가지로 다자주의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효과란 어떤 네트워크에 많은 구성원이 들어갈수록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한 구성원이 누리는 효용이 증

표 4-1. 양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비교

	양자 FTA	지역경제통합
배타적 특혜 (예: 상품양허 등)	양자 양허안	단일 양허안
원산지규정	양자주의 (스파게티 볼 효과)	공동, 누적 원산지
비배제적 이슈 (예: 규범, 표준, 규제 등)	상호 인증	네트워크 효과

자료: 김영귀(2014b), 3중전환 이후 중국경제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

가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통합에서 여러 국가들이 합의한 기술표준이나 통상규범이 만들어지는 경우 새롭게 만들어진 표준이나 규범은 여러 국가에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수출하고자 하는 여타 국가들도 이 표준과 규범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미 합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별도의 노력 없이 이 기술을 수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선점효과라는 혜택을 보게 되며, 이 혜택은 수용국 수가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는 국가가 늘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통합에서의 통상규범은 양자 FTA에서의 규범 합의와 달리 장차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우리의 지역경제통합에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과 중국이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우려왔던 선점효과의 소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신흥국들과의 FTA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에 활발하게 임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 FTA 신흥상대국을 발굴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는 기체결 FTA를 초기 템플릿으로 하여 다수 참가국의 수요에 따라 하이브리드형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템플릿 경쟁에서의 우위확보가 중요하다.⁶⁹⁾ TPP 협상의 경우 미국이 참여하면서 한·미 FTA를 초기 템플릿으로 도입하였고, 미국과 EU 간 논의되는 TTIP에서도 한·미 FTA와 한·EU FTA를 출발점으로 조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RCEP의 경우 이미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과의 경제통합 논의라는 점에서 ASEAN+1 FTA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중·일 FTA는 아직 양자 FT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중 FTA에서의 모델리티를 기반으로 3국이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방수준이나 포괄범위 역시 한·중 FTA가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템플릿의 형태를 출발점으로 하되,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 템플릿을 변화 발전시킨 하이브리드형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김양희(2013)의 지적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중치를 고려하여 매개중심성을 계산해보면, 중국의 영향력은 미미해진 반면 TPP나 FTAAP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RCEP에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매개중심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왔고, 일본의 경제규모나 FTA 영향력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보다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TPP나 RCEP으로 인해 한·중·일 외 동아시아 지역의 여타 국가들이 매개자로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3국은 중심에서 다소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일 3국만 비교한다면 한국은 경제규모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69) 김양희(2013) 발표자료에서 인용.

고 궁극적으로는 FTAAP, 그 과정에 있는 TPP에서는 여타국들보다 그동안 구축된 포괄적인 FTA 네트워크를 토대로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이 시사하는 점은 우리와 템플릿 경쟁을 벌일 상대국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TPP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의 FTA 협상 틀이 미완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일단 RCEP에서는 이미 일본이 구축한 FTA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상당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ASEAN 회원국들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RCEP 협상에서 우리가 수행 가능한 매개자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중간자 역할이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취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역할을 식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형태로 개발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신흥개도국의 자립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 TPP 협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미국과 체결한 FTA 덕분에 TPP에서의 매개자 역할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TPP 협상동향에 주목하여 한·미 FTA+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으로 FTAAP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FTAAP을 염두에 두고 TPP와 RCEP에서 각각 취할 역할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2. 기업의 FTA 활용

수출품목 다변화에서 FTA 체결 후 우리나라 기업의 체결 대상국에 대한 수출품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는 2007~13년 기간 기업유형별 총수출품목 수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세계 수출품목은 3,862개 품목에서 5,223개 품목으로 35.2% 증가하였고 중견기업의 수출품목 수도 4,692개 품목에서 5,926개 품목으로 약 26.3%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총수출품목 수는 2007년에 8,577개 품목에서 2013년에 8,912개 품목으로 약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2007~13년 기간에 새로운 품목의 신규수출이 이루어졌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품목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KHS 10단위 기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3,862	4,227	4,390	4,684	4,832	5,116	5,223
중견기업	4,692	4,842	4,943	4,836	4,790	5,753	5,926
중소기업	8,577	8,663	8,753	8,901	8,926	9,066	8,912

자료: 관세무역개발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증가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의 수출품목은 2007~13년 기간에 268개 품목에서 606개 품목으로 126.1% 증가하였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수도 각각 74.3%와 33.5% 증가하였다. 또한 EFTA

와 ASEAN에 대한 수출품목 증가도 전체 수출품목 증가를 크게 상회하였다. 기업유형별 총수출품목 수에서 FTA 체결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비중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4-3]에 정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에서 대기업 수출품목의 대칠레 수출 비중은 2007년에 6.9%에서 2013년에는 11.6%로 크게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수출품목도 같은 기간 12.0%에서 15.4%로 증가하였다. EFTA에 대한 수출품목 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5.2%에서 6.6%로, 15.1%에서 16.6%로 증가하였으며 ASEAN에 대한 수출품목 수는 대기업의 경우 2012년에 50%를 넘어 2013년에 53.0%를 기록하였고,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수 비중은 2013년 71.2%에 육박하였다. 총수출품목 수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수입국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품목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2010년 이후 발효된 한·인도 CEPA나 한·EU FTA 및 한·미 FTA의 경우 기존에 칠레나 ASEAN과 같이 눈에 띄는 수출품목 비중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유형별로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비록 단기적인 분석만이 가능하지만 이는 이들 FTA에서 기존의 수출품목 다변화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FTA 이후 대기업 수출 비중의 증가도 우리나라 FTA 체결국 수출의 눈에 띄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분석이 가능한 2007~13년 기간에 대칠레 수출을 제외하고 EFTA와 ASEAN에 대한 수출에서 대기업 수출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FTA의 경우 총 EFTA 수출에서 대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6.0%에서 2013년 89.1%로

표 4-3.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비중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칠레							
대기업	6.9	9.7	10.4	10.3	12.1	11.9	11.6
중견기업	6.0	7.2	6.5	6.2	6.2	7.8	8.2
중소기업	12.0	12.8	13.5	14.7	15.4	15.5	15.4
EFTA							
대기업	5.2	6.2	6.6	7.3	6.4	6.0	6.6
중견기업	5.2	4.2	5.4	5.2	6.4	5.9	6.5
중소기업	15.1	15.0	15.1	15.6	16.2	15.5	16.6
ASEAN							
대기업	46.9	48.7	47.2	47.7	48.9	51.1	53.0
중견기업	43.6	46.8	49.6	53.4	52.0	56.8	57.9
중소기업	66.6	68.3	68.9	70.8	70.8	70.7	71.2
인도							
대기업			20.5	22.8	25.4	24.9	25.8
중견기업			19.6	18.3	19.7	22.0	21.3
중소기업			32.4	34.2	34.9	33.9	32.3
EU							
대기업				41.5	40.0	41.9	40.7
중견기업				35.8	38.4	41.1	41.5
중소기업				53.0	53.8	52.4	51.8
미국							
대기업					37.4	38.3	39.0
중견기업					37.9	43.1	41.6
중소기업					55.8	56.7	56.6

주: 기업분류가 되지 않은 '기타' 기업은 제외하였다, 빈 셀은 각 상대국과의 FTA가 발효되기 이전이다.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거의 90%에 육박하였으며 ASEAN 수출에서도 대기업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45.2%에서 58%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EFTA 수출의 경우는 2007년 20.0%에서 2013년에는 7.5%로 감소하였고 ASEAN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25.8%에서 20.5%로 감소하

표 4-4. 기업유형별 수출비중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칠레							
대기업	83.5	81.5	82.8	77.5	65.4	70.4	71.6
중견기업	8.6	8.4	7.7	8.9	15.9	14.1	13.5
중소기업	7.9	10.0	9.4	13.5	17.9	15.5	13.8
EFTA							
대기업	66.0	82.3	86.9	84.9	78.4	81.3	89.1
중견기업	13.3	3.9	3.1	7.6	4.1	5.4	3.0
중소기업	20.0	13.6	9.7	7.3	16.7	13.3	7.5
ASEAN(CLMM)							
대기업	31.0	35.4	34.1	42.4	45.4	49.1	43.7
중견기업	19.3	17.9	13.8	10.6	14.0	18.9	22.9
중소기업	49.5	46.5	52.0	46.8	38.2	31.8	30.7
ASEAN(ASEAN 6)							
대기업	48.0	52.7	48.1	52.9	49.4	66.8	63.4
중견기업	30.5	26.7	31.6	27.0	31.5	16.9	17.3
중소기업	21.2	20.4	20.0	19.8	18.2	16.3	16.7
ASEAN 총계							
대기업	45.2	49.8	45.4	50.9	48.6	62.8	58.0
중견기업	28.6	25.2	28.2	23.8	27.9	17.3	18.9
중소기업	25.8	24.8	26.2	25.1	22.3	19.8	20.5

주: 기업분류가 되지 않은 '기타' 기업은 제외하였다.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였다. 이는 FTA 체결 이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FTA 활용을 위한 능력과 역량을 지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여전히 FT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체결 FTA 체결 상대국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FTA를 통해 상대국과의 교역증가,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증가라는 목표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발효 초기 단계인 FTA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수출은 우리나라 평균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빠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출증가는 FTA 체결 이전에 이미 수출하고 있던 품목의 수출이 상대국의 관세가 인하 혹은 철폐됨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경우와 FTA 체결 이전에는 수출되지 않던 신규 제품이 새롭게 수출되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품목 수 및 수출기업의 증가는 FTA가 수출상품 다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업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출증가의 효과가 대기업에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평균 수출액 증가나 수출품목 다변화에서 대기업의 증가율은 중소기업들을 상회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FTA 발효 이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품협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이나 중소기업의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이 품목들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에 협상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의 FTA가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FTA는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개도국/후진국과의 협상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세철폐에 따른 시장접근성 향상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중소기업 수출품목에 대한 빠른 관세인하나 즉각적인 관세 철폐는 중소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존 수출품목의 수출증가나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와 한·EU FTA가 체결, 발효되면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FTA 지원은 주로 원산지 증명이나 검증을 대비한 능력배양사업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과 같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무역협회, 각 협회 및 단체 등 다양한 부처 및 기관에서 FTA 활용과 관련한 능력배양사업으로 원산지 증명이나 검증에 대한 교육과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에 대비한 능력배양도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지만 향후 정부나 기관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FTA 체결국의 시장 상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체결국 구매자와 국내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역외가공지역 조항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FTA 활용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까지 체결된 FTA 중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협정은 한·싱가포르 FTA를 비롯해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등이 있으며 한·EU FTA와 한·미 FTA에서는 협정 발효 이후 개

성공단 문제를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FTA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 허용은 우리나라 최초의 FTA였던 한·칠레 FTA를 제외한 FTA에서 주요 협상의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에서 많은 기회비용을 지급하였다. 협정별로 100~200개 품목을 지정하여 개성공단에서 역외가공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가공된 생산제품이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⁷⁰⁾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문제는 단순히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경제적 이득이 가능한 분야로 여겨지지만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 합의함으로써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역외가공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요구된다. 실제로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나라 협상단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협상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만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비용을 치르고 획득한 개성공단이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역외가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지니는 정치·외교적, 그리고 국내적인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역외가공문제를 포기하기보다는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개성공단의 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고려하여 역외가공 인정품목을 소수의 품목이라도 실질적으로 생산되거나 생산이 예상되는 품목을 포함시키고,

70) 『중앙일보』 2014년 8월 25일자 보도.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역외가공 생산품목의 수출가능성이 낮은 상대국과의 FTA에서는 과감하게 개성공단 역외가공조항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 개성공단 역외가공조항을 활용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활용의지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4. 산업별 맞춤형 정책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볼 때 앞으로도 각 산업이 FTA의 혜택을 균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을 포함한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상대국의 철저한 협정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한·칠레 FTA에서는 이미 대부분 품목의 협정관세율이 0%이고, 한·EU FTA와 한·미 FTA의 경우 상대국의 자유화 수준이 높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한·ASEAN FTA와 한·인도 FTA에서는 상대국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길고, 특히 ASEAN의 경우 관세 양허일정이 회원국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발효 FTA에서 장기 관세철폐품목, 민감품목, 양허제외로 분류된 상대국 품목 중 우리 제품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자유화 수준이 높더라도 FTA 상대국들이 여타 국가와의 FTA를 다수 발효하게 되면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선점효과는 사라지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해외진출기업들은 교역품목을 다변화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국 시장수요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양허제외된 품목 외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FTA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원자재 및 중간재 생산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과의 FTA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협상 진행 중인 FTA(한·중 FTA 등)에서도 우리 정부는 각 품목에 대하여 우리 제품과 경쟁관계인지 또는 원자재나 중간재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세계 전체 수입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와의 같은 원자재, 기계 및 전자부품과 같은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비록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FTA가 체결된다면 더욱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EFTA 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원유 공급경로를 좀 더 다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원자재 및

중간재 생산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FTA 발효를 전후로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입품목의 다양성과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수출입품목 수가 늘어난 반면 수출 집중도는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FTA 추진으로 상대국으로부터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는 동시에 새로이 수입되는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 것이다. 이는 국내 수입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힘으로써 가격인하와 후생을 높였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FTA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수입품목 다양화라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식량안보와 같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춰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그동안 대내협상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소비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시사점은 수출품목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중도가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품목에서의 수출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FTA를 통한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FTA를 통해 수출시장에 신규진입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특정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 세계 경쟁환경은 날로 변화하고 있으며, FTA가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수입시장개방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시장을 목표로 영업을 영위하던 기업들도 전보다 치열해진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효 중인 FTA 가운데 터키와의 FTA를 제외한 8개 FTA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상품협정에 비해 서비스협정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이나 홍보 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FTA 서비스협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 협정의 주요 내용 및 업데이트 사항을 해당 서비스 부문에 신속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FTA를 통해 서비스 시장의 개방범위가 확대되면 서비스 부문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당 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상품의 생산성 또는 부가가치도 함께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즉 최종재 생산에 이르기까지 중간 단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비스 분야는 부가가치 교역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더욱 활발한 서비스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 FTA가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단계와 경로를 거쳐 나타나게 되므로 정부는 좀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5. 산업계와의 연계성

우리 정부는 2013년 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그 필요성으로 업계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꼽았다. 정부부처와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FTA 정책의 성패를 가름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통상기능의 이관이 가져온 순기능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현재 제조업, 농수산식품, 중견·중소기업, 의약품·복지, 서비스 등 28개 업종별 분과로 구성된 「통상산업포럼」을 연 2회 개최하고 상시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소통형 FTA 추진이 보다 확실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협상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중요한 FTA 협상을 추진해나가는 경우 정부부처 역시 여유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소통의 대상이 되는 업계 역시 단기간에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협상 진행상황이 전략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외비로 취급되는 상황 속에서는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상전략 보완유지는 상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체결된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정부가 관심과 자원을 쏟는 만큼 효과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도 그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입장에서 산업계에 소통의 통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다. 근원적 배경에는 FTA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협상을 시작하기 전 그 타당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상산업포럼을 활용하되, 협상 전 단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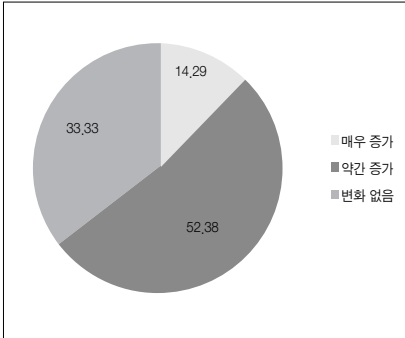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상품양허협상에 국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투자나 규범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소통의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협상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교환이 주로 협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협회가 존재하지 않는 업종이나 담당협회가 없는 품목의 경우 협상 대응전략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협상대상분야와 협회 및 전문가집단을 매칭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MTI 코드와 상품양허에 사용되는 HS 코드상 산업분류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업부 내 소관부처와 협회 간의 매칭이 완벽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기술 및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산업과 기술의 부침에 부합하는 글로벌 표준산업 분류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의 경우 분야가 다양한 만큼 소관부처도 다수라는 점에서 서비스 영역에서의 효율적 협상전략 수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전반적으로 FTA 성과가 긍정적임에도 여전히 기업 차원에서는 FTA 활용과정에 겪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을 위한 인력확보 및 내부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FTA 활용의 측면에서도 기업규모별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SEAN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이 늘었다고 답변했는데 실제 FTA 활용에 대해서는 약 25%의 기업만이 긍정적이었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50%에 육박하였다.

그림 4-1.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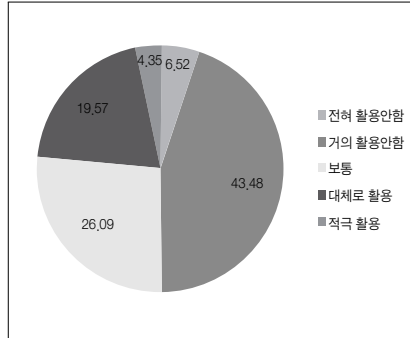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 FTA 활용 정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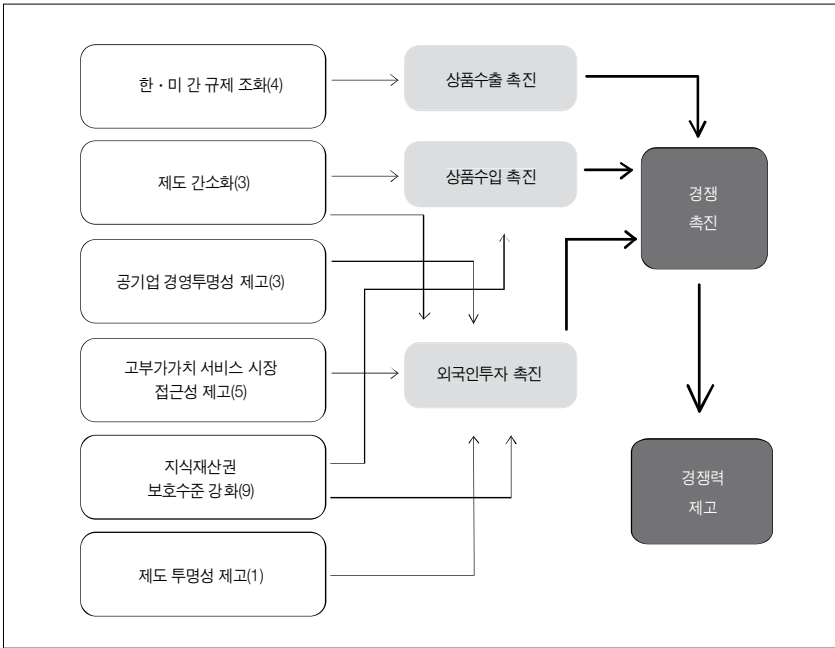
FTA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협정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FTA별로 협정관세율이나 원산지규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정보제공보다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정보를 제공할 때는 활용하는 기업의 필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외의 활용사례나 상대국 정보를 제공함에서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전히 높은 협정세율이나 한국과 상대국 사이의 상이한 해석, 수입통관절차 및 복잡한 행정요구사항 등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 지적되었다. 이제 FTA가 우리 통상정책의 기준이 된 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FTA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협상 중인 FTA에 대한 관심만큼 이행상황에 있는 FTA의 이행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행 모니터링

개정 법률을 통해 FTA와 제도 선진화의 관계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 개정이 곧 선진화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을 제도 선진화로 간주하는 데에는 각 유형별 개정 법률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로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한·미 간 규제 조화’를 추구하는 4건의 개정 법률은 국내제품의 상품수출 및 미국산 제품의 수입촉진으로 이어진다. ‘제도 간소화’를 위한 3건의 법률은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수입을 촉진한다. 이와 더불어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3건의 법률,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5건의 법률,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9건, 그리고 ‘제도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고시법 개정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유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하여 상품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촉진되면 이는 국내시장의 경쟁촉진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정부가 그리는 제도 선진화의 바람직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바람직한 시나리오대로 제도 변화는 제도 선진화로 귀결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6개의 유형이 그대로 ‘상품수출 촉진’, ‘상품수입 촉진’, 그리고 ‘외국인투자 촉진’이라는 1단계에서의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더 나아가 1단계에서 2단계라 할 수 있는 ‘경쟁촉진’으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쟁력 제고’로 이어

그림 4-3. 한·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의 유형별 제도 선진화 경로



주: 왼쪽 유형화한 난의 () 안 숫자는 해당 법률 개수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제기될 만한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개정이 완료된 23개 법률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 EU 기업을 위시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하여 무역과 외국인투자가 촉진되고 그에 따라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어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이 바로 국내 경제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외국기업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제도 선진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국내법 개정 → 상품교역 및 외국인투자 촉진 → 경쟁촉진 →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써, 이 중 어느 하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된다는 점을 내포한다. 가령 국내법을 개정했어도 이것이 개방을 촉진할 만큼 충분치 못하거나, 개방은 되었으나 국내기업과의 경쟁촉진이 아닌 국내기업의 도태로 이어진다면 그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담뱃값 인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이후에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제도 선진화는 요원해진다. 따라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국내법 개정 이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이와 같은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할 경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여 궁극적인 정책목표 추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각 유형마다 각기 다른 성격의 쟁점과 현안이 존재하고 있어 여기에서 제기될 만한 우려사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진다. 현재 이행법률에 대한 모니터링의 총괄은 산업부에서 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주무부처는 상이해 이를 산업부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상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특허청은 가장 개정이 많은 분야인 지식재산권 관련 개정 법률 중 5건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이행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인력은 두고 있지 않다.

개방은 개혁의 촉매제일 뿐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 제도 선진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걸림돌도 작용하기 마련이다. 한·미 FTA 추진 이전에 작성된 ‘로드맵’에서 우리 정부는 ‘부가가치 산업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체질 고도화로 국내의 시장에

서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강화로 FTA 및 DDA 협상 이후 예상되는 법률, 교육, 의료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대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FTA의 투자효과 극대화'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미 FTA 타결의 의의로 중시한 것이 경제사회시스템의 선진화였다. 그러나 실제 협상 당시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은 한·미 FTA 당시 애초 기대만큼 서비스 산업이 개방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관련 업계 및 소관 부처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정부가 애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설령 정부가 애초 목표를 달성하는 충분한 개방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한국경제의 현안을 반영하고 그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 선진화인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분배구조 악화가 날로 심각해져 급기야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다양한 유도정책을 내놓을 정도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가 심각해 내수침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춰볼 때 지금까지의 한·미 FTA 법률 개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국내 생산 및 고용 증대로 이어지도록 상호작용에 노력해야 한다. 전문직 서비스업의 개방이 예정대로 모두 완료되더라도 이것이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여타 서비스 업종 및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국내 법 개정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산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뿌리 깊은 '갑을관계' 해소에 개방이 기여하려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 간에도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시대에 상응하는 국내대책의 선진화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은 포괄적 법제뿐 아니라 제약산업에서의 제네릭 제약사 도태 예방 등 특정 산업에 고유한 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와 범주에서의 정책설계를 요한다.

남북경제통합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FTA 활용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비단 원산지규정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 공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서비스, 투자, 경쟁, 노동, 환경 등 곳곳에서 문제될 소지가 작지 않다. 이를 남북 간 별도의 경제협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아직 그럴 만한 여건이 아니므로 가능한 선에서 이에 대한 점진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국제경제학적 기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서 한국이 진정한 린치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개방과정에서 선진국 제도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소화한 ‘한국적 선진제도’를 우리와 유사한 발전 경로를 보이는 아시아 주변국에 수출하고 이 나라들의 국내제도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PP 협상이 쉽사리 타결되지 못하는 이면에는 국유기업 개혁, 지식재산권, 투자 등에서 자국에 유리한 법 제도를 개도국에 강요하는 미국의 태도가 적잖게 자리하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한국은 역내국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통상거버넌스의 정착에 노력하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한·미 FTA에 따른 국내법령의 개정은 우리에게 FTA에 근거한 새로운 규범과 기준이 무역 관련 규범뿐 아니라 경제시스템 전반을 규율하는 명실상부한 법적 기반(legal infrastructure)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이 제도 선진화로 이어지려면 [그림 4-3]에서 본 것과 같이 1단계에서 2단계 나아가 3단계로 나아가는 각 과정이 원활히 진전되고 있는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있다면 우리의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개방과 법 개정이 되도록 상시 살피는 관리된 개방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유덕 · 김준엽. 2013. 「한 · 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EU 무역 · 투자 동향 분석 및 향후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3-1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고가영. 2014. 「글로벌 제약기업의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와 경쟁정책 동향」. 『보건산업 브리프』, Vol. 1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4. 21)
- 관세부처 합동. 2006. 「한 · 미 FTA Q&As- 최근 비판론을 중심으로」. 재경부.
- 관세무역개발원 통계자료. 「기업구분별 수출 통계」.
- 국정브리핑. 2006. 「한 · 미 FTA 이익 극대화 위해 각 부문 제도 개선」. (2006. 6. 20)
- 국회입법조사처. 2012a. 「한 · 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I」.
- _____. 2012b. 「한 · 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II」.
- _____. 2014. 「동의를결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2014. 7. 28)
- 김미아. 2008. 「한 · 칠레 FTA가 제조업수출에 미친 효과」. 『국제통상연구』, 13권 2호, pp. 47-63.
- 김봉철 · 허동원 · 최요섭 · 강남기 · 김현수 · 이승엽 · 김선미. 2012. 「FTA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선진화 · 정비 방안 연구」. 법제처연구용 역보고서.
- 김양희. 2013. 「한국의 TPP 참여의 정치경제 및 전략적 함의」. 『TPP 통상산업포럼』. 발표자료 (2013. 9. 3)
- 김양희 · 정준호. 2006.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동향과 전망』, 여름호(67).
- 김영귀. 2014a. 「지역경제통합 논의 동향과 전망」. 2014 농업대회 발표자료.
- _____. 2014b.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한중 FTA」. 3중전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 _____. 2014c. 「FTA 전략이해와 올바른 정책방향」. G-Economy21.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2013. 「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3-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영귀 · 이효영 · 강준구 · 김혁황. 2014. 「한 · 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오늘의 세계경제』, Vol. 14, No. 1. (3. 24)
- 김종덕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2013.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13-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한성. 2009.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외교통상부.
- 김현중. 2011. 『김현중, 한미 FTA를 말하다』. 홍성사.
- 김형주. 2014. 「한국의 FTA 10년 교역 늘고 투자효과는 아직 불확실」. Business
Insight. LG 경제연구원.
- 남희섭. 2012.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교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6권 3호. (2012. 5)
- _____. 2014. 「토론문 -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제도」. (2014. 5. 9)
- 노무현. 2009. 『진보의 미래』. 동녘.
- 명진호 · 문병기 · 조성대. 2013. 「한 · 미 FTA 1주년 평가: FTA 혜택별 수출효과와
경쟁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 명진호 · 정혜선 · 제현정. 2014.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국의 FTA 10년: 한국의 FTA
10년 성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문종철. 2011. 「FTA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칠 효과에 대한
분석」. 산업연구원.
- 문한필 · 정호연 · 김수지 · 김영준. 2014. 「한 ·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협회. 2011. 『한 · 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 민혁기 · 김도훈 · 김수동 · 정근주 · 정재화. 2011. 「한 · 칠레 FTA의 무역효과 분석
과 시사점: 무역전환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박순찬. 2012. 「동아시아 국가의 서비스 무역장벽과 서비스 개방의 경제적 효과 분석」.
『EU학 연구』, 17권 1호, pp. 1-19.

- 박천일. 2014. 「한국 FTA 10년의 경제적 효과」. 한국의 FTA 10주년 기념 콘퍼런스 발표자료.
- 법제처. 2012. 「법령 입안·심사 기준」.
- 배찬권·김정곤·금혜윤·장용준. 2012.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효과 분석』. 연 구보고서 12-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배찬권 외. 2014. 「한·칠레 FTA 이행상황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수탁연구 보고서 (대외비).
- 변양균. 2013.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바다출판사.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 「미 무역대표부, 2013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4. 2)
- 송송이. 2011.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약사법 개정(안) 설명」. (5. 9)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03.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로드맵」. (2003. 9)
- 이규복. 2009. 「대 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와 경제성장: 기업간 협상력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 재정기획부. 2007. 「권오규 경제부총리, 전경련 하계포럼 강연」. 보도자료 (7. 24)
- 정민정. 2011. 「한·미 FTA 이행법령 정비 현황」. 『이슈와 논점』, 334호 국회입법 조사처. (11. 30)
- 정인교. 2009.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국제지역 연구』, 제13권 제3호, 통권 50호
- _____. 2013. 「한·미 FTA 이행 1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 정인교·조정란·권경덕·김도훈·오동윤. 2010. 「FTA 활용활성화 방안 연구」.
- 제현정·명진호·김미경·정혜신. 2014. 「한·미 FTA, 이제 시작이다: 한·미 FTA 발효 후 2년의 성과와 향후 대미수출 유망품목」.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최낙균·강문성·김홍중·박복영·지만수·이경희·김정곤. 2005.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낙균·이경희·김정곤. 2009.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

- 책 방향』. 연구보고서 09-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재천의원실. 2014. 「23개라던 한·미 FTA 이행법률, 29개로 밝혀져」. 보도자료.
(3. 30)
- 한국수출입은행. 2014. 「2013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
조사실 해외투자분석팀.
-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2007. 「한·미
FTA 협정문 분석 종합 보고서」. (6. 20)
- 황선웅·신우용. 2012. 「우리나라 제조산업내 기업규모에 따른 소득양극화 및 불균
형에 관한 연구」. 『금융공학연구』, 제11권 제2호.

[영문자료]

- Anderson, J. 1979.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Gravity Mode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9(1), pp. 106-116.
- Baier, S. L. and J. H. Bergstrand. 2007. "Do free trade agreements actually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71(1), pp. 72-95.
- Baier, S.L., J. H. Bergstrand and P. Egger. 2006. "The New Regionalism: Causes and consequence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nd CEPPI conference. (February)
- Baier, S. L. and J. H. Bergstrand. 2002. "On the Endogeneity of International Trade Flows and Free Trade Areas." Draft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meeting. Atlanta. (January)
- _____. 2004. "Economic Determinants of Free Trade Agre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64, Issue 1. pp. 29-63.
- Carr, David L., James R. Markusen and Keith E. Maskus. 2001. "Estimating the Knowledge-Capital Model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s*, Vol. 91, No. 3, pp. 693-708.

- Egger, P. and M. Pfaffermayr. 2004. "The Impact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2(4), pp. 788-804.
- Escaith, H. and H. Gaudin. 2014. "Clustering Value-Added Trade: Structural and Policy Dimensions."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Staff Working Paper. ERSD-2014-08.
- Hirota Miura. 2011. "SGL: Stata graph library for network analysis." Stata Conference Presentation File.
- Horn, Mavroidis, P. C. and Sapir, A. 2010. "Beyond the WTO? an anatomy of EU and U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The World Economy*, 33(11), 1565-1588
- J. M. C. Santos Silva and Silvana Tenreyro. 2006. "The Log of Gra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8(4), pp. 641-658. MIT Press. (November)
- Jang, Y. 2011. "The Impact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n Bilateral Foreign Direct Investment among Developed Countries." *The World Economy*, 34(9). pp. 1628-1651.
- Leshner, M and S. Miroudot. 2006.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Investment Provis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s. No. 36.
- Lopez-Gonzalez, J. 2012. "The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Vertical Specialisation." NCCR Working Paper 2012/36.
- Lopez-Gonzalez, J. and P. Holmes. 2011. "The Nature and Evolution of Vertical Specialisation: What is the Role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NCCR Working Paper 2011/41.
- Magee, C. 2003. "Endogenou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 Empirical Analysis."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Vol. 2, Issue 3,

Article 15.

- Neiman, B. 2010. "Accounting for Intermediates: Production Sharing and Trade in Value Added, by Robert Johnson and Guillermo Noguera." NBER ITI Program Meeting. Boston. MA.
- Schiff, Maurice and L. Alan Winters. 2003. *Region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World Bank.
- Thangavelu, S. M. and C. Findlay. 2011. "The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Findlay. C. ed. *ASEAN+1 FTA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ERIA Research Project Report 2010-29. Jakarta: ERIA. pp. 112-131.
- Tinbergen, J. 1962. "Shaping the World Economy: Suggestions for a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 WTO. 2008. *World Trade Report 2008: Trade in a Globalizing World*. Geneva. _____ . 2011. *World Trade Report 2011*.

[인터넷 자료]

- 『뉴스웨이』. 2014. 4. 1. 「<포커스> 한·미 FTA 발효 1년.. 국내 PP 현주소는?」.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4033112283796857&md=20140401072542_AO(검색일: 2014. 6. 17).
- 『뉴스핌』. 2013. 7. 4. 「정부 국회, 유사보험업 규제 안하나 못하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704000272>(검색일: 2014. 6. 16).
- 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 판례] 특허권 행사 명목 의약품 제조담합사건(2012두24498).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20&searchWord=&searchOption=&seqnum=4449&gubun=4>(검색일: 2014. 6. 17).
- 『대한변협신문』. 2014. 9. 1. 「국제 경쟁력 갖춰 세계화된 법률 서비스 시장 이끌어 나가야」.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2>(검색일:

2014. 6. 16).

『디지털타임스』. 2014. 4. 16. 「방송콘텐츠시장 완전개방 초읽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41702010931746002(검색일: 2014. 6. 17).

『매일경제』. 2014. 2. 27. 「3월의 공정인, 네이버·다음에 동의의결제를 최초로 적용한 담당자 선정」.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61751>(검색일: 2014. 6. 13).

『머니투데이』. 2014. 7. 2. 「법률시장 개방 2년, 한국로펌 vs 외국로펌 성적표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0215484516051&outlink=1>(검색일: 2014. 6. 16).

법제처. 생활법령정보-한·미 FTA-한·미 FTA 관련 법제.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0&ccfNo=1&cciNo=2&cnpClsNo=1>(검색일: 2014. 6. 13).

『법률신문』. 2014. 4. 15. 「‘법률시장 완전개방 긴급진단(3)’ 3중고 빠진 국내로펌 <끝>」.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3431> (검색일: 2014. 6. 16).

_____. 2014. 4. 8. 「‘법률시장 완전개방’ 긴급진단 (1) 외국로펌 연합체 뜯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3429>(검색일: 2014. 6. 16).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psum/>(검색일: 2014. 6. 10).

_____.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검색일: 2014. 8. 25, 8. 28).

_____. 한·미 FTA 코너. <http://www.fta.go.kr/us/info/1/>(검색일: 2014. 6. 10).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아시아개발은행, <http://aric.adb.org/fta>(검색일: 2014. 4. 1).

『약업신문』. 2013. 「GSK-동아 역시불합의, 공정 가이드 제정 결정타」. (2013. 1. 10)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pmode=&cat=12&cat2=53&cat3=&mid=159687&num_start=4592(검색일: 2014. 6. 17).

『연합뉴스』. 2013. 11. 29. 「“네이버 첫 적용” 동의의결제 활성화될까」 <http://news.n>

- 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6623020(검색일: 2014. 6. 13).
- 『의약뉴스』. 2014. 8. 5. 「허가-특허 연계 앞두고 특허소송 ‘급증’」.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78>(검색일: 2014. 6. 17).
- 『이데일리』. 2014. 3. 12. 「방송 한·미 FTA 발효 D-1년, 외산 프로 쓰나미 몰려오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1095526606022664&DCD=A00503&OutLnkChk=Y>(검색일: 2014. 6. 17).
- 『중앙일보』. 2014. 8. 25. 「FTA혜택 받으며 미국EU 수출한 개성공단 제품 0」.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625800(검색일: 2014. 8. 24).
- 『한국금융신문』. 2013. 10. 6. 「<포커스> 잠자는 사자 ‘우체국보험’... 농협 버금가는 덩치」.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27200>(검색일: 2014. 6. 16).
- 『한국금융신문』. 2014. 8. 28. 「<포커스> 한·미 FTA 두 돌.... 유사보험 감독일원화 ‘첫단추’」.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33244>(검색일: 2014. 6. 16).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type=04>(검색일: 2014. 8. 25, 8. 26, 8. 27).
- 한국신용평가정보(KIS: Korea Information Service). <http://www.kisvalue.com/web/index.jsp>(검색일: 2014. 5. 1).
- 한·EU FTA. <http://www.fta.go.kr/eu/info/1/>(검색일: 2014. 6. 17).
- 『헤럴드경제』. 2006. 4. 13. 「한 부총리, “FTA의 궁극적 지향점은 한미 FTA”」.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2&aid=0000036435>(검색일: 2014. 6. 11).
- CEPII Databases. http://www.cepii.fr/CEPII/en/bdd_modele/bdd.asp(검색일: 2014. 5. 20).
- FTA 강국. KOREA. <http://ftahub.go.kr/main/situation/kfta/ov/>(검색일: 2014. 11. 20).
- GTAP Database Version 7.1, Purdue University GTAP Center (<https://www.gtap.ag-econ.purdue.edu/databases/default.asp>) 방문일자: 2014년 5월 12일

KITA 무역 통계. 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lang_gbn=null&statid=kts(검색일: 2014. 4. 2).

OECD Statistics on Trade in Value Added(TiVA). http://stats.oecd.org/BrandedView.aspx?oecd_bv_id=data-00648-en&doi=data-00648-en(검색일: 2014. 6. 17).

OIS 해외투자 진출 정보포털.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562&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pds&p_deps2=(검색일: 2014. 8. 28).

관계부처 합동. http://www.fta.go.kr/fta_korea/greeting_usa.php(검색일: 2014. 6. 13).

UN COMTRADE.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4. 5. 20, 8. 28).

UN Service Trade Database. <https://unstats.un.org/unsd/servicetrade/default.aspx>.
(검색일: 2014. 5. 29).

UNCTAD TRAINS. <http://wits.worldbank.org/wits>(검색일: 2014. 5. 26).

World Bank Indicators Database.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검색일: 2014. 5. 20).

WTO 지역무역협정정보시스템. (검색일: 2014. 5. 21).

WTO 지역무역협정통계.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검색일: 2014. 6. 4).

WTO RTA-IS.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검색일: 2014. 5. 21).

[법률 및 협정문]

「개별 소비세법」

「공인회계사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방송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상표법」

「세무사법」

「실용신안법」

「약사법」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편법」

「외국법자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지방세법」

「특허법」

「행정절차법」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한글본」

한·EU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한글본」

부 록

- 부록 1. 기업유형별 · 국가별 대ASEAN 수출
- 부록 2. 국가별 ·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EFTA, ASEAN 및 EU
- 부록 3. 국가별 · 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EFTA, ASEAN 및 EU
- 부록 4.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EFTA 및
ASEAN 회원국별
- 부록 5.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주력 수출산업별
한 · 중 · 일 시장점유율 추이
- 부록 6. 지역경제통합과 주요국의 중심성 변화
- 부록 7. FTA별 경제성장 및 후생 효과
- 부록 8. 한 · 미 FTA 관련 국내 이행법률 현황
및 추진상황(2014년 4월 15일 기준)



부록 1. 기업유형별 · 국가별 대ASEAN 수출

부표 1-1. 한·ASEAN 기업유형별 수출실적(2007~13년): 국가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단위: 백만 달러)
리오스	55.7	53.2	55.8	112.3	154.5	165.0	187.0	26.6	
기타	.5	.6	.2	.2	1.0	1.3	5.5	114.6	
대기업	12.8	10.1	16.0	26.6	68.9	116.4	144.3	59.3	
중견기업	3.4	2.0	2.1	6.6	4.7	16.7	19.3	69.6	
중소기업	39.0	40.4	37.5	78.8	79.9	30.7	17.9	0.8	
미얀마	292.0	243.8	406.2	478.8	666.7	1,330.9	705.1	26.6	
기타	.1	3.5	.7	.7	2.4	1.4	36.4	944.6	
대기업	158.3	23.0	156.7	185.2	259.3	954.0	213.8	124.1	
중견기업	49.9	113.4	112.0	118.8	151.5	82.4	107.3	24.0	
중소기업	83.6	103.9	136.7	174.2	253.5	293.2	347.7	27.2	
베트남	5,760.1	7,804.8	7,149.5	9,652.1	13,464.9	15,946.0	21,087.6	25.4	
기타	15.5	11.6	8.9	9.2	287.7	11.0	516.2	1,244.9	
대기업	1,791.3	2,922.4	2,498.3	4,253.6	6,327.4	7,750.8	9,482.8	35.4	
중견기업	1,158.1	1,369.2	957.1	988.6	1,891.0	3,174.5	4,897.4	34.1	
중소기업	2,795.2	3,501.6	3,685.2	4,400.6	4,968.9	5,009.7	6,191.1	14.5	

부록 1. 기업유형별 · 국가별 대ASEAN 수출

부 표 1-1. 한 · ASEAN 기업 유형별 수출실적(2007~13년) : 국가별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라오스	55.7	53.2	55.8	112.3	154.5	165.0	187.0	26.6	
기타	.5	.6	.2	.2	1.0	1.3	5.5	114.6	
대기업	12.8	10.1	16.0	26.6	68.9	116.4	144.3	59.3	
중견기업	3.4	2.0	2.1	6.6	4.7	16.7	19.3	69.6	
중소기업	39.0	40.4	37.5	78.8	79.9	30.7	17.9	0.8	
미얀마	292.0	243.8	406.2	478.8	666.7	1,330.9	705.1	26.6	
기타	.1	3.5	.7	.7	2.4	1.4	36.4	944.6	
대기업	158.3	23.0	156.7	185.2	259.3	954.0	213.8	124.1	
중견기업	49.9	113.4	112.0	118.8	151.5	82.4	107.3	24.0	
중소기업	83.6	103.9	136.7	174.2	253.5	293.2	347.7	27.2	
베트남	5,760.1	7,804.8	7,149.5	9,662.1	13,464.9	15,946.0	21,087.6	25.4	
기타	15.5	11.6	8.9	9.2	287.7	11.0	516.2	1,244.9	
대기업	1,791.3	2,922.4	2,496.3	4,253.6	6,327.4	7,750.8	9,482.8	35.4	
중견기업	1,158.1	1,369.2	957.1	988.6	1,891.0	3,174.5	4,897.4	34.1	
중소기업	2,795.2	3,501.6	3,685.2	4,400.6	4,968.9	5,009.7	6,191.1	14.5	

부표 1-1. 계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중소기업	1,400.8	1,670.3	1,200.1	1,370.0	1,640.0	1,596.8	1,507.9	2.8
인도네시아	5,770.6	7,933.6	5,999.9	8,897.3	13,564.5	13,955.0	11,568.2	16.6
기타	35.8	29.2	18.8	29.8	210.6	18.5	510.9	530.3
대기업	2,956.4	4,677.6	3,115.7	5,420.3	4,426.0	9,446.6	6,368.1	26.9
중견기업	887.1	952.8	814.3	931.8	5,738.4	1,589.9	1,794.7	77.3
중소기업	1,891.3	2,274.1	2,051.1	2,515.4	3,189.6	2,900.1	2,894.5	8.4
태국	4,488.4	5,779.1	4,528.2	6,459.8	8,459.0	8,221.1	8,071.7	12.7
기타	29.7	35.5	23.2	36.4	92.5	12.6	110.5	147.4
대기업	2,066.3	2,738.4	2,160.0	3,600.9	4,822.4	4,164.5	4,114.1	16.2
중견기업	964.8	1,136.7	937.9	815.4	1,008.7	1,605.3	1,548.0	11.1
중소기업	1,427.6	1,868.5	1,407.1	2,007.1	2,535.4	2,438.6	2,299.1	10.9
필리핀	4,420.3	5,016.3	4,567.3	5,838.0	7,338.9	8,210.7	8,783.4	12.8
기타	24.9	13.0	10.4	9.1	66.2	5.8	344.3	1,051.3
대기업	1,567.6	2,063.3	2,004.1	2,377.0	4,005.4	5,119.4	5,459.3	25.1
중견기업	1,675.9	1,638.6	1,449.9	2,097.5	1,707.5	1,517.6	1,296.6	-2.2
중소기업	1,151.9	1,301.4	1,102.9	1,354.4	1,559.8	1,567.9	1,683.2	7.3

부표 1-1. 계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캄보디아	281.4	294.4	273.3	333.0	450.8	593.3	614.6	15.0
기타	2.6	3.8	1.7	5.9	61.6	9.8	48.0	248.9
대기업	16.4	14.1	14.0	20.6	35.3	38.7	36.6	18.0
중견기업	20.1	18.6	13.3	6.6	23.2	135.1	158.8	110.7
중소기업	242.3	257.9	244.4	300.0	330.7	409.6	371.2	8.1
말레이시아	5,704.2	5,794.5	4,324.8	6,114.8	6,275.1	7,723.5	8,587.8	9.1
기타	6.4	4.1	3.2	4.0	78.0	1.4	133.8	1,839.7
대기업	2,870.7	2,669.0	2,176.9	3,335.0	3,254.7	5,118.6	5,712.7	15.7
중견기업	1,846.8	1,932.1	1,287.9	1,609.0	1,517.4	1,172.7	1,226.3	-4.6
중소기업	980.3	1,189.4	856.8	1,166.8	1,425.0	1,430.8	1,514.9	9.7
브루나이	26.6	70.2	57.3	65.1	588.0	111.7	102.4	145.5
기타	.0	.0	.1	.0	.4	.0	.7	2,306.7
대기업	19.9	26.5	37.8	53.3	566.2	89.4	78.1	163.7
중견기업	3.0	15.0	5.6	5.4	2.3	6.0	14.4	97.7
중소기업	3.8	28.7	13.8	6.4	19.1	16.3	9.1	116.0
싱가포르	11,949.5	16,293.0	13,617.0	15,244.2	20,839.0	22,887.9	22,289.0	12.6
기타	15.5	10.8	13.7	36.3	78.3	4.2	478.5	1,912.6
대기업	6,044.3	9,387.3	6,429.5	7,779.6	11,103.1	16,878.4	15,907.6	22.3
중견기업	4,488.9	5,224.5	5,973.6	6,058.3	8,017.5	4,408.5	4,395.0	3.2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부록 2. 국가별 ·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EFTA, ASEAN 및 EU

부표 2-1. EFTA 국가별 ·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단위: 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노르웨이							
기타	16	22	24	21	31	29	183
대기업	111	136	150	222	156	142	155
중견기업	90	78	87	69	60	109	113
중소기업	637	635	676	690	742	720	738
리히텐슈타인							
기타							3
대기업			1	1			1
중견기업	3	3	1	8	10	19	20
중소기업	37	41	38	25	44	29	25
스위스							
기타	27	55	40	36	43	35	201
대기업	126	169	167	168	209	214	238
중견기업	193	152	209	206	275	270	301
중소기업	981	968	973	1049	1094	1093	1162
아이슬란드							
기타	1	2	2	2	2		16
대기업	17	32	32	27	22	29	23
중견기업	10	14	20	20	14	16	19
중소기업	158	142	93	134	146	153	163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부표 2-2. ASEAN 국가별 ·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단위: 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라오스							
기타	28	34	25	20	28	27	126
대기업	23	21	30	29	49	91	126
중견기업	10	19	35	69	27	45	40
중소기업	112	153	206	272	272	254	293
말레이시아							
기타	100	135	95	97	276	54	1,047
대기업	665	690	681	771	920	1,088	1,184
중견기업	761	815	844	868	868	1,242	1,354
중소기업	2,680	2,783	2,911	3,038	3,109	3,189	3,220
미얀마							
기타	22	26	17	15	42	32	413
대기업	46	70	106	221	275	300	391
중견기업	155	136	176	158	167	225	279
중소기업	568	564	621	696	851	967	1,102
베트남							
기타	212	164	157	139	598	123	2,080
대기업	982	1,187	1,323	1,454	1,519	1,540	1,624
중견기업	876	1,177	1,481	1,491	1,475	2,044	2,186
중소기업	3,902	4,115	4,321	4,470	4,517	4,542	4,532
브루나이							
기타	1	3	5	1	27	1	86
대기업	22	30	28	29	52	59	68
중견기업	31	38	55	41	34	93	66
중소기업	109	148	163	190	275	308	299
싱가포르							
기타	198	199	201	198	281	89	1,096
대기업	786	926	954	1,029	997	1,263	1,210
중견기업	951	977	1,100	1,038	1,076	1,444	1,503
중소기업	2,939	3,035	3,180	3,303	3,382	3,404	3,388

부 표 2-2. 계 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도네시아							
기타	108	137	90	98	357	64	1,162
대기업	635	755	870	894	961	1,226	1,326
중견기업	933	966	904	871	872	1,486	1,569
중소기업	3,232	3,290	3,354	3,490	3,580	3,685	3,594
캄보디아							
기타	66	78	70	64	123	87	382
대기업	64	70	74	100	117	144	197
중견기업	90	147	114	113	96	256	262
중소기업	763	922	884	1,003	1,022	1,056	1,116
태국							
기타	178	168	172	168	321	117	1,184
대기업	806	885	890	968	1,106	1,140	1,225
중견기업	756	915	896	850	912	1,358	1,338
중소기업	2,950	3,072	3,157	3,404	3,474	3,655	3,575
필리핀							
기타	217	302	205	165	277	159	1,314
대기업	780	885	776	822	939	1,105	1,111
중견기업	620	666	590	919	723	1,043	1,012
중소기업	2,839	2,865	2,938	3,075	3,128	3,352	3,179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07~13) 구입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부표 2-3. EU 국가별 ·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단위: 개)

	2009	2010	2011	2012	2013
그리스					
기타	9	14	21	4	151
대기업	222	200	213	242	238
중견기업	159	92	105	114	111
중소기업	982	891	805	784	793
네덜란드					
기타	64	65	122	34	339
대기업	518	569	545	566	592
중견기업	488	548	673	870	845
중소기업	1,683	1,793	1,740	1,705	1,715
덴마크					
기타	14	7	13	14	146
대기업	159	137	143	166	154
중견기업	143	120	130	110	117
중소기업	791	832	850	814	809
독일					
기타	169	143	380	129	848
대기업	844	843	892	952	936
중견기업	761	796	789	1,139	1,172
중소기업	2,734	2,806	2,846	2,768	2,778
라트비아					
기타	5	5	10	4	85
대기업	86	91	113	122	98
중견기업	67	43	50	63	50
중소기업	365	435	435	533	541
루마니아					
기타	14	4	18	3	96
대기업	319	415	458	395	445
중견기업	129	103	111	176	219
중소기업	646	703	751	736	749

부표 2-3. 계속

	2009	2010	2011	2012	2013
룩셈부르크					
기타	1	1	4	1	21
대기업	13	18	19	14	14
중견기업	15	18	17	41	38
중소기업	114	118	131	117	138
리투아니아					
기타	3	3	16	1	80
대기업	69	79	90	112	114
중견기업	56	42	50	58	73
중소기업	458	532	644	646	645
몰타					
기타		2	5	8	38
대기업	44	40	50	51	49
중견기업	34	33	27	59	64
중소기업	217	229	219	231	189
벨기에					
기타	33	29	46	19	173
대기업	378	409	435	476	450
중견기업	226	184	233	301	293
중소기업	1,110	1,098	1,160	1,144	1,090
불가리아					
기타	9	6	14	3	70
대기업	79	99	101	117	151
중견기업	84	72	76	65	78
중소기업	469	490	555	583	595
스웨덴					
기타	20	22	52	19	214
대기업	226	248	259	273	280
중견기업	177	178	215	187	171
중소기업	909	953	995	1,033	979

부표 2-3. 계속

	2009	2010	2011	2012	2013
스페인					
기타	48	27	79	23	451
대기업	380	424	473	491	474
중견기업	314	251	276	382	384
중소기업	1,669	1,766	1,797	1,757	1,711
슬로바키아					
기타	13	3	26	2	213
대기업	215	282	364	341	396
중견기업	308	279	346	365	377
중소기업	804	808	914	921	912
슬로베니아					
기타	5	5	10	1	58
대기업	104	141	233	253	270
중견기업	92	74	87	85	62
중소기업	351	379	438	461	458
아일랜드					
기타	10	7	7	2	116
대기업	116	87	108	100	95
중견기업	97	71	95	128	210
중소기업	511	530	553	519	563
에스토니아					
기타	4	2	9	1	77
대기업	58	57	80	79	82
중견기업	62	34	30	55	45
중소기업	284	321	394	336	420
영국					
기타	130	125	363	117	696
대기업	653	662	660	742	803
중견기업	551	499	492	866	841
중소기업	2,187	2,257	2,254	2,281	2,261

부표 2-3. 계속

	2009	2010	2011	2012	2013
오스트리아					
기타	19	25	44	14	136
대기업	243	246	294	305	354
중견기업	174	181	182	205	210
중소기업	868	911	989	929	906
이탈리아					
기타	72	66	179	70	477
대기업	530	639	581	691	676
중견기업	583	498	481	759	742
중소기업	2,084	2,123	2,206	2,094	2,101
체코공화국					
기타	12	18	74	6	155
대기업	223	225	347	360	384
중견기업	224	220	262	346	372
중소기업	980	1,054	1,137	1,122	1,076
포르투갈					
기타	10	20	40	11	95
대기업	175	185	196	191	201
중견기업	155	101	89	129	153
중소기업	675	711	702	710	719
폴란드					
기타	16	21	65	9	255
대기업	394	443	461	528	505
중견기업	296	250	329	374	415
중소기업	1,289	1,345	1,453	1,434	1,489
프랑스					
기타	76	102	133	70	463
대기업	539	526	548	608	628
중견기업	516	495	525	727	744
중소기업	1,814	1,902	2,001	1,946	1,943

부표 2-3. 계속

	2009	2010	2011	2012	2013
핀란드					
기타	27	16	34	6	128
대기업	171	177	226	247	226
중견기업	171	129	134	185	147
중소기업	919	953	970	933	1,010
헝가리					
기타	17	14	38	13	118
대기업	223	295	315	298	321
중견기업	158	145	177	299	250
중소기업	747	803	863	823	800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부록 3. 국가별 · 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EFTA, ASEAN 및 EU

부표 3-1. EFTA 국가별 · 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단위: 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노르웨이							
기타	45	53	63	85	52	38	169
대기업	44	33	41	38	44	55	47
중견기업	53	50	58	43	44	59	57
중소기업	659	715	720	725	812	785	741
리히텐슈타인							
기타							3
대기업			1	1			1
중견기업	1	3	2	5	5	11	7
중소기업	29	24	19	20	30	24	24
스위스							
기타	61	69	58	57	57	40	201
대기업	64	66	67	68	71	83	80
중견기업	102	90	103	112	111	139	125
중소기업	1,150	1,175	1,268	1,332	1,360	1,357	1,282
아이슬란드							
기타	1	2	2	3	2		14
대기업	12	19	13	16	11	15	11
중견기업	5	9	14	14	5	12	14
중소기업	142	127	93	128	141	151	128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부표 3-2. ASEAN 국가별 · 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단위: 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라오스							
기타	12	8	12	20	20	19	83
대기업	10	11	12	14	18	22	28
중견기업	8	15	13	14	12	24	19
중소기업	168	187	285	324	361	300	157
말레이시아							
기타	339	378	291	275	373	249	1,143
대기업	218	197	202	208	230	266	262
중견기업	371	392	374	353	345	521	538
중소기업	4,760	5,084	5,256	5,680	6,148	6,261	5,886
미얀마							
기타	23	25	24	26	52	58	309
대기업	27	24	30	40	45	65	82
중견기업	39	34	45	49	59	75	96
중소기업	373	390	441	509	657	851	1,045
베트남							
기타	468	465	381	389	499	412	2,888
대기업	179	180	188	207	212	267	247
중견기업	281	310	354	308	310	510	540
중소기업	6,475	7,820	8,822	9,554	10,187	10,593	9,571
브루나이							
기타	1	3	4	2	8	4	50
대기업	13	16	16	15	25	25	20
중견기업	12	17	21	17	19	32	30
중소기업	92	113	135	127	184	208	195
싱가포르							
기타	543	590	513	494	588	450	1,567
대기업	246	228	220	248	232	289	277
중견기업	453	471	447	384	372	588	602
중소기업	6,214	6,579	6,865	7,319	7,839	7,874	7,032

부표 3-2. 계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도네시아							
기타	329	338	280	321	466	373	1,459
대기업	198	182	188	196	189	256	255
중견기업	305	312	307	284	276	473	508
중소기업	5,058	5,366	5,417	5,913	6,386	7,006	6,244
캄보디아							
기타	99	112	85	91	107	119	487
대기업	24	30	38	49	39	56	51
중견기업	33	49	43	46	48	71	81
중소기업	815	891	877	1,047	1,262	1,569	1,465
태국							
기타	303	324	247	250	358	291	1,342
대기업	227	204	195	232	217	270	271
중견기업	391	393	388	365	352	609	594
중소기업	5,746	6,139	6,402	6,991	7,522	7,950	7,310
필리핀							
기타	770	693	555	521	546	468	1,367
대기업	193	157	170	182	182	212	212
중견기업	295	303	282	260	245	418	393
중소기업	4,161	4,374	4,496	4,795	4,997	5,414	4,671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부표 3-3. EU 국가별 · 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단위: 개)

	2009	2010	2011	2012	2013
그리스					
기타	16	24	22	19	126
대기업	74	72	67	89	84
중견기업	84	67	72	83	75
중소기업	1,272	1,233	1,098	1,020	997
네덜란드					
기타	107	106	132	69	383
대기업	137	152	145	175	178
중견기업	203	183	182	252	258
중소기업	2,461	2,630	2,673	2,648	2,563
덴마크					
기타	28	19	19	26	129
대기업	56	54	59	78	74
중견기업	75	70	76	64	77
중소기업	1,014	1,035	1,101	1,038	1,012
독일					
기타	705	675	776	606	1,519
대기업	212	246	228	295	274
중견기업	408	373	366	527	517
중소기업	5,912	6,236	6,384	6,357	5,763
라트비아					
기타	10	7	9	5	59
대기업	28	30	33	37	30
중견기업	27	22	27	31	24
중소기업	312	381	439	466	466
루마니아					
기타	32	27	28	17	92
대기업	60	63	64	74	82
중견기업	59	54	65	82	88
중소기업	644	733	790	835	831

부표 3-3. 계속

	2009	2010	2011	2012	2013
룩셈부르크					
기타	1	2	5	1	30
대기업	9	11	10	8	8
중견기업	10	14	9	19	17
중소기업	97	94	108	99	117
리투아니아					
기타	3	3	8	1	63
대기업	34	34	40	55	57
중견기업	31	28	33	37	35
중소기업	425	519	626	668	647
몰타					
기타		2	5	3	25
대기업	25	26	32	30	31
중견기업	26	25	23	31	35
중소기업	193	213	209	201	203
벨기에					
기타	122	101	123	99	214
대기업	122	112	119	146	147
중견기업	138	110	112	153	142
중소기업	1,428	1,466	1,543	1,551	1,433
불가리아					
기타	14	7	16	7	57
대기업	33	38	39	52	53
중견기업	47	41	41	44	45
중소기업	485	519	560	571	600
스웨덴					
기타	44	29	58	50	215
대기업	76	77	82	97	94
중견기업	109	99	101	101	99
중소기업	1,163	1,202	1,255	1,235	1,145

부표 3-3. 계속

	2009	2010	2011	2012	2013
스페인					
기타	95	63	79	62	377
대기업	117	120	124	144	137
중견기업	170	154	153	227	214
중소기업	2,604	2,791	2,898	2,782	2,642
슬로바키아					
기타	48	52	55	46	138
대기업	49	67	66	65	68
중견기업	95	97	86	112	112
중소기업	660	723	758	703	691
슬로베니아					
기타	7	7	8	1	42
대기업	45	52	56	65	65
중견기업	42	36	42	46	44
중소기업	306	352	395	426	385
아일랜드					
기타	18	11	9	5	105
대기업	47	51	50	49	43
중견기업	71	56	57	57	64
중소기업	507	511	545	541	531
에스토니아					
기타	3	1	7	1	43
대기업	24	22	33	41	42
중견기업	24	21	18	26	26
중소기업	273	308	351	347	387
영국					
기타	368	334	373	375	973
대기업	162	160	172	220	205
중견기업	279	257	249	326	311
중소기업	4,084	4,320	4,368	4,467	4,061

부 표 3-3. 계속

	2009	2010	2011	2012	2013
오스트리아					
기타	44	46	63	36	147
대기업	73	67	76	88	89
중견기업	87	90	85	111	120
중소기업	955	1,037	1,053	992	939
이탈리아					
기타	107	110	179	107	468
대기업	161	145	158	202	188
중견기업	234	233	222	318	275
중소기업	3,632	3,810	3,884	3,817	3,506
체코공화국					
기타	37	61	80	56	158
대기업	70	63	72	87	73
중견기업	100	103	100	132	133
중소기업	1,064	1,179	1,278	1,268	1,188
포르투갈					
기타	10	15	22	16	85
대기업	61	69	69	78	74
중견기업	61	68	63	73	80
중소기업	785	828	857	814	836
폴란드					
기타	43	80	110	72	252
대기업	95	97	91	128	120
중견기업	141	128	138	182	196
중소기업	1,593	1,828	1,981	2,152	2,146
프랑스					
기타	252	262	230	206	548
대기업	133	149	156	184	167
중견기업	260	228	215	291	276
중소기업	2,881	3,116	3,245	3,175	3,012
핀란드					
기타	31	34	48	19	125
대기업	64	74	80	86	82
중견기업	75	71	76	93	89
중소기업	1,099	1,128	1,189	1,194	1,140
헝가리					
기타	33	20	45	25	128
대기업	52	51	55	63	63
중견기업	85	82	78	106	103
중소기업	832	899	967	933	881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부록 4.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EFTA 및 ASEAN 회원국별

부표 4-1.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EFTA 및 EFTA 개별 회원국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EFTA							
기타	72.1	31.9	26.2	24.8	130.8	5.6	30.4
대기업	7,973.2	25,000.2	18,485.6	33,606.1	15,325.4	11,250.7	21,119.2
중견기업	1,139.5	826.5	425.1	1,923.7	554.2	435.8	435.5
중소기업	129.0	189.0	102.1	132.9	148.1	98.8	96.3
노르웨이							
기타	14.2	12.0	14.1	15.4	44.4	5.4	15.8
대기업	10,072.3	55,520.4	36,263.3	69,941.5	12,585.6	17,675.6	31,193.6
중견기업	1,255.2	1,287.9	552.7	1,556.3	629.3	366.0	228.2
중소기업	130.4	255.4	120.3	103.6	101.8	86.1	77.8
리히텐슈타인							
기타							81.7
대기업			2.7	3.4			.2
중견기업	2,547.3	685.9	736.1	545.2	155.0	160.7	124.6
중소기업	57.4	63.8	50.8	49.5	110.1	121.9	141.2
스위스							
기타	108.2	47.0	38.8	33.2	207.2	5.6	29.0
대기업	4,232.0	3,452.4	3,147.8	2,207.9	12,127.0	2,741.8	8,664.7
중견기업	735.5	332.4	267.7	347.5	416.5	405.7	471.2
중소기업	114.2	117.5	79.4	134.0	155.4	86.7	89.2
아이슬란드							
기타	403.2	6.6	1.0	115.9	6.7		97.9
대기업	2,290.2	788.5	228.9	11,439.3	952.5	1,023.5	1,455.0
중견기업	1,034.2	219.2	37.9	11,482.1	133.7	36.5	58.1
중소기업	37.6	171.2	26.9	29.8	40.7	73.9	54.0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부표 4-2.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ASEAN 및 ASEAN 개별 회원국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SEAN							
기타	58.1	49.9	45.3	72.8	413.1	34.2	269.1
대기업	49,446.2	72,364.8	57,792.0	74,318.8	98,499.6	107,992.8	106,302.8
중견기업	16,248.8	17,250.4	16,295.9	19,473.1	31,895.2	13,056.0	14,949.7
중소기업	544.0	604.2	497.2	574.6	644.9	598.2	756.3
라오스							
기타	38.0	79.8	16.1	11.3	50.2	68.3	66.6
대기업	1,277.7	918.0	1,329.5	1,903.6	3,829.9	5,290.4	5,152.0
중견기업	423.4	136.6	164.8	470.7	388.2	695.8	1,017.0
중소기업	232.3	216.1	131.5	243.2	221.2	102.2	114.3
미얀마							
기타	5.0	139.9	27.2	25.5	46.1	23.5	117.7
대기업	5,863.4	958.3	5,224.4	4,629.3	5,763.2	14,676.2	2,607.2
중견기업	1,280.2	3,335.8	2,489.3	2,424.7	2,567.7	1,098.0	1,117.6
중소기업	224.2	266.4	310.1	342.2	385.9	344.6	332.7
베트남							
기타	33.1	24.9	23.4	23.7	576.5	26.7	178.7
대기업	10,007.3	16,235.8	13,288.6	20,548.9	29,846.0	29,029.1	38,392.0
중견기업	4,121.2	4,416.8	2,703.7	3,209.8	6,100.0	6,224.5	9,069.3
중소기업	431.7	447.8	417.7	460.6	486.8	472.9	646.9
캄보디아							
기타	26.7	33.5	19.6	64.4	575.5	82.7	98.6
대기업	682.9	468.9	368.3	419.6	905.1	691.8	716.9
중견기업	608.4	380.3	309.2	144.1	483.2	1,903.3	1,960.9
중소기업	297.3	289.5	278.6	286.5	262.1	261.0	253.4
말레이시아							
기타	18.9	10.8	10.9	14.7	209.0	5.7	117.1
대기업	13,168.2	13,548.1	10,776.8	16,033.6	14,151.1	19,242.8	21,804.2
중견기업	4,978.0	4,928.8	3,443.5	4,558.2	4,398.3	2,250.8	2,279.4
중소기업	206.0	233.9	163.0	205.4	231.8	228.5	257.4

부 표 4-2. 계 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브루나이							
기타	12,3	12,9	20,4	3,5	48,6	2,2	14,9
대기업	1,529,2	1,655,3	2,363,5	3,554,4	22,649,8	3,576,8	3,905,4
중견기업	245,9	882,9	267,1	317,2	120,9	188,6	481,0
중소기업	41,0	253,8	102,4	50,2	103,8	78,2	46,6
싱가포르							
기타	28,6	18,3	26,8	73,5	133,2	9,3	305,3
대기업	24,570,4	41,172,4	29,225,2	31,369,3	47,858,4	58,402,8	57,428,3
중견기업	9,909,2	11,092,4	13,363,8	15,776,8	21,552,5	7,497,5	7,300,7
중소기업	225,4	253,9	174,8	187,2	209,2	202,8	214,4
인도네시아							
기타	108,9	86,3	67,0	92,8	451,8	49,6	350,2
대기업	14,931,3	25,700,9	16,573,0	27,654,7	23,418,0	36,900,6	24,972,8
중견기업	2,908,5	3,053,9	2,652,5	3,280,9	20,791,2	3,361,3	3,532,9
중소기업	373,9	423,8	378,6	425,4	499,5	413,9	463,6
태국							
기타	97,9	109,5	93,9	145,4	258,5	43,4	82,3
대기업	9,102,7	13,423,7	11,076,8	15,521,1	22,223,0	15,424,0	15,181,1
중견기업	2,467,5	2,892,4	2,417,3	2,233,9	2,865,5	2,636,0	2,606,1
중소기업	248,5	304,4	219,8	287,1	337,1	306,7	314,5
필리핀							
기타	32,4	18,7	18,7	17,5	121,3	12,4	251,9
대기업	8,122,3	13,142,0	11,788,7	13,060,2	22,007,6	24,148,0	25,751,6
중견기업	5,681,2	5,407,9	5,141,5	8,067,4	6,969,4	3,630,7	3,299,3
중소기업	276,8	297,5	245,3	282,5	312,1	289,6	360,3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부록 5.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주력 수출산업별 한·중·일 시장점유율 추이

부표 5-1. 칠레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산업												
중국	2.8	3.3	4.0	4.3	4.3	4.7	5.2	5.4	6.4	6.3	7.1	7.5
일본	2.3	1.8	1.9	1.6	1.6	3.0	6.2	4.8	9.0	4.8	3.3	2.3
한국	3.0	4.0	3.6	5.1	8.8	16.9	10.0	8.0	10.7	3.2	2.5	2.9
자동차산업												
중국	0.2	0.3	0.4	0.7	1.3	2.0	4.6	4.1	4.5	7.3	8.6	10.4
일본	21.0	22.9	23.8	21.5	21.9	22.8	24.0	18.4	20.4	14.9	13.6	14.2
한국	11.2	8.8	11.5	11.7	14.0	15.7	13.9	17.3	16.2	15.3	17.0	16.3
전자산업												
중국	13.5	17.9	20.7	24.9	25.8	34.7	37.3	42.9	48.0	52.9	57.6	57.8
일본	3.1	3.1	3.6	3.0	2.3	1.5	1.6	1.1	0.7	0.8	1.1	0.7
한국	4.7	3.6	5.6	5.8	5.9	4.4	4.1	4.1	2.2	2.2	1.4	1.8
기계산업												
중국	4.5	5.7	7.6	7.5	9.8	11.5	12.3	11.4	14.2	14.6	15.8	17.7
일본	3.5	3.9	4.2	4.3	5.6	5.1	5.7	4.4	5.0	5.3	4.5	3.1
한국	2.3	2.1	2.3	2.1	1.9	1.7	3.0	3.8	2.4	2.2	2.1	2.8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8. 2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표 5-2. 싱가포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												
중국	5.2	5.4	5.3	6.5	5.4	7.3	4.6	7.1	7.0	4.9	4.7	6.5
일본	8.9	7.4	7.1	6.3	5.5	6.7	7.9	7.8	7.4	6.7	5.1	4.8
한국	3.3	3.0	2.7	2.9	3.2	3.8	6.5	5.3	6.0	6.8	8.0	7.7
자동차산업												
중국	0.9	1.0	1.3	1.6	1.9	2.6	3.0	2.5	3.4	3.6	2.6	3.5
일본	45.5	44.2	38.2	37.6	37.9	34.6	35.6	26.6	22.3	19.4	18.8	17.9
한국	3.0	3.9	5.8	5.8	4.2	3.4	3.3	5.3	3.6	2.9	2.6	2.5
전자산업												
중국	9.6	10.6	13.2	14.4	17.2	17.7	18.0	17.5	17.0	19.3	19.5	21.1
일본	12.9	11.4	10.9	9.9	8.1	7.0	6.8	6.5	7.0	5.9	5.4	4.2
한국	5.7	6.1	7.0	7.8	8.1	9.5	10.2	12.8	11.6	11.6	13.4	13.6
기계산업												
중국	7.3	8.0	8.4	10.7	10.8	14.1	12.7	11.6	12.6	13.3	13.1	14.0
일본	19.2	17.2	18.8	16.3	14.6	13.2	15.3	12.8	13.9	14.3	13.5	11.4
한국	1.8	1.5	1.5	1.9	2.3	1.6	2.0	2.1	2.0	1.9	2.3	2.3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8. 2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표 5-3. EFTA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												
중국	1.0	1.0	1.1	1.4	1.5	1.6	1.8	1.8	2.1	2.1	2.3	2.2
일본	1.6	1.6	1.7	1.5	1.3	1.2	1.3	1.4	1.4	1.5	1.8	1.6
한국	0.3	0.2	0.3	0.3	0.2	0.3	0.3	0.2	0.2	0.2	0.2	0.2
자동차산업												
중국	0.1	0.1	0.1	0.2	0.3	0.4	0.5	0.5	0.5	0.4	0.4	0.5
일본	8.8	10.0	10.2	9.5	9.1	7.7	7.8	8.8	8.4	7.0	7.2	6.1
한국	1.8	1.9	1.9	2.4	2.5	2.2	1.4	0.9	0.7	1.2	1.3	1.5
전자산업												
중국	3.7	6.2	8.2	8.8	9.9	11.6	12.4	17.9	20.1	22.7	34.4	38.8
일본	5.5	5.8	5.8	4.5	3.8	3.3	3.0	3.0	2.2	2.0	2.5	2.1
한국	1.6	1.8	2.2	2.8	2.4	2.1	2.1	2.1	1.8	2.1	3.9	3.5
기계산업												
중국	2.0	2.3	2.8	3.1	3.5	4.2	4.2	4.6	5.7	6.1	7.6	7.8
일본	2.6	2.4	2.3	2.3	2.3	2.3	2.1	2.0	2.1	2.1	2.8	2.6
한국	0.3	0.2	0.3	0.3	0.4	0.3	0.3	0.4	0.3	0.4	0.5	0.5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8. 2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표 5-4. ASEAN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산업												
중국	5.1	5.3	8.5	8.5	8.4	9.6	10.1	12.5	11.1	11.1	11.0	10.0
일본	19.4	18.6	14.0	13.2	13.0	11.6	10.8	10.9	9.6	8.3	7.7	7.4
한국	3.9	3.9	5.3	4.9	5.1	5.8	6.7	7.0	7.7	9.2	7.9	7.6
자동차산업												
중국	0.4	0.6	1.9	2.5	3.1	4.8	5.4	4.8	4.7	5.5	5.8	6.4
일본	66.5	65.0	58.5	55.0	54.2	48.2	45.1	44.2	44.5	44.0	44.3	42.6
한국	3.1	4.9	8.5	8.1	6.4	5.5	5.6	7.2	5.1	5.4	4.5	4.1
전자산업												
중국	10.2	11.7	13.3	16.5	17.5	15.6	18.3	22.4	21.3	25.7	29.0	28.3
일본	17.0	16.6	16.3	15.1	13.8	14.3	14.4	14.1	13.1	11.7	10.6	8.9
한국	7.5	7.3	7.1	6.7	8.0	6.9	6.0	6.9	8.7	7.9	7.9	4.4
기계산업												
중국	8.4	8.7	10.7	12.8	15.4	17.1	18.2	20.3	20.3	21.8	22.6	24.3
일본	29.8	31.5	29.5	29.0	26.0	25.5	25.2	23.0	25.0	24.1	25.6	21.2
한국	3.6	3.9	4.6	4.2	3.8	4.6	4.8	4.8	4.5	5.1	5.2	5.2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8. 2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표 5-5. 인도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산업												
중국	-	9.9	11.2	10.9	13.1	15.9	13.3	14.7	17.0	18.2	17.8	18.5
일본	-	5.1	4.1	3.2	2.9	2.8	2.6	3.1	3.0	2.8	3.2	2.8
한국	-	2.8	2.5	2.6	3.3	3.5	3.6	4.5	5.4	5.1	5.7	6.4
자동차산업												
중국	-	1.0	1.3	3.4	5.6	5.9	6.7	7.2	8.9	12.5	12.1	12.0
일본	-	16.6	22.2	17.4	12.2	13.9	16.1	19.0	12.5	12.3	13.1	13.5
한국	-	23.0	26.3	24.4	22.7	24.6	24.8	23.6	21.3	18.1	17.2	16.7
전자산업												
중국	-	18.5	23.5	27.9	32.9	42.8	46.5	48.1	51.9	47.9	51.5	56.8
일본	-	3.6	2.9	3.0	2.7	2.8	2.7	3.8	2.2	2.6	2.4	1.6
한국	-	17.8	14.1	16.2	10.1	4.2	7.0	5.4	6.3	5.5	3.8	4.9
기계산업												
중국	-	5.0	7.6	10.2	13.2	16.5	18.1	22.4	22.2	25.2	25.2	25.3
일본	-	11.2	10.5	9.5	8.5	8.7	10.0	7.6	9.7	9.7	10.3	9.8
한국	-	5.2	5.9	4.6	4.3	4.7	4.7	4.2	5.8	5.4	5.5	5.8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8. 2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표 5-6. EU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산업												
중국	1.5	1.7	1.8	1.8	1.9	2.1	2.3	2.4	2.6	2.6	2.6	2.6
일본	2.1	2.0	1.9	1.8	1.6	1.6	1.5	1.5	1.5	1.4	1.3	1.2
한국	0.4	0.4	0.4	0.4	0.5	0.5	0.6	0.6	0.5	0.6	0.6	0.7
자동차산업												
중국	0.1	0.1	0.2	0.3	0.4	0.5	0.7	0.7	0.9	0.9	1.0	1.0
일본	6.5	6.8	6.8	6.3	5.8	5.3	5.3	5.2	5.0	4.5	4.1	3.5
한국	1.4	1.6	2.0	2.4	2.4	2.0	1.5	1.4	1.4	1.6	1.9	2.0
전자산업												
중국	8.8	11.7	14.3	16.9	18.8	21.1	22.5	24.7	28.3	29.8	30.1	29.6
일본	7.7	7.7	7.2	6.6	5.8	4.5	4.9	4.1	3.7	3.2	3.2	2.8
한국	3.5	3.7	4.3	4.7	4.7	5.3	5.1	4.8	4.6	3.2	3.7	3.6
기계산업												
중국	4.5	5.0	5.8	6.2	6.7	8.2	8.6	9.4	10.8	10.4	10.4	10.5
일본	5.5	5.5	5.6	5.5	5.0	5.5	5.4	4.8	5.2	5.3	4.9	4.3
한국	0.8	1.0	1.3	1.4	1.3	1.2	1.2	1.3	1.4	1.4	1.5	1.4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8. 2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표 5-7. 페루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산업												
중국	4.3	4.5	4.1	5.1	5.9	7.1	7.1	8.1	8.5	7.2	8.4	8.9
일본	2.1	1.5	1.3	1.4	1.6	1.4	1.3	1.7	2.8	1.4	1.7	1.7
한국	3.3	4.6	3.5	4.6	3.4	3.7	3.4	4.4	4.6	3.2	3.3	3.6
자동차 산업												
중국	0.9	1.9	1.6	1.9	2.4	3.5	6.0	11.0	10.8	13.0	12.6	13.1
일본	51.4	46.8	38.2	34.1	31.1	30.1	29.7	32.0	26.8	19.2	18.1	15.9
한국	7.6	6.6	6.4	8.1	9.3	8.1	9.4	13.2	14.0	16.2	16.6	15.3
전자 산업												
중국	14.0	21.4	27.6	30.3	33.1	41.9	48.6	57.9	56.3	59.7	60.4	63.1
일본	4.6	4.2	4.7	5.0	4.5	1.6	1.8	1.6	1.4	1.0	1.3	1.1
한국	7.9	7.4	9.8	6.6	5.2	6.4	2.9	3.3	2.6	5.8	5.6	4.1
기계 산업												
중국	5.9	6.7	8.0	8.8	9.5	9.8	12.1	12.9	16.5	14.7	15.7	18.0
일본	7.8	5.8	5.0	5.0	4.2	4.6	4.8	4.4	4.7	4.7	4.4	4.2
한국	2.9	2.6	2.2	1.8	1.7	1.6	1.8	1.6	1.6	2.5	2.7	2.1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8. 2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표 5-8. 미국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산업												
중국	5.6	5.8	6.5	6.6	7.1	7.3	8.1	8.4	8.5	8.5	9.3	10.0
일본	8.3	7.8	7.0	6.0	5.5	5.4	4.5	4.9	4.9	4.2	4.3	4.3
한국	1.7	1.5	1.8	2.2	2.5	2.7	2.0	2.0	2.4	2.4	2.7	2.6
자동차산업												
중국	0.6	0.8	1.1	1.5	1.9	2.3	2.6	3.1	3.3	3.8	3.4	3.6
일본	26.4	24.1	23.2	23.8	25.6	25.3	26.3	23.6	22.3	19.6	21.0	19.5
한국	4.3	4.8	5.6	5.0	5.0	4.9	5.0	5.5	5.1	5.9	6.2	6.6
전자산업												
중국	17.9	23.5	29.4	34.2	37.2	39.3	40.5	43.4	45.3	47.8	51.1	51.9
일본	12.6	11.7	10.8	9.5	8.4	6.1	5.8	4.4	4.3	3.9	3.8	3.2
한국	8.4	8.5	9.0	6.3	5.4	5.8	6.4	6.6	6.1	5.7	4.3	4.9
기계산업												
중국	12.9	14.1	15.2	16.0	17.4	19.8	20.2	21.8	23.4	22.6	21.6	23.0
일본	15.7	14.9	15.3	15.1	14.2	13.5	13.2	11.5	12.2	12.7	13.0	11.9
한국	2.3	2.2	2.3	2.6	2.6	2.6	2.7	3.0	3.1	3.2	3.2	3.1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4. 8. 2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록 6. 지역경제통합과 주요국의 중심성 변화

부표 6-1. TPP(한국이 참여하는 경우)

국가	가중치 미고려		가중치 고려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호주	0,22	0,02	0,27	0,09
일본	0,35	0,16	0,89	0,09
중국	0,15	0,04	0,19	0,00
한국	0,22	0,28	0,45	0,12
싱가포르	0,28	0,16	0,25	0,15
ASEAN	0,13	0,01	0,09	0,17

자료: 저자 작성.

부표 6-2. TPP(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국가	NO 가중치		가중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호주	0,22	0,02	0,27	0,09
일본	0,33	0,15	0,84	0,09
중국	0,15	0,05	0,19	0,00
한국	0,17	0,24	0,38	0,12
싱가포르	0,28	0,16	0,25	0,15
ASEAN	0,13	0,02	0,09	0,17

자료: 저자 작성.

부표 6-3. RCEP				
국가	NO 가중치		가중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호주	0.20	0.04	0.28	0.09
일본	0.35	0.26	0.71	0.21
중국	0.24	0.11	0.48	0.00
한국	0.26	0.38	0.49	0.13
싱가포르	0.17	0.12	0.06	0.17
ASEAN	0.13	0.00	0.09	0.17

자료: 저자 작성.

부표 6-4. FTAAP				
국가	NO 가중치		가중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호주	0.30	0.07	0.43	0.12
일본	0.36	0.14	1.00	0.08
중국	0.23	0.08	0.70	0.00
한국	0.28	0.30	0.58	0.12
싱가포르	0.28	0.13	0.24	0.15
ASEAN	0.13	0.00	0.09	0.16

자료: 저자 작성.

부록 7. FTA별 경제성장 및 후생 효과

부표 7-1. FTA의 성장효과

(단위: %)

연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총합	경제 성장률
2005	0,048							0,048	3,9
2006	0,054	0,026						0,080	5,2
2007	0,061	0,029	0,086					0,176	5,5
2008	0,068	0,033	0,129					0,231	2,8
2009	0,075	0,037	0,176					0,288	0,7
2010	0,082	0,040	0,225	0,010				0,358	6,5
2011	0,088	0,044	0,276	0,011	0,079	0,003		0,502	3,7
2012	0,095	0,047	0,326	0,013	0,358	0,004	0,003	0,847	2,3
2013	0,101	0,050	0,376	0,015	0,630	0,004	0,012	1,190	3
2014	0,107	0,053	0,426	0,017	0,897	0,005	0,021	1,526	

부표 7-2. FTA의 소비자후생효과

(단위: 억 달러)

연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총 합
2005	3,54							3,54
2006	3,90	2,20						6,11
2007	4,33	2,43	27,98					34,74
2008	4,79	2,66	33,08					40,53
2009	5,28	2,86	38,30					46,44
2010	5,79	3,04	43,56	1,15				53,55
2011	6,34	3,20	48,81	1,30	26,75	0,24		86,65
2012	6,89	3,34	54,01	1,46	33,63	0,27	2,00	101,59
2013	7,44	3,46	59,11	1,64	39,72	0,29	2,31	113,97
2014	8,01	3,56	64,14	1,82	45,10	0,31	2,60	125,53

부록 8. 한·미 FTA 관련 국내 이행법률 현황 및 추진상황(2014년 4월 15일 기준)

	법률(담당부처)	개정내용 요지	추진상황	유예사항
발효 전 정비 (23)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 구제에관한법률」(산업부)	FTA 체결국에 대한 디자인 SG 조치 적용 배제	(2008. 3. 21 공포 · 2008. 9. 22 시행)	
	「대외무역법」 (산업부)	섬유·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 협력	(2009. 4. 22 공포 · 2009. 10. 23 시행)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외국회계법인 단계적 개방(1-2단계)	(2011. 6. 30 공포 · 2011. 7. 1. 시행)	2단계: 2017. 3. 15 이후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외국세무법인 단계적 개방(1단계)	(2011. 6. 30 공포 · 2011. 7. 1. 시행)	
		' (2단계)		2017. 3. 15 이후
	「외국법전문사법」 (법무부)	외국 로펌에 대한 단계적 개방 (1단계)	(2009. 3. 25 공포 · 2009. 9. 26 시행)	
		' (2단계)	(2011. 4. 5 공포 · 2011. 4. 30 시행)	2014. 3. 15 이후
		' (3단계)		2017. 3. 15 이후
	「전자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중통신서비스 제판매시 차별 금지, 허가조건·허가소요기간 공개	(2010. 3. 22 공포 · 2010. 9. 23 시행)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자본 제한 완화		2014. 3. 15 이후
	「전자판」 (방송통신위원회)	IT 기기 인증 상호인정 도입 (시험기관 지정,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2010. 7. 23 공포 · 2011. 1. 24 시행)	2013. 3. 15 이후
	「범죄수익금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상표권, 저작권 침해를 중대범죄로 규정	(2008. 12. 19 공포 · 2009. 3. 20 시행)	

부록 8. 계속

	법률(담당부처)	개정내용 요지	추진상황	유예사항
발효 전 정비 (23)	「관세법」 (기획재정부)	저지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권 통관보류제도	(2007. 12. 31 공포 · 2008. 1. 1 시행)	
	「개발소비자법」 (기획재정부)	승용차 개발소비세를 조정(3년내 5% 단일관세율)	(2011. 12. 3. 공포 · 2012. 1. 1 시행)	
	「지방세법」 (인민행정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5단계(80~220원)→3단계(80~200원)	(2011. 12. 2 공포 2012. 3. 15 시행)	
		FTA 특혜관세 대상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	(2008. 12. 26 공포 2009. 1. 26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다자 SG의 재량적 배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 개시 전 상대국에 협의의뢰 부여, 특정 품목에 양자 SG 조치 근거규정 농산물 SG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	(2010. 1. 1 공포 · 2010. 3. 2 시행) (2011. 6. 30 공포 · 11. 7. 1 시행)	
발효 전 정비 (23)		WTO SSG 배제	(2011. 12. 2 공포 · 2012. 3. 15 시행)	
	「우편법」 (산업부)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 범위 축소	(2011. 12. 2 공포 · 2012. 3. 15. 시행)	서면 5년 후 (2012. 6. 30)
	「우체국 예금·보통에 관한 법률」(산업부)	신상품 개발 금지	(2011. 12. 2 공포 · 2012. 3. 15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의 우체국 보함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2012. 3. 15 시행)	2014. 3. 15 이후
	「디지털보호법」 (특허청)	동의를결제 도입	(2011. 12. 2 공포 · 2012. 3. 15 시행)	
		디지털인 등의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 명령제도 도입	(2011. 12. 2. 공포 · 2012. 3. 15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청)	관련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2011. 12. 2. 공포 · 2012. 3. 15 시행)	

부록 8. 계속

법률(담당부처)	개요내용 요지	추진상황	유예사항
발효 전 정비 (23)	「상표법」 (특허청)	물수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제로 포함 상표범위 확대(소리·냄새 포함), 부정순해배상제도 신설, 증명표장제도 도입, 진용사용권 등록의무 폐지,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등	(2011. 6. 30 공포 2011. 7. 1 시행) (2011. 12. 2 공포· 2012. 3. 15 시행)
	「실용신안법」 (특허청)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12)	(2011. 12. 2 공포· 2012. 3. 15 시행)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2011. 6. 30 공포 2011. 7. 1 시행)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부정순해배상제도 도입	(2011. 12. 2 공포· 2012. 3. 15 시행)
	「특허법」 (특허청)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등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12)	(2011. 12. 2 공포· 2012. 3. 15 시행)
발효 후 정비 (2)	「약사법」 (보건복지부)	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통보)	(2011. 12. 2 공포· 2012. 3. 15 시행)
	「행정절차법」 (안전행정부)	의약품의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시판금지 조치)	(2011. 12. 2 공포· 2012. 3. 15 시행)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금융투자법」 (금융위원회)	법령 입법예고기간 20일→40일로 확대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 제한 완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보험판매 관련 지급능력사안은 금융위 규제대상	(2011. 12. 2 공포· 2012. 3. 15 시행)

주: ☐ 는 발효 후 정비, ☐ 는 발효 전 정비(국회 통과)를 각각 뜻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이행과, 법제처 홈페이지(생활법령정보)에서 재인용.

■ Executive Summary ■

A Study on the Decade of Korea's FTAs: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Young Gui Kim, Hyeyoon Keum, Saebyul Yoo, Yang-Hee Kim,
and Han Sung Kim

It has been 10 years passed since the first Korea-Chile FTA went into effect. A bilateral FTA has become more widespread, due to lack of progress in WTO DDA negotiations since the 2000s. Korea, being a country highly dependent on trade, has switched the direction of trade policy from multilateralism towards bilateralism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commercial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Korea's FTAs policy based on the outcome of recent bilateral FTAs from the perspective of achievement of policy objectives. This study focused more on areas where evaluation of the effectuated FTAs was possible, to enable differentiated and in-depth contribution from previous studies. This evaluation has been made in two categories: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The following issues were assessed in connection with internal issues; FTA network, the products, service and investment in bilateral trade; and the assessment of external issues included economic growth, consumer welfare, distribution structure over industry and business scale, and changes in domestic policy.

Korea has consistently pursued its FTA policy based on the FTA roadmap of 2003 that encompassed FTA promotion strategies, selection standards for FTA partners as well as its order of priority. It ultimately emphasizes three

strategic principles for FTAs: first, multiple simultaneous approach; second, comprehensive and high-quality coverage; and public consensus-based procedures.

By evaluating the result of a decade of effectuated FTAs, Korea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a comprehensive and high-quality, multi-FTA network. Starting with the first Korea-Chile FTA in 2004, as of 2014 Korea has effectuated nine FTAs with 46 partners including the US, EU and ASEAN, and concluded three. In the meantime, the number of bilateral FTAs in the East Asian region has gradually increased to 71 FTAs in comparison with 58 FTAs a decade ago. According to Social Network Analysis, the degree to which Korea is connection-centered (the number of FTAs) and betweenness-centered (linkage between nations) was the second highest among East Asian countries after Japan. Nevertheless, Korea preferred to be economic partners with more comprehensive and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EU.

As for the change in trade volume through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ASEAN, Korea has greater market shares, especially in favorable industries since the FTAs went into effect. However, a first mover advantage was lost due to bilateral FTAs between major competing nations and Chile/ASEAN. In the case of FTAs with the US and EU, although Korea achieved some increases in market share immediately after the effectuation of FTAs, the economic effect of FTAs was smaller than expected because of delays in economic recovery in these countries caus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tains a regression analysis using a gravity model, with the amount of imports as dependent variables and each FTA as key explanatory variables. As a result, the concluded FTA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in trade between trading partners.

The number of export items in terms of FTA trading partners has grown by 6.1%p and 1.3%p in Chile and the US respectively, as the diversity of export

items has improved. By measuring the concentration of import items, the import concentration is expected to lead to an increase in consumer welfare from improvements in diversity and competitive structural change, but export intensity actually deepened in some countries as to require 'discovery' of various export items. The FTA resulted in positive effects both on the number of export and import items by industrial analysis, whereas the impact on the value of imports and exports has suggested the need for industry-specific measures tailored to the different industries.

Services trade effect due to the FTA has mainly occurred in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s, insurance, computer services and trade-related businesses. After the effectuation of the FTA, FDI from the US, EU, ASEAN and others has increased but there was no evidence of increased FDI to the FTA partners. Only FDI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to the US, EU, ASEAN has slightly increased. However, a questionnaire survey of enterprises operating in ASEAN and Central Europe showed that the effect of FTA was very limited since they generally consider variety factors such as market scale and production cost when investing overseas.

While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the impacts of trade within bilateral FTA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overall economic impacts of FTAs in terms of growth and welfare as changes in bilateral trade may affect world trading and the overall economy in a variety of ways. Regarding growth effect of FTAs, the results for EU was the highest with 0.9%; growth of 0.43% and 0.11% were seen in ASEAN and Chile respectively. In addition, by comparing the overall growth effect from FTAs to the total economic growth in 2013, the growth effect of FTA accounted for 1.19% of the 3% total economic growth in Korea. It means that an FTA can be considered as having a significant supporting role in Korea's economic growth.

Regarding the result of business performance, the number of domestic export enterprises has increased continuously from 2007 until 2012; the growth rates in numbers of both large and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increased faster with FTA partners. Despite the fact that most enterprises were inevitably subject to market openness in the time of the launch of the FTA, some enterprises could recover prior profit rates through export; however, domestic companies are likely to experience difficulties due to decreased average profit rates.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institutional advancement as one of its important policy measures while promoting additional FTAs with advanced economies. In this study, the amendments into national law instruments based on KORUS FTA were organized and evaluated in terms of their institutional linkages by 6 different categories: 'regulatory harmonization' (4 cases), 'institutional streamlining' (3 cases), 'transparency' (3 cases), 'value-added services market access' (5 cases), 'strengthening the level of protec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9 cases) and 'system of transparency' (1 case). These institutional changes shall ultimately promote competition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in order to improv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continue to be monitored as to whether the link is functioning properly.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4년

-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합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호진 · 이장규 · 박민숙
-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대현 · 이현진 · 김준엽
-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 2013년

-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 · 김영귀
-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 · 양다영 · 강은정 · 박영준
-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 · 이준원 · 김봉근 · 전영준
-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송치영 · 김태준 · 문우식 · 유재원 · 채희율
-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 · 강은정 · 편주현 · 안지연
-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이승래 · 김혁황 · 강준구
-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 · 선주연 · 김정곤 · 이주미
-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 · 김보민 · 이성희 · 김윤옥 · 홍이경 · 이민영
-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 13-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균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 13-15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 정형곤 · 이유진 · 안병민

-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호림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 13-20 중국의 채권 · 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 13-21 중국 권역별 · 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종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운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균 · 박나리 · 김유미
-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대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웅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곽성일 · 박재은 · 손성현
-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 · 장종문 · 전해린 · 김영기
-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임태균

■ 2012년

-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한진희
-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김준동 · 서진교 · 송백훈 · 안덕근
-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배찬권 · 김정곤 · 금혜윤 · 장용준
-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서진교 · 정 철 · 이준원 · 정윤선
-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 · 김종덕 · 강준구 · 김혁황
-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서정민 · 정지원 · 박혜리 · 조명환
-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동은 · 편주현 · 양다영
-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박은선 · 강삼모
-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안지연 · 이동은 · 박영준 · 강은정
-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강유덕 · 김균태 · 오테현 · 이철원 · 이현진
- 12-13 한·중·일 경제협의회 구상 /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 율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최필수 · 이상훈 · 문익준 · 나수엽
-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문익준 · 박민숙 · 나수엽 · 여지나 · 은종학
-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승신 · 양평섭 · 문익준 · 노수연 · 정지현 · 여지나
-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 이재영 · 이성봉 · Alexey Kuznetsov · 민지영
-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균 · 박나리
-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오윤아 · 허재준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균
-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조충제 · 송영철 · 최윤정 · 이 웅 · 정혜원
-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해린 · 이시욱
-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 ·곽성일 · 전해린 · 장종문
-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박복영 · 김중혁 · 고희채 · 박경로
-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이우광
-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율

■ 2011년

-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고희채 · 이준규 · 오민아 · 이보람
-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 · 방호경
-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 · 오승환 · 백승관
-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 · 오승환 · 정용승 · 박영준
- 11-0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 · 강은정 · 박영준
-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영준 · 이형근 · 양다영
-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 · 이준원 · 김한호
-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 · 이철원 · 이현진 · 오현정
-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 · 김영귀 · 박지현 · 강준하
-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강준구 · 김혁황 · 현혜정
-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 · 서정민 · 김민성 · 양주영
-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김정곤 · 박순찬
-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울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방호경 · 나승권 · 윤미경
-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월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 광
-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험 방향 /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원 · 홍익표
-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김태윤 · 이재호 · 정재완 · 백유진 · 강대창
-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 · 전해린 · 김성남 · 김민희
-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교회채
-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 · Sherzod Shadikhodjaev · 박순찬 · 황지영
-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 · 최필수 · 김부용 · 여지나 · 박민숙 · 임민경
-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 · 김규관 · 오윤아 · 이재호 · 신민금 · Siwage Dharma Negara · Latif Adam
-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 · 권기수 · 교회채 · 박미숙 · 김형주
-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 · 윤서영 · 박광순

김영귀(金榮貴)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위원
(現, E-mail: yg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공저, 2013)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공저, 2013) 외

금혜윤(琴惠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사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hykeum@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 기발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공저, 2012)
『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공저, 2013) 외

유새별(俞새별)

The University of Glasgow 경영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국제통상 전공)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現, E-mail: sbyoo@kiep.go.kr)

저서 및 논문

「TTIP(미·EU FTA)에서의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상 동향과 주요 쟁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14)

김양희(金良姬)

東京大學 경제학 박사
영국 University of Bradford 객원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전문위원
대구대학교 교수
(現, E-mail: kyanghee@daegu.ac.kr)

저서 및 논문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2010)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2010) 외

김한성(金翰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팀장
아주대학교 교수
(現, E-mail: hkim1@ajou.ac.kr)

저서 및 논문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공저, 2009)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공저, 2010) 외

연구보고서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 일 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414-3460-1142 FAX: 044-414-3460-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02-2273-7011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508-2 94320
978-89-322-1072-8 (세트)

정가 10,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유효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 Study on the Decade of Korea's FTAs: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Young Gui Kim, Hyeyoon Keum, Saebyul Yoo, Yang-Hee Kim, and Han Sung Kim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FTA 정책을 경제적 성과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대외부문에서는 FTA 네트워크 구축, 산업 및 기업 수준의 상품교역, 부가가치 교역, 품목 다변화 및 집중도, 서비스 및 투자의 측면, 대내부문에서는 경제성장 및 소비자후생, 산업 및 기업별 분배구조, 국내 제도적 변화의 관점에서 지난 10년간의 FTA 정책을 살펴보았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122, 1199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1508-2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